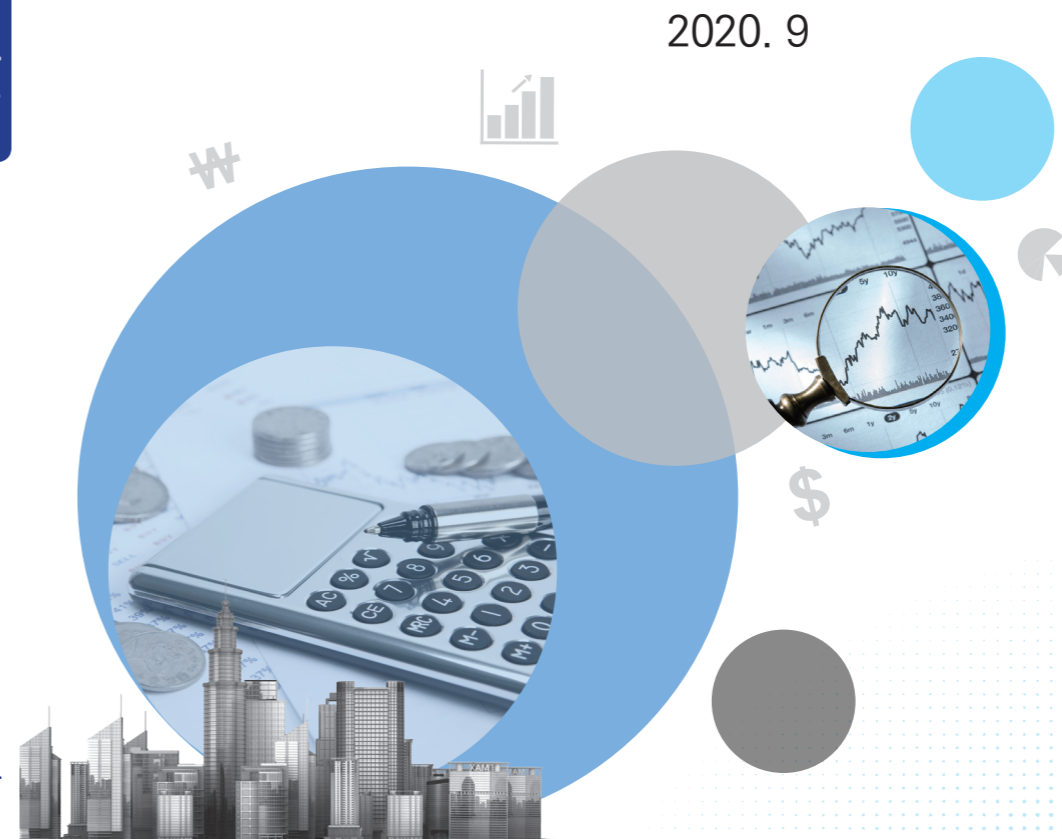




2019 조세특례 하반기 임의심층평가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세 환급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세 환급

2019 조세특례 하반기 임의심층평가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세 환급



2020. 9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조세특례 하반기 임의심층평가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세 환급

2020. 9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세 환급』 연구
용역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성명재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020년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 장 김 유 찬

요 약

-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대해 여러 정책들을 도입한 이후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관광 수입의 증가 추세가 관찰되지만, 추후 정책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정책들에 대한 엄밀한 평가가 요구됨
 - 특히,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련한 여러 정책들의 개별적인 효과성 및 타당성에 대한 엄밀한 검토 작업을 통해, 비용 대비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발굴하는 것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 혁신 전략 목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 본 보고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정책 중 하나인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제도」의 전반적인 효과성과 타당성을 검토함
 - 동 제도는 외국인 관광객이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유치의료기관·유치업자)에서 미용성형 시(수)술을 받은 외국인 관광객은 기존 부과되던 10%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제도임
 - 기본적으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며,
 - 추가적으로는 미용성형 관련 의료용역 분야의 탈세 및 조세 회피 등의 감소를 통한 추가 세원 확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기도 함

- 동 제도의 효과성과 타당성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검토됨
 - 타당성 검토는 기본적인 수요-공급 탄력성을 바탕으로 경제학 기본 이론을 적용하는 이론적인 검토와 기초통계 분석 및 설문조사 분석을 통한 검토를 포함하며,
 - 효과성 검토는 사건 분석(event study)과 이중차분모형(Difference-in-Difference)을 적용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과표 양성화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함
 - 또한 제도 시행이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산업연관분석을 연구에 포함시킴

- **(설문조사 분석)** 설문조사를 통해 의료기관의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 여부를 검토함
 -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정책 목표인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및 불법 브로커 근절을 통한 과표 양성화 효과 여부에 대해 검토함
 -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의료기관 252개를 선정하여 전화, 온라인, 팩스 조사를 통해 2020년 4월 8일부터 2020년 4월 14일까지 진행함
 - 외국인 환자들의 설문을 통한 제도의 효과 역시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설문 대상인 외국인 환자들의 섭외가 어려웠기 때문에 본 설문조사는 의료기관에만 초점을 맞춤

- **(설문조사 결과)**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활용 여부와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조사대상 의료기관 중 동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42.9%로 인지 못하고 있는 의료기관 57.1%에 비해 낮게 나타남
 - 또한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총 108개 의료기관 가운데 실제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81.5%로 나타남
 - 제도를 실제 이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제도가 시행된 2016년 이후 4년 이상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의료기관은 75%였으며, 평균 3.5년 제도를 이용함
 - 한편, 동 제도를 인지하고 있으나 이용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20개 기관으로서, 외국인 환자 유치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0%를 차지하였으며, 절차가 복잡하다는 의견도 2개 기관에서 나옴
 - 제도를 인지하는 106개 의료기관 가운데 47.2%가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로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선정하였고, 진료비 및 수수료 투명화도 37%를 차지하여, 정책의 두 가지 목표인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와 과표 양성화 부분이 실제 현장에서도 가장 높은 효과로 인식됨
 - 하지만 브로커를 이용하여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경우와 동 제도를 비교할 경우 외국인 환자 증가 유치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79.6%이며,
 - 제도 시행 이후 매출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17%에 불과하였고, 부가가치세 환급제도가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73.8%)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15.9%)보다 월등히 높았고,

- 제도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외국인 환자 유치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 역시 73%로 높은 수준임
 - 결론적으로, 설문조사의 결과는 주관적인 응답이므로 추후 객관적인 자료 분석을 통한 결과와 함께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타당성 분석 1 - 이론모형 분석을 중심으로) 이론모형 분석결과에 의하면, 미용성형의료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보다 사전적으로 면세(사후적 환급 포함)해주는 것이 국내후생(생산자잉여 등, 즉 총체적 생산유발효과)의 순증(+)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수요·공급조건: 수요곡선이 가격탄력적일수록, 공급곡선이 가격 비탄력적일수록 국내후생수준이 순증(+)하고, 반대로 수요가 비탄력적이고 공급이 탄력적인 경우에는 국내후생수준이 순감(-)
 - 그 이유는 수요곡선이 탄력적일수록, 환급(또는 면세)해줌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량이 더 많이 증가하고, 공급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동 서비스를 과세할 때 국내 서비스 공급자에게 귀착되는 부가가치세의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환급(면세)에 따른 실질 세경감 효과가 국내 서비스 공급자에게 더 많이 귀속되기 때문임
- (타당성 분석 2 - 정책 및 과세 타당성 평가) 소비세는 소비지국 과세원칙(destination principle)을 기준으로 수출재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
- 단기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국내에서 소비하지 않고 출국 시에 해외로 반출하는 물품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제도를 운용 중
- 해외여행자가 국내에서 소비된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원칙에 맞지 않음
- 국내에서 소비된 용역은 소비지 과세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적합
 - 소비자가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와 상관없이 국내에서 소비되었기 때문에 국내 부가가치세제가 적용되는 것이 타당함

- 다만 일부 의견에 따르면 미용성형의료서비스의 경우 비록 국내에서 서비스(시술 등)가 이루어지고 동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가 국내에서 지불되어 형식상으로 동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가 완료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출(expenditure)이 완료된 것일 뿐 소비(consumption)행위 자체가 완료된 것은 아님
- 이럴 경우 미용성형의료서비스에 대해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적용하면 단기체류 후 출국 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것이 이론적·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음
- 이론적인 측면에서 소비지국 과세주의 원칙 적용 여부에 대한 논란은 명확히 답을 내리기 어려움

□ **(효과성 분석 1)** 2016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의료관광객 유치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사건 분석 및 이중차분법을 활용함

- 사건 분석 방법을 통한 그래프 분석 결과, 미용성형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이 실시된 2016년 이후 외국인 환자의 진료건수 증가 및 진료비 증가 현상을 관찰할 수 있음
- 이러한 결과가 다른 방법론을 통해서도 확인되는지 검증하기 위해 이중차분모형을 활용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시행 전후 외국인 환자의 미용성형 의료용역과 외국인 환자의 기타 진료용역을 비교한 결과,
- 부가가치세 환급제도가 외국인 환자의 진료인원 및 진료비 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함
- 강건성 검토를 위해 외국인 환자와 내국인 환자를 비교하는 이중차분모형을 적용한 결과,
- 분석기간에 상관없이 제도 시행이 진료인원 및 진료비 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발견할 수 없음
- 결론적으로, 모형의 설정에 따라 일관적인 결과를 얻을 수 없었으며, 실증분석 결과 제도의 시행이 외국인 환자 유치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결론을 내리기 어려움

□ **(효과성 분석 2 - 세수분석효과)** 제도의 시행으로 과표 양성화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추가 세수 확보로 이어지며, 이는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정이 필요함

- 기본적으로 효과성 분석 1에서 사용한 이중차분모형을 활용하여 세수효과를 추정함
- (방법 1) 가맹 및 미가맹 의료기관의 진료수입이 정확한 수입금액이며, 탈루된 소득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동 제도에 따른 세수 증가 예상은 약 137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를 조세지출 규모(51억 2,600만원)와 비교하면 부가가치세 1원에 대한 추가적인 소득세 기여율은 약 2.66원임
- (방법 2) 미가맹 의료기관의 진료수입에 탈루 소득이 포함되었다고 가정하면, 2016년 미가맹 의료기관의 진료수입은 과소 보고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보정하여 동 제도에 따른 세수 증가를 계산하면 약 97억원으로 추정되며, 부가가치세 1원에 대한 추가적인 소득세 기여율은 1.89원임
- 추가적으로 다른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도 부가가치세 1원에 대한 추가적인 세수입은 1.87원(방법 1), 1.43원(방법 2)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산출됨

□ **(효과성 분석 3 - 산업연관분석)** 한국은행의 2015년 381개 기초부문 투입산출표(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의료서비스 부가가치세 환급제도의 경제적 효과성을 분석함

- 미용성형의료서비스 부문은 투입산출표의 381개 기초부문 가운데 ‘의료 및 보건(국공립, 비영리, 산업의 3개 부문 합산)’ 부문으로 설정함
 - 다만 의료 및 보건 부문은 의료서비스(미용성형 포함) 부문은 물론이고, 기타 보건부문까지도 포함
 -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미용성형의료서비스 부문의 생산함수는 여타 의료서비스 및 보건 분야와 동일하거나 또는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암묵적으로 가정
 - 산업연관분석에 기초가 되는 투입산출표는 기본적으로 선형함수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산출효과(생산·부가가치·고용유발효과 등)의 크기는 투입량에 선형관계를 가지면서 정비례하는 특성을 지니기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량) 증가 효과는 수요분석을 통해 추정하여야 하지만, 자료여건상 수요분석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수요가격탄력성을 가정하여 분석
- 분석결과, 연간 환급액을 250억원으로 가정하였을 경우, 국내 총생산 증가규모는 연간 약 435억원, 그에 따라 창출되는 국내 부가가치는 약 195억원으로 추정됨

- 분석 결과, 효과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혼재되어 있으나, 전반적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추후 동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안함
 - 첫째는, 실증적 분석 결과, 효과성에 대한 일관적인 결과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추후 일몰을 연장할 때는 반드시 그 효과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은 물론, 일몰 연장 전에도 효과를 정기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둘째는, 의료기관의 설문조사 결과, 제도를 미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다는 점은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거나, 제도를 이용하지 않으려는 또 다른 인센티브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의미임
 - 따라서 우선적으로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으며,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정기적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함
 - 만약 추후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뚜렷한 효과가 여전히 발견되지 않고, 제도 이용이 미진할 경우, 제도는 장기적으로 일몰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불법 브로커 근절을 통한 과표 양성화와 관련하여 별도의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찾아 적용해 보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목 차

I. 서론	15
II.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현황	19
1. 제도 개요	21
2. 제도 운용 현황	24
가. 외국인 환자 현황	24
나. 환급 의료기관 현황 및 환급창구운영사업자 현황	29
다. 환급 규모	31
III. 관련 연구 및 제도 검토	33
1. 선행 연구 문헌 검토	35
가. 김순구·정연일(2017),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제 효과 분석 연구	35
나. 박상곤(2015), 호텔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제도의 효과분석	36
다. 조성찬·이훈영(2019), 국내 의료관광 수요의 결정요인 실증 분석 - 패널 데이터 분석 기법을 중심으로	37
라. 유예·박상문·김명수(2016), 한국 의료서비스의 외국인 환자 유치에 관한 연구: 한국성형외과의 중국인 환자 유치를 중심으로	38
마. 서정교(2011), 외국인 환자 유치활성화 투자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분석: 의료관광산업을 중심으로	40
2. 해외 사례 검토	42
가. 터키	42
나. 이스라엘	42
다. 캐나다	43
3. 국내 유사 제도 검토 및 정책 현황	44

가. 보건복지부의 외국인 환자 유치 정책	44
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48
다. 국내 유사한 부가가치세 특례제도	53
라.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제도	54
IV. 설문조사	57
1. 설문조사의 개요	59
2. 설문조사 결과	60
V. 타당성 분석	67
1. 타당성 분석: 이론모형 분석을 중심으로	69
가.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의료서비스 부가가치세 과세 시 소비균형의 변화 ...	69
나. 초과부담	72
다.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의료서비스 부가가치세 면세와 환급제도의 비교 ...	73
라.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의료서비스 부가가치세 환급제도의 시장확대 효과: 이론분석을 중심으로	84
2. 타당성 분석: 정책 및 과세 타당성 평가	89
가. 부가가치세 면세	89
나. 부가가치세의 소비지 과세주의 원칙	94
다. 정부개입 타당성	97
VI. 효과성 분석 1	111
1.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효과	113
가. 사건 분석(Event Study)	114
나. 이중차분법 분석(Difference in Difference)	122
2. 세수 효과 분석	129
3. 소결	140

VII. 효과성 분석 2	141
1. 산업연관분석을 중심으로	143
가. 분석자료와 분석범위 및 분석방법	143
나. 생산·부가가치·고용유발계수	149
다. 생산·부가가치·고용유발효과	157
2. 소결	161
VIII. 결론	165
참고문헌	169
부 록	171

표 목 차

<표 II-1> 제도 연혁	22
<표 II-2> 일반 진료과 외국인 환자 진료건수	25
<표 II-3> 미용성형 진료과 외국인 환자 진료건수	26
<표 II-4> 일반 진료과 외국인 환자 진료수입	27
<표 II-5> 미용성형 진료과 외국인 환자 진료수입	27
<표 II-6> 진료과별 1인당 진료수입	28
<표 II-7> 주요국별 총환자 수 및 성형/피부과 환자 수(2018년)	28
<표 II-8> 주요 진료과목 진료수입 현황	29
<표 II-9> 진료과별 부가가치세 환급 의료기관 현황	30
<표 II-10> 환급창구 운영사업자별 부가가치세 환급 현황	30
<표 II-11>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현황	31
<표 II-12> 미용성형 의료용역별 부가가치세 환급 현황	32
<표 II-13> 주요국별 부가가치세 환급전표 발행건수	32
<표 III-1>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 항목	46
<표 III-2> 「부가가치세법」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46
<표 III-3> 외국인 환자 이용 가능 환급 창구	47
<표 III-4>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법」 제6조(외국인 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49
<표 III-5>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법」 제9조(과도한 수수료 등의 제한)	50
<표 III-6> 「외국인 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율 고시」 제3조	50
<표 III-7>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법」 제24조(등록의 취소)	51
<표 III-8>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법」 제26조(과징금)	51
<표 III-9>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법」 제11조(보고의무)	52
<표 III-10>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사업실적 보고)	52
<표 III-11>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법」 제31조(과태료)	53
<표 III-12> 외국인 관광객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변경사항	54

<표 III-13> 즉시환급 거래 한도	55
<표 IV-1> 응답자 분포	60
<표 IV-2> 외국인 환자 국적 분포	61
<표 IV-3> 외국인 환자 시술 분포	61
<표 IV-4> 브로커 시스템과 비교한 동 제도의 외국인 환자 유치 효과	63
<표 IV-5> 동 제도의 외국인 환자 관련 매출 효과	63
<표 IV-6> 2016년 이후 매출액 증가율	64
<표 IV-7> 동 제도가 없을 경우의 효과 변화	64
<표 IV-8> 동 제도의 불법거래 근절 효과	65
<표 V-1> OECD 표준면세 적용 대상 분야	90
<표 V-2> OECD 주요 회원국의 부가가치세 면세 및 과세 대상	91
<표 V-3> EU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92
<표 V-4> 의료용역과 미용성형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93
<표 V-5> 해외환자 유치실적	97
<표 V-6> 해외환자 유치실적	101
<표 V-7> 주요국별 외국인 환자 수(실환자 수)	101
<표 V-8> 주요국별 외국인 환자 비중	102
<표 V-9> 주요국별 부가가치세 환급전표 발행건수	102
<표 V-10> 주요국별 환자 수 대비 부가가치세 환급전표 발행건수 비율	103
<표 V-11> 주요국별 환자 수 및 부가가치세 환급전표 발행건수(2018년)	104
<표 V-12> 주요국별 환자 수 대비 부가가치세 환급전표 발행건수 비율(2018년)	105
<표 V-13> 외국인 환자의 국적별 부가가치세 환급건수 및 액수 비중	106
<표 V-14> 주요 국적별 상위 진료과(2018년)	107
<표 V-15>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	109
<표 V-16>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109
<표 VI-1> 이중차분법 회귀방정식 결과: 2009~2018년	126
<표 VI-2> 이중차분법 회귀방정식 결과: 2012~2018년	126

<표 VI-3> 이중차분법 회귀방정식 결과: 내과통합이 통제집단인 경우	129
<표 VI-4> 연도별 부가가치세 환급 규모	130
<표 VI-5> 의료용역별 부가가치세 규모	131
<표 VI-6> 부가가치세 환급 가맹/미가맹 의료기관 진료수입 현황	132
<표 VI-7> 고소득자(3억원) 실효세율 추이	134
<표 VI-8> 가맹-미가맹 의료기관 진료수입 이중차이	134
<표 VI-9> 자영업자의 소득계층별 소득탈루율	135
<표 VI-10> 가맹-미가맹 의료기관 진료수입 이중차이	136
<표 VI-11> 가맹-미가맹 의료기관 진료수입 이중차이	137
<표 VI-12> 가맹-미가맹 의료기관 진료수입 이중차이	137
<표 VI-13> 가맹 의료기관 진료수입	138
<표 VI-14> 가맹 의료기관 진료수입	139
<표 VI-15> 제도의 세수효과 추정	140
<표 VII-1>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금액 추정치	148
<표 VII-2> 16개 산업분류 및 산업별 피고용자 수(2015년 기준)	149
<표 VII-3> 산업부문별 생산유발계수	150
<표 VII-4> 산업부문별 부가가치 및 고용유발계수	153
<표 VII-5> 산업부문별 연쇄효과 추정결과(영향력계수·감응도계수)	155
<표 VII-6>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의료서비스 부가가치세 환급제도의 경제적 파급 유발효과(연간 환급액 250억원 기준)	159
<부표 1> OECD 회원국의 부가가치세 면세 및 과세 대상	173

그림 목 차

[그림 II-1] 표찰 예시	23
[그림 II-2] 외국인 환자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	24
[그림 V-1]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의료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시 소비균형 변화	71
[그림 V-2]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의료서비스 부가가치세 환급 시 초과부담	72
[그림 V-3]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의료서비스 부가가치세 면세제도 적용 시의 균형 변화	78
[그림 V-4]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의료서비스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적용 시의 균형 변화	83
[그림 V-5]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의료서비스 부가가치세 환급 시 후생·시장확대 효과	88
[그림 V-6] 외국인 환자의 국적별 부가가치세 환급건수 비중 추이	105
[그림 V-7] 외국인 환자의 국적별 부가가치세 환급액수 비중 추이	106
[그림 VI-1] 연도별 진료인원 및 진료비 효과(2009~2018년)	116
[그림 VI-2] 연도별 진료인원 및 진료비 효과(2012~2018년)	117
[그림 VI-3] 연도별 진료인원 및 진료비 효과(2009~2018년)	118
[그림 VI-4] 연도별 진료인원 및 진료비 효과(2012~2018년)	119
[그림 VI-5] 연도별 1인당 진료비 효과(2012~2018년)	121
[그림 VI-6] 외국인 환자 및 내국인 환자 진료인원 추이(2009~2016년)	124
[그림 VI-7] 외국인 환자 및 내국인 환자 진료인원 추이(2009~2018년)	125
[그림 VI-8] 외국인 환자 피부, 성형 및 기타진료과 진료인원 및 진료비	127
[그림 VI-9] 외국인 환자 피부, 성형 및 내과통합 진료인원 및 진료비	127
[그림 VII-1] 16개 부문별 영향력계수 추정치(2015년 투입산출분석 결과)	156

[그림 VII-2] 16개 부문별 감응도계수 추정치(2015년 투입산출분석 결과)	156
[그림 VII-3]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의료서비스 부가가치세 환급제도의 부문별 생산유발효과(2015년 투입산출분석 결과)	160
[그림 VII-4]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의료서비스 부가가치세 환급제도의 부문별 부가가치유발효과(2015년 투입산출분석 결과)	160
[그림 VII-5]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의료서비스 부가가치세 환급제도의 부문별 고용유발효과(2015년 투입산출분석 결과)	161

I. 서론



I. 서론

- 정부는 2022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2,300만명 유치를 위한 ‘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을 발표함
 -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의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함
 - 또한 관광산업 활성화 정책은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음
 - 이를 위해 그동안 정부는 여러 가지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정책들을 시행하였음
 - 대표적인 예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등의 세제 혜택을 들 수 있음

- 정부의 이러한 노력과 한류문화 등에 힘입어 실제로 외국인 관광객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05년 연간 약 600만명 정도의 외국인 관광객은 2010년 약 880만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14년에는 약 1,420만명, 2019년에는 약 1,750만명까지 증가함
 - 이에 따른 관광수입 역시 증가추세에 있는데,
 - 2005년 약 58억달러, 2010년에는 약 103억달러, 2014년에는 약 174억달러, 2019년에는 약 215억달러로 집계됨

- 여러 정책의 시행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관광 수입의 증가 추세가 관찰되지만, 추후 정책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정책들에 대한 엄밀한 평가가 요구됨
 - 특히,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련한 여러 정책들의 개별적인 효과성 및 타당성에 대한 엄밀한 검토 작업을 통해, 비용 대비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발굴하는 것이 정부의 관광 혁신 전략 목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 본 보고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정책 중 하나인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
 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제도」의 전반적인 효과성과 타당성을 검토함
 - 동 제도는 외국인 관광객이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유치의료기관·유
 치업자)에서 미용성형 시(수)술을 받은 외국인 관광객은 기존 부과되던 10%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제도임
 - 기본적으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며,
 - 추가적으로는 미용성형 관련 의료용역 분야의 탈세 및 조세 회피 등의 감소를
 통한 추가 세원 확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기도 함

- 동 제도의 효과성과 타당성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검토됨
 - 타당성 검토는 기본적인 수요-공급 탄력성을 바탕으로 경제학 기본 이론을 적
 용하는 이론적인 검토와 기초통계 분석 및 설문조사 분석을 통한 검토를 포함
 하며,
 - 효과성 검토는 사건 분석(event study)과 이중차분모형(Difference-in-Difference)을
 적용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과표 양성화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함
 - 또한 제도 시행이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산업
 연관분석을 연구에 포함시킴

- 본 보고서는 서론을 시작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됨
 - 제Ⅱ장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 제Ⅲ장에서는 관련 연구 및 제도를 검토하고,
 - 제Ⅳ장에서는 설문조사 분석을 요약하며,
 - 제Ⅴ장에서는 타당성 분석을 검토하고,
 - 제Ⅵ장에서는 효과성 분석을 검토함
 - 제Ⅶ장에서는 결론 및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마무리함

Ⅱ.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현황



II.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현황

1. 제도 개요

- 외국인 관광객이 특례전용 의료기관에서 미용성형 의료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는 제도
 -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써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유치의료기관·유치업자)에서 미용성형 시(수)술을 받은 외국인 관광객은 기존에 부과되던 10%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
 - 외국인 환자 유치란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타 의료기관에 외국인 환자의 진료계약을 알선(주선)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행위를 말함
 - 외국인 환자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지정 부가가치세 환급창구운영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에서 해당 미용성형 시(수)술을 받을 때 가능함
 - 만약 의료기관이 환급창구운영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함

- **(환급 대상자)** 동 제도의 환급 대상자는 대한민국에 주소·거소를 두지 않은 개인임¹⁾
 - 단, 국내 주재 외교관·외국공관원·국제연합군·미군 장병 및 군무원 제외
 - 의료기관에서는 의료용역공급확인서 발급 시, 환자의 여권 정보 및 항공권(3개월 이내 출국 여부) 확인
 - 환급을 받으려는 외국인 관광객은 환급대상 의료용역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해당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²⁾

1) 보건복지부, 「외국인 환자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안내」, 2016. 3.

2) 국가법령정보시스템,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query=%EC%A1%B0%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J107:3>, 검색일자: 2020. 3. 10.

- (특례적용 의료기관)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을 특례적용 의료기관으로 함³⁾
 - 「의료법」 제27조의2 제1항 또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시행일: 2016. 6. 2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된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은 별도의 선정절차 없이 모두 특례적용 의료기관이 됨
 -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이 취소된 경우 특례적용 의료기관으로서의 지위도 상실됨
 - 특례적용 의료기관의 사업자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환급대상 의료용역을 공급한 때에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해당 외국인 관광객에게 교부하고,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여야 함⁴⁾
-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요건 변경 없이 지금까지 3차례 적용기한이 연장되었음

<표 II -1> 제도 연혁

연도	내용
2016년 4월	적용기한 2017년 3월 31일까지
2016년 12월	적용기한 2017년 12월 31일까지(9개월 연장)
2017년 12월	적용기한 2018년 12월 31일까지(1년 연장)
2018년 12월	적용기한 2019년 12월 31일까지(1년 연장)

- 재화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보편화되어 있으나,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관광호텔에 이어 두 번째로 도입되었으며, 의료관광 활성화, 소득세 과표 양성화 등을 목적으로 신설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의하면 환급대상 의료서비스 범위는 다음과 같음

3) 보건복지부, 「외국인 환자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안내」, 2016. 3.

4) 국가법령정보시스템,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query=%EC%A1%B0%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J107:3>, 검색일자: 2020. 3. 10.

- 가. 쌍꺼풀 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다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 나.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용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 (환급방법 및 절차) 부가가치세 환급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음⁵⁾

- 특례적용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내부 및 홈페이지에 특례적용 의료기관이라는 표찰 또는 안내문 및 환급절차를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로 게시하여야 함

[그림 II -1] 표찰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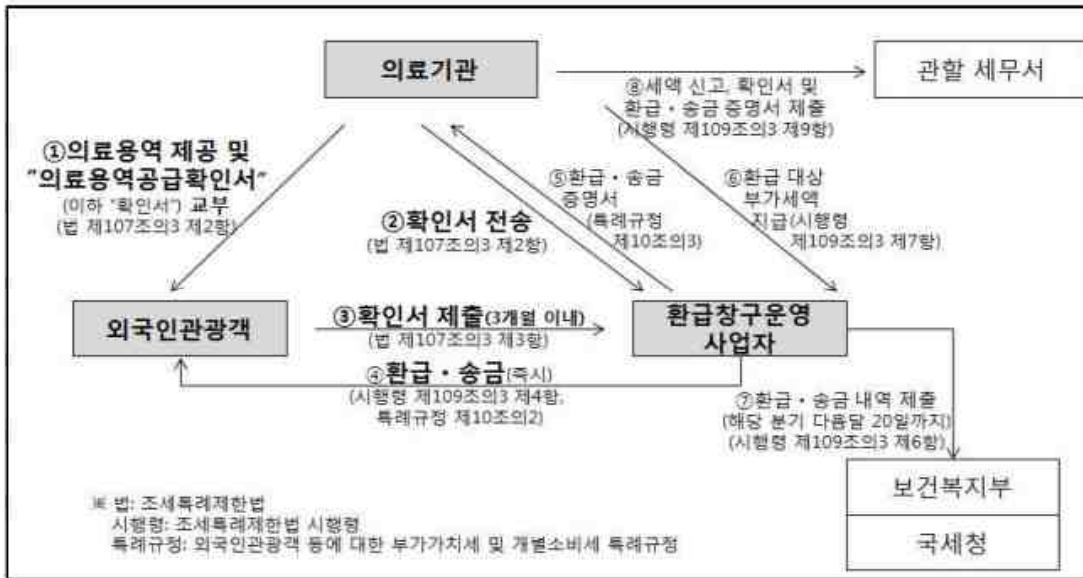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외국인 환자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안내」, 2016. 3, p.7에서 인용.

- 특례적용 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에게 환급대상 의료용역을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가액으로 공급하고, 부가세 환급절차 고지 및 의료용역공급확인서 1부를 교부
-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제출받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지체 없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환급 또는 송금하되,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제비용을 공제할 수 있음

5) 보건복지부,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2016. 3. 22.)

[그림 II -2] 외국인 환자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



자료: 보건복지부, 「외국인 환자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안내」, 2016. 3. p.9에서 인용

□ (환급장소) 환급장소는 다음과 같음⁶⁾

- 출국항 소재 보세구역 안에서 환급 또는 송금할 수 있도록 하되, 1회 공급가액이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0조의4 제3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이며 외국인 관광객의 출국 여부 확인이 가능하고 출국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얻은 경우 그 외의 지역에서도 환급 또는 송금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 관광객이 환급창구가 개설되지 않은 출국항에서 출국하는 경우 출국항 내 수거함을 통해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함

2. 제도 운용 현황

가. 외국인 환자 현황

- 동 제도는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에만 적용되며, 매 3년마다 등록갱신을 하도록 함

6) 보건복지부,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2016. 3. 22.)

- 2017년 12월 31일 기준,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등록 의료기관은 1,664개소로 전체 개설 의료기관 수의 약 2.5%를 차지하며, 유치업자는 1,345개소로서 서울시 소재 유치업자가 전체의 약 65.7%를 차지함
- 이에 따라 미용성형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역시 증가함

□ 외국인 환자의 진료건수 및 미용성형 진료과 외국인 환자 진료건수는 증가추세에 있음

- 외국인 환자의 진료건수는 증가추세에 있음(<표 II-2>)
 - 35.5만건(2014년) → 37만건(2015년) → 42.5만건(2016년) → 39.7만건(2017년) → 46.4만건(2018년)
 - 다만, 2017년에 전반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감소, 특히 중국인 관광객의 감소가 외국인 환자 진료건수의 감소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음

<표 II -2> 일반 진료과 외국인 환자 진료건수

(단위: 명)

연도	내과통합 ¹⁾	검진센터	산부인과	정형외과	진료과 전체 ²⁾
2009	18,398	8,980	3,965	3,196	66,308
2010	23,632	13,286	5,656	4,975	101,592
2011	34,330	19,894	7,568	6,876	154,816
2012	45,994	23,898	10,905	9,643	207,059
2013	68,453	28,135	15,899	14,597	280,309
2014	79,377	35,858	19,039	19,211	355,389
2015	79,091	34,284	18,986	22,468	370,493
2016	85,075	39,743	23,081	24,121	425,380
2017	80,507	39,156	20,145	22,730	397,882
2018	89,975	41,230	24,472	23,864	464,452

주: 1) 내과통합: 일반내과, 감염내과, 내분비대사내과, 류마티스내과,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신장내과, 알레르기내과, 혈액종양내과, 호흡기내과, 가정의학과(11개 진료과)

2) 진료과 전체: 내과통합, 성형외과, 피부과, 검진센터, 산부인과, 정형외과, 한방통합(한의과, 한방내과, 사상체질의학과, 한방부인과, 한방재활의학과, 침구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소아과, 한방이비인후과, 한방안과), 신경외과, 일반외과, 치과, 안과,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비뇨기과, 신경과, 그 외 진료과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자료

- 미용성형 진료과 외국인 환자 진료건수(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역시 증가추세에 있음(<표 II-3>)
 - 7만 7,876건(2014년) → 8만 4,472건(2015년) → 10만 8,205건(2016년) → 10만 5,483건(2017년) → 14만 3,123건(2018)
 - 진료과별 외국인 환자 진료건수를 바탕으로 동 제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환자 수 통계를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건수 증가 추세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제도가 시행된 2016년의 경우 증가율이 상승하고 있음
 - 2017년에 외국인 관광객과 외국인 환자 진료건수가 감소했음에도 성형외과의 경우에는 2017년에도 2016년에 비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외국인 환자 진료건수가 많은 진료과는 내과통합을 제외하고 2018년을 기준으로 성형외과(66,969명), 피부과(63,671명), 검진센터(41,230명) 순으로 많음

<표 II -3> 미용성형 진료과 외국인 환자 진료건수

(단위: 명, %)

연도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합계	증가율
2009	2,851	6,015	2,032	10,898	
2010	4,708	9,579	3,828	18,115	66.2
2011	10,387	12,978	5,220	28,585	57.8
2012	15,898	17,224	7,001	40,123	40.4
2013	24,075	25,101	8,878	58,054	44.7
2014	36,224	29,945	11,707	77,876	34.1
2015	41,263	31,900	11,309	84,472	8.5
2016	47,881	47,340	12,984	108,205	28.1
2017	48,849	43,327	13,307	105,483	-2.5
2018	66,969	63,671	12,483	143,123	35.7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자료

- 일반 진료과 및 미용성형 관련 진료과의 진료수입 규모는 <표 II-4> 및 <표 II-5>와 같으며, 진료수입 역시 증가 추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II-6>은 외국인 환자 1명당 평균 진료수입을 보여줌
 - 진료과별 진료수입 규모를 살펴보면, 성형외과의 총진료수입 규모가 가장 크며, 다음으로 내과통합, 피부과 순으로 집계됨

- 외국인 환자 1인당 진료수입을 살펴보면 성형외과의 경우 2018년에는 감소했으나 꾸준히 증가추세를 유지하여 평균 400만원 이상의 진료수입을 거두었으며, 이는 기타 다른 과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표 II -4> 일반 진료과 외국인 환자 진료수입

(단위: 백만원)

연도	내과통합	검진센터	산부인과	정형외과	진료과 전체
2009	11,263	6,983	4,399	3,008	54,680
2010	18,958	13,150	7,391	5,620	103,229
2011	28,872	18,215	11,067	8,574	180,880
2012	43,212	29,834	16,412	14,004	267,291
2013	67,072	39,270	25,056	19,959	393,359
2014	81,187	45,184	26,842	24,332	556,918
2015	105,253	45,143	33,967	32,432	669,383
2016	157,181	49,022	41,970	42,442	860,552
2017	96,797	23,995	28,242	27,515	639,863
2018	123,723	32,757	28,067	25,572	623,816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자료

<표 II -5> 미용성형 진료과 외국인 환자 진료수입

(단위: 백만원, %)

연도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합계	증가율
2009	5,788	1,811	1,276	8,875	
2010	14,224	3,829	2,760	20,813	134.5
2011	47,015	8,074	4,399	59,488	185.8
2012	52,498	8,365	6,427	67,290	13.1
2013	82,958	17,304	11,903	112,165	66.7
2014	125,290	18,635	12,376	156,301	39.3
2015	185,559	32,373	16,008	233,940	49.7
2016	221,123	48,777	27,269	297,169	27.0
2017	215,017	45,329	16,386	276,732	-6.8
2018	197,312	45,245	9,960	252,517	-8.8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자료

<표 II -6> 진료과별 1인당 진료수입

(단위: 만원/명)

연도	내과통합	검진센터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2009	61	78	203	30	63
2010	80	99	302	40	72
2011	84	92	452	62	84
2012	94	125	330	49	92
2013	98	140	344	69	134
2014	102	126	346	62	106
2015	133	132	450	101	142
2016	185	123	462	103	210
2017	120	61	440	105	123
2018	138	79	295	71	80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2018년 기준으로 전체 외국인 환자 가운데 중국 국적의 외국인 환자 비율이 31.2%로 가장 많고, 특히 성형외과 외국인 환자 중 중국인의 비율은 53.2%를 차지하고 있음(<표 II-7>)
- 중국 국적의 외국인 환자 비율은 31.2%이고, 미국 국적의 외국인 환자는 11.9%, 일본 국적 외국인 환자는 11.2%임
 - 중국, 미국, 일본 이들 세 국가가 전체 외국인 환자의 약 54%를 차지하고 있음

<표 II -7> 주요국별 총환자 수 및 성형/피부과 환자 수(2018년)

(단위: 명(%), 건)

	총 실환자 수 ¹⁾	성형/피부과 환자 수 ²⁾
미국	45,213(11.9%)	8,622(6.6%)
일본	42,563(11.2%)	24,772(19.0%)
중국	118,310(31.2%)	50,988(39.0%)
러시아	27,185(7.2%)	3,671(2.8%)
몽골	14,042(3.7%)	1,966(1.5%)
기타	131,654(34.7%)	40,621(31.1%)
합계	378,967(100%)	130,640(100%)

주: 1. () 안은 비중임

- 1) 동일 환자가 복수의 진료과를 방문하거나 재진을 받아도 환자 1명으로 집계한 실환자 수
- 2) 1명의 환자가 복수의 진료과를 방문한 경우, 방문한 진료과별로 1명으로 표기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9. 4. 17.) 및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외국인 환자 미용성형 진료건수의 증가와 더불어 총진료수입도 증가추세에 있음
(<표 II-8>)

- 성형외과의 경우 2014년 1,253억원에서 2015년 1,856억원, 2016년 2,211억원, 그리고 2017년에는 2,150억원으로 증가함
- 피부과의 경우에 2014년 약 186억원, 2016년에는 약 488억원까지 증가하였으며, 2018년에는 약 452억원임
- 기타 진료과 역시 비슷한 추세를 보이며, 사드 사태가 있었던 2017년 모든 진료과목의 진료수입이 감소함
- 주목할 만한 점은 성형외과 및 피부과의 진료수입은 기타 진료과의 진료수입에 비해 감소 비율이 작다는 점임

<표 II -8> 주요 진료과목 진료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통합 ¹⁾	검진센터	치과
2012	52,498	8,365	43,212	29,834	6,427
2013	82,958	17,304	67,072	39,270	11,903
2014	125,290	18,635	81,187	45,184	12,376
2015	185,559	32,373	105,253	45,143	16,008
2016	221,123	48,777	157,181	49,022	27,269
2017	215,017	45,329	96,797	23,995	16,386
2018	197,312	45,245	123,723	32,757	9,960

주: 1) 내과통합: 일반내과, 감염내과, 내분비대사내과, 류마티스내과,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신장내과, 알레르기내과, 혈액종양내과, 호흡기내과, 가정의학과(11개 진료과)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나. 환급 의료기관 현황 및 환급창구운영사업자 현황

□ <표 II-9>는 진료과별로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과 부가가치세 환급 가맹기관으로 등록된 의료기관의 현황을 연도별로 보여줌

- 성형외과의 경우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기관은 2016년 553개에서 2017년에는 361개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 추세로 2019년 440개가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기관이며, 이 중 296개 기관은 부가가치세 가맹기관임

- 다른 진료과의 경우에도 비슷한 추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특히 성형외과 및 피부과가 주로 미용 및 성형과 관련한 의료용역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치기관 대비 부가가치세 등록기관의 비율이 높음

<표 II -9> 진료과별 부가가치세 환급 의료기관 현황

(단위: 건)

	성형외과		피부과		종합진료		치과		한방	
	등록	가맹	등록	가맹	등록	가맹	등록	가맹	등록	가맹
2016	553	217	212	66	220	22	553	10	344	10
2017	361	258	100	63	159	45	254	29	180	12
2018	414	282	119	69	174	44	289	28	205	11
2019	440	296	129	76	180	43	287	31	203	11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표 II-10>은 현재 부가가치세 환급 운영 사업자의 통계를 보여주며, 이들은 의료기관과 가맹 계약을 맺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시행하는 역할을 함
 - 대표 운영사업자로는 글로벌 텍스프리, KICC, KTIS, 큐브리펀드, 태경이지텍스프리, 글로벌 인사이트 등이며, 이들이 전체 부가가치세 환급건수의 98% 이상을 차지함
 - 다음 절에서 살펴보겠지만, 2019년에 부가가치세 환급건수가 증가하면서 모든 부가가치세 환급 운영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II -10> 환급창구 운영사업자별 부가가치세 환급 현황

(단위: 건)

	글로벌 텍스프리	KICC	KTIS	큐브리펀드	태경이지텍스프리	글로벌인사이트
2016	17,322	2,986	11,545	1,093	431	282
2017	27,531	4,108	14,154	3,115	657	773
2018	44,973	5,165	18,951	5,113	901	1,159
2019	119,522	9,349	242	8,295	1,299	1,576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다. 환급 규모

- 미용성형 관련 진료수입의 증가로 인해 환급되는 부가가치세 규모도 증가하고 있음(<표 II-11>)
 - 환급액은 2017년 105억원에서 2018년 138억원으로 증가하였고, 2019년 6월까지 환급액이 86억원으로 정부에서는 153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예상
 - 2016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39개월간 407억 7,432만원의 부가가치세가 환급되었으며 환급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에는 159억원으로 추정됨

<표 II -11>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현황

(단위: 천, 억원)

연도	환급 결정건수	환급액
2016년(9개월)	33,659	79
2017년	50,338	105
2018년	76,335	138
2019년 6월	59,548	86
2019년 정부 전망	-	153
2020년 정부 전망	-	159

자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 <표 II-12>에는 미용성형 의료용역별 부가가치세 환급 액수 현황을 연도별로 정리함
 - 2017년까지는 쌍꺼풀 수술의 부가가치세 환급 액수가 가장 컸던 반면, 2018년에는 안면윤곽술의 부가가치세 환급액수가 가장 컸으며, 2019년에는 주름살제거술의 부가가치세 환급액수가 가장 큼
 - 연도별로 꾸준히 부가가치세 환급 액수가 큰 의료용역은 쌍꺼풀 수술, 코성형 수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피부재생술 등이며, 최근에는 탈모치료술 및 모발이식술의 부가가치세 환급 액수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표 II-13>은 국적별 외국인 환자의 부가가치세 환급 건수 통계를 연도별로 보여주는데, 구체적인 논의는 제 V 장에서 정리함
 - 부가가치세 환급을 가장 많이 받는 외국인의 국적은 중국 및 일본이며,

- 2017년까지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가장 많이 받은 반면, 2018년부터는 일본 국적의 외국인들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남
- 그 뒤를 이어 미국, 러시아 국적을 가진 외국인들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비율이 높았음

〈표 II -12〉 미용성형 의료용역별 부가가치세 환급 현황

(단위: 백만원)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액수			
	2016	2017	2018	2019
쌍꺼풀 수술	1,326	1,533	1,362	1,883
코성형 수술	978	1,219	1,611	2,065
유방 수술	413	636	899	1,268
지방흡입술	587	797	1,146	1,763
주름살제거술	990	1,389	1,763	2,657
안면윤곽술	1,107	1,832	2,054	2,500
치아성형술	9	14	35	38
악안면교정술	134	230	301	232
색소모반, 주근깨, 기미 등	123	160	203	220
여드름 치료술	26	38	49	49
제모술	3	4	2	7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205	247	376	563
문신술, 피어싱	41	35	23	22
지방용해술	127	250	239	146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향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1,212	1,436	2,023	2,328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표 II -13〉 주요국별 부가가치세 환급전표 발행건수

(단위: 건, %)

	2016	2017	2018	2019
미국	1,959(5.8)	3,444(6.8)	3,929(5.1)	5,366(3.8)
일본	10,417(30.9)	17,424(34.6)	29,839(39.1)	63,678(44.9)
중국	14,708(43.7)	19,553(38.8)	28,774(37.7)	47,268(33.3)
러시아	375(1.1)	557(1.1)	697(0.9)	833(0.6)
몽골	263(0.8)	344(0.7)	376(0.4)	379(0.3)
기타	5,937(17.6)	9,016(17.9)	12,720(16.7)	24,252(17.1)
합계	33,659(100)	50,338(100)	76,335(100)	141,776(100)

주: () 안은 비중임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Ⅲ. 관련 연구 및 제도 검토



Ⅲ. 관련 연구 및 제도 검토

1. 선행 연구 문헌 검토

-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한 학술적인 연구는 저자가 파악한 바로는 없음
 - 정책을 평가하는 연구 보고서로는 김순구·정연일(2017)이 유일한 것으로 파악됨
 - 기타 유사한 제도(호텔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제도의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로는 박상곤(2015), 진성 외(2019)가 있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박상곤(2015)의 연구를 간략히 검토함
 - 마지막으로 동 제도와 관련이 있는 세 가지 연구를 살펴봄

가. 김순구·정연일(2017),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제 효과 분석 연구

- 김순구·정연일(2017)은 본 연구에서 수행하는 연구와 유사한 성격의 연구로서, 2015년 동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 의료시장 및 거래투명성 확보에 미친 영향을 추정함
 - 구체적으로는 동 제도의 도입으로 불법 브로커의 횡포를 막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실적에 개선이 있었는지 여부를 추정하고,
 - 진료비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환자들의 신뢰, 만족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

- 실증분석을 통해 연구의 가설 질문을 검토하였으며, 특히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제도를 평가함
 - 설문조사 결과, 부가가치세 환급제도에 대해 58.4%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부가가치세 환급을 많이 이용하는 중국 및 일본 국적의 외국인 환자들에게서 긍정적인 응답이 높았음

- 또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때문에 한국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68.6%로 높게 나타났음
- 의료기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부가가치세 환급제도가 불법거래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6.5%로 나타났으며, 52.2%는 거래 양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함
- 마지막으로 과표 양성화 효과에 대한 제언에서 제도 시행이 유지되어 과표 양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함

□ 본 보고서는 김순구·정연일(2017)과 몇 가지 차별점이 존재함

- 첫 번째 차별점은 본 보고서는 제도가 시행된 이후 4~5년의 누적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 및 관광 수입, 그리고 과표 양성화 추정치의 시계열 자료를 관측하여 추정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며,
- 두 번째 차별점은 본 보고서는 김순구·정연일(2017)과 비교하여 좀 더 정교화된 방법론을 적용하여 실증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임
- 김순구·정연일(2017)의 실증분석은 설문조사 결과를 해석함으로써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려는 점에 반해, 본 보고서는 제도의 효과를 정확히 식별(identification)하기 위해 계량경제 모형을 적용하였으며, 이론적 타당성 분석과 설문조사 분석까지 포함하여 논의를 구체화하였다는 점이 차별점이라 할 수 있음

나. 박상곤(2015), 호텔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제도의 효과분석

- 본 연구에서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 사이 호텔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이용한 혹은 이용하지 않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설문과 계량 모형 적용을 통해 제도의 효과를 추정함
- 구체적으로는 제도가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재방문 의사, 타인 추천의향, 여행 후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함
- 효과의 추정에 사용된 계량 모형은 성향점수 매칭법임
 - 제도의 배정 여부가 실험에 기반을 두지 않았으나 제도 수혜 여부에 관측 가능한 특성들이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매칭 추정치가 인과효과로 해석되기 위한 조건부 독립성 가정이 충족되었다고 가정함

- 매칭에 사용된 특성변수는 인구통계적인 특성(성별, 학력, 연령, 직업, 언어권)과 여행 특성(동반인원 수, 개인 여행 여부, 여가/여행목적 여행 여부), 과거 한국 방문 경험임

□ 분석의 주요 추정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호텔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는 제도를 수혜한 집단의 전반적 만족도를 2.33%, 재방문 의사를 7.01%, 타인추천 의향을 6.66%, 여행 후 이미지를 6.46%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효과의 강건성을 검토하기 위해 척도점수로 나타난 종속변수를 지시변수로 전환하거나 통제집단의 구성을 변화시켜 동일한 검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제도가 주관적 척도 점수들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호텔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제도에 의해 직접적으로 유발되는 지출은 8만 7,160원~22만 1,960원, 관광산업세수유발승수 직접효과(0.0705) 및 간접효과(0.034) 고려 시의 효과는 9만 6,268~24만 5,154원임
-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이용한 관광객 한명당 평균 환급금액이 12만 9,100원임을 고려할 때, 제도의 순효과는 -3만 2,832원에서 9만 2,860원 수준으로 추정함

다. 조성찬·이훈영(2019), 국내 의료관광 수요의 결정요인 실증 분석 - 패널 데이터 분석 기법을 중심으로

- 의료관광과 같은 국가적 차원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는 것이 필요함
 - 하지만 기존의 의료관광 수요 예측은 연간보고서 또는 외국기관에서 제공하는 추정치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잠재 수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만 수행되어 왔으며, 수요 예측 기법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의료관광의 수요 결정 요인들을 반영해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의료관광객 수요를 보다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 예측모형을 정립하여 분석함
 - 각 국가별 특성 및 상호 연관성과 시간에 따른 동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내 총생산, 환율, 소비자 물가지수와 같은 경제적 지표와 보건 관련 지출, 의

사 수 및 병상 수 등과 같은 의료관련 지표를 활용하여 의료관광 수요 영향
요인들을 탐색함

- 분석 자료는 의료관광 입국자 수가 많은 상위 99개 국가의 9개년도(2009~2017년)
의 자료를 활용함
 - 분석방법으로는 자료의 동태적 특성과 횡단면적인 변수들 간 상호연관성을 동
시에 반영하는 방법론인 패널 데이터 분석기법을 사용함

- 분석결과, 소비자 물가지수(-), 인구 1,000명당 병상 수(-), 의료비 총지출(+), 정
부의 1인당 보건 관련 지출(-), 건강 관련 지출의 본인부담비율(-)이 수요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이러한 요인을 고려하여 의료관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 수 있음
 - 또한, 본 연구의 실증연구 결과와 더불어서 거시계량경제학적 관점에서 국내
의료관광 수요 결정요인을 탐색하고, 수요 예측 선행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
는 패널 데이터 분석기법으로 수요 결정요인을 추정했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
의가 있다고 주장함

**라. 유예·박상문·김명수(2016), 한국 의료서비스의 외국인 환자 유치에 관한 연구:
한국성형외과의 중국인 환자 유치를 중심으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의 2013년도 자료에 따르면, 전체 진료비 수익이
3,934억원으로 1인당 평균 진료비는 186만원, 입원환자 평균 진료비는 923만원인
데, 2013년 외국인 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내국인의 170.6%로 나타나 내국인
보다 외국인 환자의 평균 진료비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 중 중국인 환자가 지불한 총진료비는 1,016억원, 입원환자가 지불한 총진료
비는 305억원으로 1인당 평균 진료비는 181만원,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
는 662만원인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이 한국의 외국인 환자 시장 규모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병원들의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 자명함

에도 불구하고 이들 외국인 환자 유치 및 병원의 성과 관리 등에 대한 선행 연구는 미흡한 편임

- 특히, 진료과목에 있어서는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성형외과와 관련된 기존 연구가 부족하며, 매년 증가하는 중국인 환자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찾아보기는 더욱 힘든 실정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성형환자 유치를 위한 한국의 성형외과 병원들의 외국인 환자 유치 모형을 개발하고 실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 환자 유치병원으로 등록된 266개 성형외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실증적으로 연구 모형을 검증하는 연구를 진행함

- 연구 모형에는 병원의 특성 변수들과 함께 마케팅 활동 관련 변수들을 추가해 분석함으로써 이를 통해 향후 관련 연구들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무자들에게는 충분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저자는 설명함

□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및 결과의 내용에 따라 한국의 성형외과 병원들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함에 있어 보다 더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업력이 오래된 병원이나 신생병원에 비해 설립 기간이 상대적으로 좀 더 긴 성형외과 병원의 경우가 중국인 환자 유치 성과가 더 높았으며 병원 원장 수가 많은 성형외과들도 중국인 환자 유치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둘째,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내 환자와 마찬가지로 개별 환자에 대한 맞춤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웹 2.0의 본질을 고려한 양방향성의 의사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함
 - 외국인 환자를 위해 단순히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상담이나 최근 유행하고 있는 SNS 활용 부분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함
 - 특히, 분석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위챗(Wechat)이나 웨이보(Weibo)를 통해 중국인 환자들이 병원 및 성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수록 환자 유치 성과는 높아진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
 - 따라서 성형에 대한 상세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으며 환자 개개인에 맞춤화된 정보 또한 적시에 제공될 수 있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각 병원에 SNS 및 게시판이나 채팅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 배치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대중매체인 TV의 프로그램도 활용이 가능하다면 병원의 입장에서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특히, 중국이나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한류의 영향으로 인해 한국의 드라마나 연예인, 각종 연예 프로그램 등이 외국인들에게 전례 없는 큰 인기를 얻고 있음
 - 여러 규정 및 법의 테두리 내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만 활용한다면 이 역시 병원의 성과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마. 서정교(2011), 외국인 환자 유치활성화 투자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분석: 의료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 2009년 5월 「의료법」 개정 등에 힘입어, 관련 의료시설의 확충과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이 적극적으로 진행된 바 있음
 - 2009년 12월말 기준으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경기, 제주 등 7개 지역 1,428개 의료기관(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기타)이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됨
 - 이러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정책은 산업연관효과로 인해 의료산업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직·간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었음
- 본 논문은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정책의 효과를 계량적으로 추정해 봄으로써 향후 외국인 환자 의료서비스 확대 정책을 통한 의료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함의와 판단근거를 제공하고자 함
 - 이 논문에서는 의료관광산업에 대한 투자가 각 산업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효과를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기초로, 의료관광산업의 특성에 맞는 산업연관표로 재작성하여 분석한 산업별 투입산출 분석기법을 소개하였음
 - 그리고 이러한 산업연관분석(Input-Output Analysis)을 통하여 이들 산업에 대한 투자가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생산적인 역할과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산업별·유발계수별로 비교·분석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함

- 2009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07년 산업연관표」에 의거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주로 사용한 통합대분류(28개부문) 방식과는 달리 통합소분류(168개부문) 방식을 1차 분석대상 자료로 사용함

□ 분석결과, 의료관광산업은 국민경제의 거시적인 구조 안에서 중간재로서 또는 최종소비재·자본재로서, 다른 산업부문과 상호의존관계 속에서 국민경제에 직·간접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나타남

○ 의료관광산업에 대한 투자를 산업연관분석 기법에 의하여 분석한 결과 중 주요 내용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외국인 환자유치를 위해 최종수요 100억원 투자 시 154개 부문 통합 산업모형에 의한 의료관광산업 투자의 각종 유발효과를 계산하면, 주요 파급효과인 생산유발효과는 176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80억 4천만원, 피용자보수유발효과는 36억원, 영업잉여유발효과는 28억 4천만원, 생산세 유발효과는 8억 5천만원, 수입유발효과는 19억 6천만원, 고용유발효과는 136명, 취업유발효과는 237명으로 나타남
- 둘째, 의료관광산업의 경우 부가가치유발계수(0.8040), 피용자보수유발계수(0.3599), 영업잉여유발계수(0.2841), 생산세 유발계수(0.0854)는 154개 전체산업 유발계수의 각 평균 계수값보다 큼
- 그러나 생산유발계수(1.7595), 수입유발계수(0.1960), 고용유발계수(1.3584), 취업유발계수(2.3706)는 전체 산업평균보다는 상대적으로 약간 작지만 자체산업효과만 고려할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는 큰 편임
- 셋째, 의료관광산업의 경우 계수값이 154개 전체 산업 평균(1.0000)보다 영향력계수(0.8993)는 낮지만 감응도계수(11.8409)는 매우 커서 의료관광산업이 타 산업에 비해 전방연관효과가 아주 큰 산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 넷째, 각종 유발효과의 질적 측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의료관광산업의 경우 수입부문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문 즉 생산, 부가가치,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생산세, 고용 및 취업 측면에서 타 산업 효과보다 자체산업 효과가 더 큼

2. 해외 사례 검토

가. 터키

- 중동 주요 언론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터키는 쿠웨이트·UAE·바레인 등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걸프협력회의) 국가와 같은 무슬림 문화권으로서 음식·문화·종교 등에 있어 크게 이질감이 적으며, 유럽·미국에 비하여 비용효율 측면에서도 저렴하고도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의료관광객들의 터키 의료관광이 크게 증가하였음⁷⁾
 - 현지 미디어에 따르면 의료목적의 방문객은 10년간 급증하였으며, 연간 약 70만명이 방문하고 있음
 - 2017년 터키 방문 GCC 의료관광객은 750,000명으로 집계됨
 - 터키를 방문하는 중동 의료관광객의 주요 관심 분야는 안과, 산부인과, 미용(모발 이식) 등이었으며, 라식수술, 렌즈삽입술, 모발이식 등이 주요 시술 분야임
 - 의료관광 목적지로의 인기요인 중 하나는 남성용 모발 이식으로, 연간 10만명 이상이 치료 중임

- 외국인 의료관광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함
 - 예약날짜 조정·통역사 배치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였으며,
 - 2018년에는 외국인 치료비의 일부를 부가가치세(VAT)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나. 이스라엘

- 이스라엘에서는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특정 관광서비스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며, 국민건강 조례에서 승인한 병원에 입원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고 있음⁸⁾

7) 한국관광공사, 「2018년 4분기 의료관광 해외 뉴스 클리핑」에서 그대로 인용함, <https://kto.visitkorea.or.kr/viewer/view.kto?id=58955&type=bd>, 검색일자: 2020. 3. 19.

8) 이스라엘 재무부 홈페이지, <https://taxes.gov.il/English/Vat/Pages/Guides/Zero-Vat-for-Tourist.aspx>, 검색일자: 2020. 3. 19.

- 이스라엘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체류 기간 동안 관광객(외국인)에게 제공되는 광범위한 관광 서비스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음
- 1975년 「부가가치세법」 30(a)(8) 및 「부가가치세 규정」 1976년 12(a), 12a(c) 및 12b조에는 특정 관광 서비스에 0의 세율이 적용됨이 명시되어 있음
-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서비스 유형은 다음과 같으며, 아래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7%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됨
 1. 숙박 호텔 숙박 및 관광객에게 제공되는 추가 서비스
 - 음식 및 음료
 - 수영장 및 관련 서비스 이용
 - 세탁 서비스
 - 객실에서 사용하는 TV 대여요금
 - 사우나 및 관련 서비스 이용
 - 전화 및 팩스 사용
 - 스포츠 및 건강 시설 사용
 - 문서 번역, 서신 작성 및 기타 사무 서비스
 2. 자율 주행을 위한 개인 자동차대여 서비스
 3. 개인 차량 또는 버스로 여행하기 위한 교통수단
 4. 버스 투어 또는 크루즈 동안 제공되는 식사
 5. 이스라엘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모든 종류의 보트에 의한 관광객 수송
 6. 이스라엘의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모든 종류의 항공기에 의한 관광객 수송
 7. 입원(국민건강 조례에서 승인한 병원 내)
 8. 최소 50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한 국제회의 참가권 판매
 9. 외국인에게 전시공간 이용권 및 전시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관련 서비스

다. 캐나다⁹⁾

- 캐나다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의 상품 구입 및 외국인사업자의 용역 소비에 대해서는 재화용역세를 사후환급해주고 있는데, 숙박요금에 대해서도 사후환급을 해주고 있음

9) 박상곤(2015) pp. 54~55에서 그대로 인용함

- 1992년 6월부터 Tax Refund for Visitors to Canada 프로그램에 의해 외래관광객의 상품구입에 대한 사후환급과 함께 호텔, 모텔, 리조트, 캠핑 등 숙박시설에 부과하는 재화용역세를 일정 금액이상에 대해 기준요건을 두어 환급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하지만 주정부가 과세하는 판매세 8%는 환불하지 않음
 - 이처럼 사후면세 형태로 시행하는 이유는 단기 체류 관광객에게만 환불하고 이외의 외국인이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외래관광객이 본국에 돌아간 것을 확인한 후 면세 혜택을 주려는 취지임
- 사후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숙박요금은 1박당 50캐나다달러 이상, 상품구입과 숙박요금을 합쳐서 최소 200캐나다달러 이상이어야 환급의 대상이 되고 숙박기간은 1개월 이내만 인정됨
-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양식과 함께 숙박일수가 나타나는 원본 영수증을 Canada Customs and Revenue Agency에 제출하여야 함
 - 패키지의 경우에는 부과된 세금의 50%만을 환급해 주는데 개인은 신청할 수 없고 여행사가 재화용역세 환급을 공제한 가격에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게 됨
 - 환급신청은 캐나다 출국 후 11개월 이내에 환급 신청절차를 거쳐야 환급 적용을 받을 수 있음

3. 국내 유사 제도 검토 및 정책 현황

가. 보건복지부의 외국인 환자 유치 정책¹⁰⁾

- 우리 정부(보건복지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정책적 목표를 제시하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우선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건전성, 투명성 및 편의성, 안정성 제고 등의 3가지 정책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10)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해외환자 100만 유치 쿼텀점프 원년 선언!」, 2014. 2. 9.; 「중국 미용·성형 환자 등 외국인 환자 권리보호 강화된다」, 2015. 2. 12.; 「복지부, 2015년 외국인 환자 30만명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 발표」, 2015. 8. 31.; 「4월 1일부터 외국인 환자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2016. 3. 31.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건전성 강화
 - 불법 브로커 점검·단속
 -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등
- 투명성 및 편의성 제고
 - 의료 정보제공 체계 구축
 - 우수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 제도 도입
 - 부가가치세 환급
 - 관광·숙박·뷰티 등이 연계된 원스톱 서비스 제공
 - 통역·교통·숙박·비자 등에 대한 컨시어지 서비스 제공
- 안전성 및 외국인 환자 권익보호 강화
 - 사전 설명의무 부과
 - 외국인 환자 종합지원 창구 운영
 - 배상보험 가입 제고 등

1) 건전성 강화

- 불법 브로커에 의한 수수료·진료비 부풀리기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브로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단속을 실시
 - 또한 불법 브로커 근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의료기관의 불법 브로커 거래 금지를 추진
 - 해외환자 유치사업자를 대상으로 주기적(매 3년)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불법브로커 신고센터의 기능도 강화

2) 투명성 및 편의성 제고

- 외국인 환자가 현지에서 진료비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
 - 성형수술 유형별로 진료비 책정 범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 선택권 강화
 - 브로슈어 제작, 홈페이지 게재, 동영상 배포 등

-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우수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홍보 및 지원¹¹⁾
 - 평가제도 대상기관은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중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
 - 평가항목은 외국인 환자의 의료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체계와 의료기관의 안전보장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체계로 구성

<표 III-1>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 항목

만족도 향상 체계 항목	환자 안전 체계 항목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및 운영체계 전문 인력 및 전문의 보유 의료분쟁 예방 및 기타	안전보장활동 환자진료 감염관리

자료: 외국인 환자 유치 정보시스템, <https://www.medicalkorea.or.kr/cert/intro.do>, 검색일자: 2020. 2. 12.

- 과도한 수수료 등 비정상적인 거래 행태를 근절하고 투명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외국인 환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 3

<표 III-2> 「부가가치세법」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p>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4. 1. 1., 2014. 1. 28., 2016. 2. 17., 2016. 8. 2., 2018. 2. 13., 2019. 2. 12., 2019. 12. 24.></p> <p>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 용역은 제외한다.</p> <p>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p> <p>나.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p>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시행령/부가가치세법_시행령, 검색일자: 2020. 2. 12.

11) 외국인 환자 유치 정보시스템, <https://www.medicalkorea.or.kr/cert/intro.do>(검색일자: 2020. 2. 12.)

- 외국인 환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닌 의료용역을 소비하고 자진 신고 시 부가가치세를 환자에게 환급
 - 「부가가치세법」상 「의료법」에 따른 용역은 비과세이지만, 비급여 미용·성형 용역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외국인 환자는 환급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의료비를 결제, 의료용역공급확인서(환급전표)를 발급받아 3개월 이내에 환급창구에 제출
 -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진료비 총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백화점 등에 설치된 도심 환급창구에서 환급 가능

<표 III-3> 외국인 환자 이용 가능 환급 창구

구분	환급 창구
인천, 김해, 제주, 김포, 청주 국제공항/ 인천항, 부산항, 평택항	면세구역 내 환급 창구
무안, 양양, 대구 공항	세관 옆 메일 박스
환급 대상 진료비 총액 200만원 이하	백화점 등에 설치된 도심 환급 창구 이용 가능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4월 1일부터 외국인 환자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2016. 3. 31.

- 건강검진 상품과 관광·숙박·뷰티서비스 등이 연계된 통합 바우처 서비스 도입
 - 외국인 환자 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 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각종 부가서비스와 연계하여 윈스톱 서비스를 제공
 - 이를 위해 건강검진 우수 상품 선정 및 개발, 부가서비스 연계, 건강검진 통합 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
- 중동 국비환자 대상 서비스 개선 및 유치 확대를 위해 아랍어 전문 통역, 교통, 숙박, 비자 등 컨시어지서비스 통합 제공
 - UAE 국비환자에 대한 비의료서비스 통합 관리를 먼저 실시하고, 이후 카타르, 쿠웨이트 등 인근 국가의 국비환자 유치까지 확대

3) 안정성 및 외국인 환자 권익 보호 강화

- 외국인 환자 진료 시 진료비 등 사전 설명 의무를 부과
 - 진료비, 부작용, 진료기록부 발급 및 분쟁해결 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설명하도록 의무 부과

- 외국인 환자 종합지원 창구를 운영하여 의료분쟁 시 상담, 절차 대행, 통역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
 - 의료통역 서비스, 외국인 환자 전용 콜센터 운영
 - 환자 불만족 또는 의료사고 발생시 법률 등 상담 서비스 제공, 서류접수 및 절차 대리 등을 지원

-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이러한 정부의 외국인 환자 유치 정책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진되고 있음
 - 2016년 6월부터 시행
 - 이 법의 목적은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 환자의 권익 및 국내 의료 이용편의 증진을 지원하여 외국인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등록의무, 수수료 제한, 보고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우선 이 법에 의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과 유치업자(중개인)는 정부에 등록을 해야 함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 현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지만, 2021년부터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될 예정임
- 등록 대상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 및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자(중개인)임

<표 III-4>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법」 제6조(외국인 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p>제6조(외국인 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p> <p>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를 1명 이상 둘 것. 다만, 진료과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였을 것 <p>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 3.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였을 것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이하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라 한다)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한다.</p> <p>⑤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p> <p>⑥ 제1항,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제5항에 따른 갱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검색일자: 2020. 3. 25.

-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과 유치업자(중개인)는 법에서 규정된 수수료 이내로 수수료를 적용하여야 함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 「외국인 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율 고시」에 제3조에 구체적인 수수료율이 규정되어 있음

- 상급종합병원: 15%
- 종합병원·병원: 20%
- 의원: 30%

<표 III-5>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법」 제9조(과도한 수수료 등의 제한)

<p>제9조(과도한 수수료 등의 제한)</p> <p>①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때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수수료율의 범위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등 중대한 시장질서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의 수수료 또는 진료비의 부과 실태를 조사하여 공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적정한 수수료율의 범위를 고시하여야 한다.</p>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검색일자: 2020. 3. 25.

<표 III-6> 「외국인 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율 고시」 제3조(적정 수수료율의 범위)

<p>제3조(적정 수수료율의 범위) 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외국인 환자 유치 수수료율은 유치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 간의 자율계약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급종합병원: 15% 2. 종합병원·병원: 20% 3. 의원: 30%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검색일자: 2020.3.25.

- 등록된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는 고시된 수수료율을 위반할 경우에 등록취소 및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등록 취소)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과징금)

- 한편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나 유치의료기관이 등록된 유치의료기관이나 등록된 유치업자가 아닌 자에게 진료 알선을 받는 경우 등록이 취소됨
 -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가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 외국인 환자와의 진료계약을 소개·알선한 경우

-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가 아닌 자에게 외국인 환자와의 진료계약 소개·알선을 받은 경우

〈표 III-7〉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법」 제24조(등록의 취소)

<p>제24조(등록의 취소)</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 제1항·제2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외국인 환자가 아닌 자를 유치한 경우 3.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가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 외국인 환자와의 진료계약을 소개·알선한 경우 4.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가 아닌 자에게 외국인 환자와의 진료계약 소개·알선을 받은 경우 5.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성명·상호 또는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6.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시장질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 7. 제15조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여 의료광고를 한 경우 8. 제16조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 등을 위반하여 외국인 환자 사전·사후관리를 한 경우 9. 제22조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등록기간 중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p>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제6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외국인 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p> <p>③ 등록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검색일자: 2020. 3. 25.

- 또한 외국인 환자 유치에 대해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를 한 경우에도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과징금)

〈표 III-8〉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법」 제26조(과징금)

<p>제26조(과징금)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외국인 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를 한 자 또는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수수료율의 범위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제공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검색일자: 2020. 3. 25.

-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는 매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보고의무)
 - 현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지만, 2021년부터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가 보고해야 할 사업실적에 대한 자세한 항목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규정되어 있음

<표 III-9>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법」 제11조(보고의무)

제11조(보고의무)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p>제11조(보고의무)</p> <p>①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p>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전년도 사업실적을 매년 3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8.></p> <p>[시행일: 2021. 1. 1.] 제11조</p>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검색일자: 2020. 3. 25.

<표 III-10>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사업실적 보고)

<p>제9조(사업실적 보고) ①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전년도 사업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7.></p> <p>1.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의 경우: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p> <p style="margin-left: 20px;">가. 외국인 환자의 국적, 성별 및 출생연도</p> <p style="margin-left: 20px;">나. 외국인 환자의 진료과목, 입원기간, 주 질병·부상명 및 외래 방문일수</p> <p>2.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의 경우: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p> <p style="margin-left: 20px;">가. 외국인 환자의 국적, 성별 및 출생연도</p> <p style="margin-left: 20px;">나. 외국인 환자의 방문 의료기관, 진료과목, 입원기간 및 외래 방문일수</p> <p style="margin-left: 20px;">다. 외국인 환자의 입국일 및 출국일</p> <p>②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실적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할 수 있다.</p>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검색일자: 2020. 3. 25.

- 또한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가 사업실적을 허위로 보고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과태료)
- 이 밖에 외국인 환자의 권익보호 위반, 유치의료기관과 유사명칭 사용 등에 대해서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과태료)

<표 III-11>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법」 제31조(과태료)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외국인 환자가 인지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를 위반하여 사업실적을 허위로 보고한 자
3. 제23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검색일자: 2020. 3. 25.

다. 국내 유사한 부가가치세 특례제도

1)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특례제도¹²⁾¹³⁾

- 외국인 관광객이 특례적용 관광호텔로 지정된 관광호텔에서 30박 이하로 숙박하는 경우 숙박요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
 - 「조세특례제한법」 제 107조의2
 - 적용대상 호텔은 「관광진흥업법」상 관광호텔로서 전년 또는 전전년 동기 객실 종류별 공급가액 평균의 10%를 초과하여 공급하지 않은 경우이면서 문화체육부 장관이 지정한 호텔
 - 2020년 기준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 관광호텔은 총 129개¹⁴⁾

12)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외국인 관광객 관광호텔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 추진」, 2018. 2. 7.

13) 문화체육관광부, https://www.mcst.go.kr/kor/s_notice/notice/noticeView.jsp?pSeq=14592(검색일자: 2020. 2. 12.)

14) 한국호텔업협회, http://www.hotelskorea.or.kr/plaza/index_1.php?b_id=001&b_code=&idx=3617&page=1&search_key=&search_val=&mode=view(검색일자: 2020. 2. 12.)

-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특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임
 - 2014년 4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바 있으며, 2018년 1월 재도입되었음
 - 재도입 이후 일몰 시점이 두 차례 연장되었음

〈표 III-12〉 외국인 관광객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변경사항

내용	최초 시행시	재도입시
적용기간	2014.4.1.~ 2015.3.31.	2018. 1. 1.~12. 31. (이후 일몰 시점 두 차례 연장되어 현재는 2020. 12. 31.까지)
환급대상 숙박일수	2일 이상 30일 이하	30일 이하
특례호텔 숙박요금 인상 제한	전년 동기 5% 이하	전년 또는 전전년 동기 10% 이하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외국인 관광객 관광호텔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 추진」, 2018. 2. 7.

라.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제도¹⁵⁾¹⁶⁾

- 외국인 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해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를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 해당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거나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고,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거나 개별소비세액을 환급할 수 있음

-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3조에는 면세 물품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음
 - 다음의 재화를 제외한 물품에 대해 면세 적용
 - 총포·도검 및 화약류
 - 문화재로 지정된 물품
 - 중독성·습관성 의약품

15)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검색일자: 2020. 2. 12.)

16)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외국인_관광객_등에_대한_부가가치세_및_개별소비세_특례규정(검색일자: 2020. 2. 12.)

-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포함한 1회 거래가액이 3만원에 미달하는 물품
- 법령에 의해 거래가 제한되는 물품
- 외화도피 또는 부정유통 방지 등의 사유로 판매의 제한이 필요한 물품(담배, 수출입 금지 물품)

□ 면세판매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세액 상당액을 포함한 가격으로 판매 후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면세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6조 제1항
-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국외로 반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면세판매자가 세액 상당액을 외국인 관광객에게 송금하거나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해 환급 또는 송금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 면세판매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세액 상당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면세물품을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개별소비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즉시환급제도)

-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6조 제2항
- 세액 상당액을 포함한 1회 거래가액이 30만원 미만일 것
 - 2020년 4월부터는 50만원 미만
- 입국 후 즉시환급을 받은 세액상당액을 포함한 총거래가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 2020년 4월부터는 200만원 이하로 변경

〈표 III-13〉 즉시환급 거래 한도

시행	한도
2016. 1. 1.	세액 상당액 포함 1회 거래가액 20만원 미만, 세액 상당액 포함 총거래가액 100만원 이하
2017. 12. 29.	세액 상당액 포함 1회 거래가액 30만원 미만, 세액 상당액 포함 총거래가액 100만원 이하
2020. 4. 1.	세액 상당액 포함 1회 거래가액 50만원 미만, 세액 상당액 포함 총거래가액 200만원 이하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검색일자: 2020. 2. 14.)

IV. 설문조사



IV. 설문조사

- 설문조사를 통해 의료기관의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 여부를 검토함
 -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정책 목표인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및 불법 브로커 근절을 통한 과표 양성화 효과 여부에 대해 검토함

1. 설문조사의 개요

- 조사 설계는 다음과 같이 진행함
 -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의료기관 252개를 선정하여, 전화, 온라인, 팩스 조사를 통해 2020년 4월 8일부터 2020년 4월 14일까지 진행함
 - 외국인 환자들의 설문을 통한 제도의 효과 역시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설문 대상인 외국인 환자들의 섭외가 어려웠기 때문에 본 설문조사는 의료기관에만 초점을 맞춤
 - 구체적인 정보는 <부록 2>를 참고
- 주요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의료기관과 관련한 기본적인 정보(의료기관 규모, 진료과목,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이용 여부 등)를 조사함
 - 제도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 제도의 외국인 환자 유치 기여 효과, 불법 브로커 근절 효과 등에 대해 조사함
- 응답자 분포는 다음과 같음(<표 IV-1>)
 - 의료기관의 소재지는 서울, 경기, 대구, 제주 네 개 지역이며,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한방과를 조사함
 - 의료기관 규모별로 살펴보면 의원급이 98%를 차지하였으며, 병원급 이상의 큰 규모의 의료기관은 2%임

<표 IV-1> 응답자 분포

(단위: 건, %)

구분		사례 수	비율
전체		252	100.0
기관종별	병원급 이상	5	2.0
	의원	247	98.0
진료과	성형외과	101	40.1
	피부과	75	29.8
	치과	25	9.9
	한방과	51	20.2
지역별	서울	182	72.2
	경기	48	19.0
	대구, 제주	22	8.7

2. 설문조사 결과

- (분포) 설문조사 대상 의료기관의 외국인 환자 주요 국적은 중국이 80%가 넘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피부 및 눈, 코, 가슴 수술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을 이어서, 일본이 35.7%, 미국은 15.9% 등으로 국내 의료기관을 많이 방문함(<표 IV-2>)
 - 시술별 분포를 살펴보면 피부 관련 시술이 22.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눈, 코, 가슴수술과 지방흡입술 등이 뒤따름(<표 IV-3>)
 - 한방과의 경우 미용 침시술과 다이어트 시술이 대부분을 차지함
 - 다만 설문조사에서 환자의 국적과 관련한 질문에서 특정 기간에 방문한 환자의 국적을 조사한 것은 아님
 - 따라서 환자의 분포는 제도가 시행된 기간에 대한 환자의 분포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

<표 IV-2> 외국인 환자 국적 분포

(단위: 건, %)

구분	사례수	중국	일본	동남 아시아	미국	러시아 및 동유럽	유럽	중동	기타	
전체	(252)	84.1	35.7	26.6	15.9	6.7	2.8	1.6	8.3	
기관 종별	병원급 이상	(5)	80.0	20.0	20.0	20.0	0.0	0.0	20.0	
	의원	(247)	84.2	36.0	26.7	15.8	6.5	2.8	1.6	8.1
진료과	성형외과	(101)	85.1	41.6	32.7	15.8	5.9	1.0	1.0	14.9
	피부과	(75)	85.3	37.3	17.3	13.3	2.7	2.7	1.3	4.0
	치과	(25)	72.0	12.0	32.0	24.0	16.0	8.0	8.0	8.0
	한방과	(51)	86.3	33.3	25.5	15.7	9.8	3.9	0.0	2.0
지역	서울	(182)	82.4	44.0	21.4	18.1	6.0	3.8	1.6	6.6
	경기	(48)	89.6	16.7	35.4	10.4	6.3	0.0	2.1	14.6
	대구/제주	(22)	86.4	9.1	50.0	9.1	13.6	0.0	0.0	9.1

<표 IV-3> 외국인 환자 시술 분포

(단위: 건, %)

구분	사례수	피부 재생술, 피부 미백술, 항노화 치료술 및 모공 축소술	눈, 코, 가슴 수술	지방 흡입, 리프팅/ 지방 이식, 지방 융해술	치과 시술	색소 모반, 주근깨, 후색점, 기미 치료, 여드름 치료술	미용 침 시술	다이 어트 시술	제모술, 탈모 치료술, 모발 이식술, 문신 관련 시술 및 피어싱	안면 윤곽술 및 안면 교정술	기타	
전체	252	22.6	22.2	11.1	9.9	9.5	6.3	4.8	4.4	3.2	6.0	
기관 종별	병원급 이상	5	20.0	20.0	20.0	40.0	0.0	0.0	0.0	0.0	0.0	
	의원	247	22.7	22.3	10.9	9.3	9.7	6.5	4.9	4.5	3.2	6.1
진료과	성형외과	101	13.9	54.5	17.8	0.0	0.0	0.0	0.0	5.9	5.9	2.0
	피부과	75	50.7	1.3	10.7	0.0	29.3	0.0	0.0	4.0	2.7	1.3
	치과	25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한방과	51	9.8	0.0	3.9	0.0	3.9	31.4	23.5	3.9	0.0	23.5
지역	서울	182	24.2	22.0	14.3	8.2	10.4	4.9	4.4	4.4	4.4	2.7
	경기	48	18.8	18.8	4.2	14.6	8.3	10.4	6.3	4.2	0.0	14.6
	대구/제주	22	18.2	31.8	0.0	13.6	4.5	9.1	4.5	4.5	0.0	13.6

□ **(전반적인 효과)**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활용 여부와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조사대상 의료기관 중 동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42.9%로 인지 못하고 있는 의료기관 57.1%에 비해 낮게 나타남
- 또한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총 108개 의료기관 가운데 실제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81.5%로 나타남
- 제도를 실제 이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제도가 시행된 2016년 이후 4년 이상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의료기관은 75%였으며, 평균 3.5년 제도를 이용함
- 한편, 동 제도를 인지하고 있으나 이용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20개 기관으로서, 외국인 환자 유치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0%를 차지하였으며, 절차가 복잡하다는 의견도 2개 기관에서 나옴
- 제도를 인지하는 106개 의료기관 가운데 47.2%가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로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선정하였고, 진료비 및 수수료 투명화도 37%를 차지하여, 정책의 두 가지 목표인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와 과표 양성화 부분이 실제 현장에서 가장 높은 효과로 인식됨
- 이러한 결과는 기본적으로 제도의 궁극적 취지 달성과 큰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구체적인 해석은 세부적인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함

□ **(외국인 관광객 유치 효과)** 설문조사를 통해 첫 번째 정책 목표인 외국인 관광객 유치 효과를 추정해 봄

- 동 제도와 기존 브로커를 이용한 외국인 환자 유치와의 비교 설문 결과 별 차이가 없다고 응답한 기관이 79.6%로 동 제도의 효과가 더 크다고 응답한 18.5%보다 큰 비율임(<표 IV-4>)
- 피부과 및 치과의 경우 동 제도의 외국인 환자 유치 효과는 더 작은 것으로 조사됨
- 또한 규모가 큰 병원급 이상에서는 동 제도의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됨
- 외국인 환자 유치 수에 덧붙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동 제도를 통한 매출 증가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표 IV-5>)

<표 IV-4> 브로커 시스템과 비교한 동 제도의 외국인 환자 유치 효과

(단위: 건, %)

구분	사례수	별 차이 없음	이득이다	이득이 아니다	
전체	(108)	79.6	18.5	1.9	
기관 종별	병원급 이상	(4)	100.0	0.0	0.0
	의원	(104)	78.8	19.2	1.9
진료과	성형외과	(64)	75.0	21.9	3.1
	피부과	(31)	87.1	12.9	0.0
	치과	(8)	100.0	0.0	0.0
	한방과	(5)	60.0	40.0	0.0
지역	서울	(96)	80.2	17.7	2.1
	경기	(5)	100.0	0.0	0.0
	대구/제주	(7)	57.1	42.9	0.0

- 설문 결과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는 비율) 비율은 29.8%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15.9%보다 높았음
- 사실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되는지 묻는 질문에 ‘보통이다’라고 대답한 경우도 매출 증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 비율을 포함시키면, 70%가 넘는 의료기관이 동 제도의 매출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음

<표 IV-5> 동 제도의 외국인 환자 관련 매출 효과

(단위: 건, %)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비도움	도움
전체	(252)	11.1	18.7	44.0	14.7	1.2	10.3	29.8	15.9
기관 종별	병원급 이상	(5)	0.0	40.0	40.0	20.0	0.0	40.0	20.0
	의원	(247)	11.3	18.2	44.1	14.6	1.2	10.5	29.6
진료과	성형외과	(101)	6.9	16.8	50.5	16.8	1.0	7.9	23.8
	피부과	(75)	13.3	18.7	40.0	13.3	0.0	14.7	32.0
	치과	(25)	12.0	28.0	44.0	8.0	0.0	8.0	40.0
	한방과	(51)	15.7	17.6	37.3	15.7	3.9	9.8	33.3
지역	서울	(182)	11.5	17.6	44.5	15.9	1.1	9.3	29.1
	경기	(48)	8.3	20.8	45.8	10.4	0.0	14.6	29.2
	대구/제주	(22)	13.6	22.7	36.4	13.6	4.5	9.1	36.4

- <표 IV-6>은 동 제도가 시행된 2016년 이후 의료기관의 매출액 증가율에 관해 조사함
- 매출액 증가가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44%로 높았으며, 매출액이 증가했다고 대답한 비율은 약 17%에 불과함

<표 IV-6> 2016년 이후 매출액 증가율

(단위: 건, %)

		사례수	5% 미만	10% 미만	20% 미만	30% 미만	40% 미만	매출액 증가 없음	모름/무응답
전체		(252)	6.3	3.6	2.8	2.0	2.4	44.4	38.5
기관 종별	병원급 이상	(5)	0.0	0.0	0.0	0.0	0.0	60.0	40.0
	의원	(247)	6.5	3.6	2.8	2.0	2.4	44.1	38.5
진료과	성형외과	(101)	4.0	5.0	4.0	1.0	5.0	39.6	41.6
	피부과	(75)	2.7	4.0	1.3	2.7	0.0	50.7	38.7
	치과	(25)	12.0	0.0	0.0	0.0	0.0	56.0	32.0
	한방과	(51)	13.7	2.0	3.9	3.9	2.0	39.2	35.3
지역	서울	(182)	4.9	3.8	2.7	2.2	2.7	44.5	39.0
	경기	(48)	12.5	2.1	4.2	2.1	2.1	41.7	35.4
	대구/제주	(22)	4.5	4.5	0.0	0.0	0.0	50.0	40.9

- <표 IV-7>은 동 제도가 없어질 경우 외국인 환자 방문 빈도에 미치는 효과를 설문한 결과임
- 동 제도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0%가 넘으며, 줄어들다가 다시 증가한다고 응답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그 비율이 73%에 달함

<표 IV-7> 동 제도가 없을 경우의 효과 변화

(단위: 건, %)

		사례수	영향이 전혀 없을 것이다	줄어들다가 다시 증가할 것이다	외국인 환자가 줄어들 것이다	잘 모르겠다
전체		(252)	50.4	22.6	17.5	9.5
기관 종별	병원급 이상	(5)	60.0	0.0	20.0	20.0
	의원	(247)	50.2	23.1	17.4	9.3
진료과	성형외과	(101)	46.5	25.7	17.8	9.9
	피부과	(75)	57.3	17.3	13.3	12.0
	치과	(25)	60.0	24.0	8.0	8.0
	한방과	(51)	43.1	23.5	27.5	5.9
지역	서울	(182)	51.1	22.5	17.0	9.3
	경기	(48)	50.0	25.0	14.6	10.4
	대구/제주	(22)	45.5	18.2	27.3	9.1

- 결론적으로, 동 제도가 외국인 환자 유치 및 외국인 환자 관련 매출에 큰 효과를 준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과표 양성화 효과)** 설문조사를 통해 두 번째 정책 목표인 불법브로커 근절 및 과표 양성화 효과를 설문함

- <표 IV-8>은 불법거래 근절 효과를 보여주는데, 동 제도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31%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15.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성형외과의 경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38.6%로 높았음
- 비록,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높았으나, 불법거래 근절 효과가 매우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5% 내외 수준임
- 결과적으로 불법거래 근절 및 이에 따른 과표 양성화 효과가 존재하긴 하나,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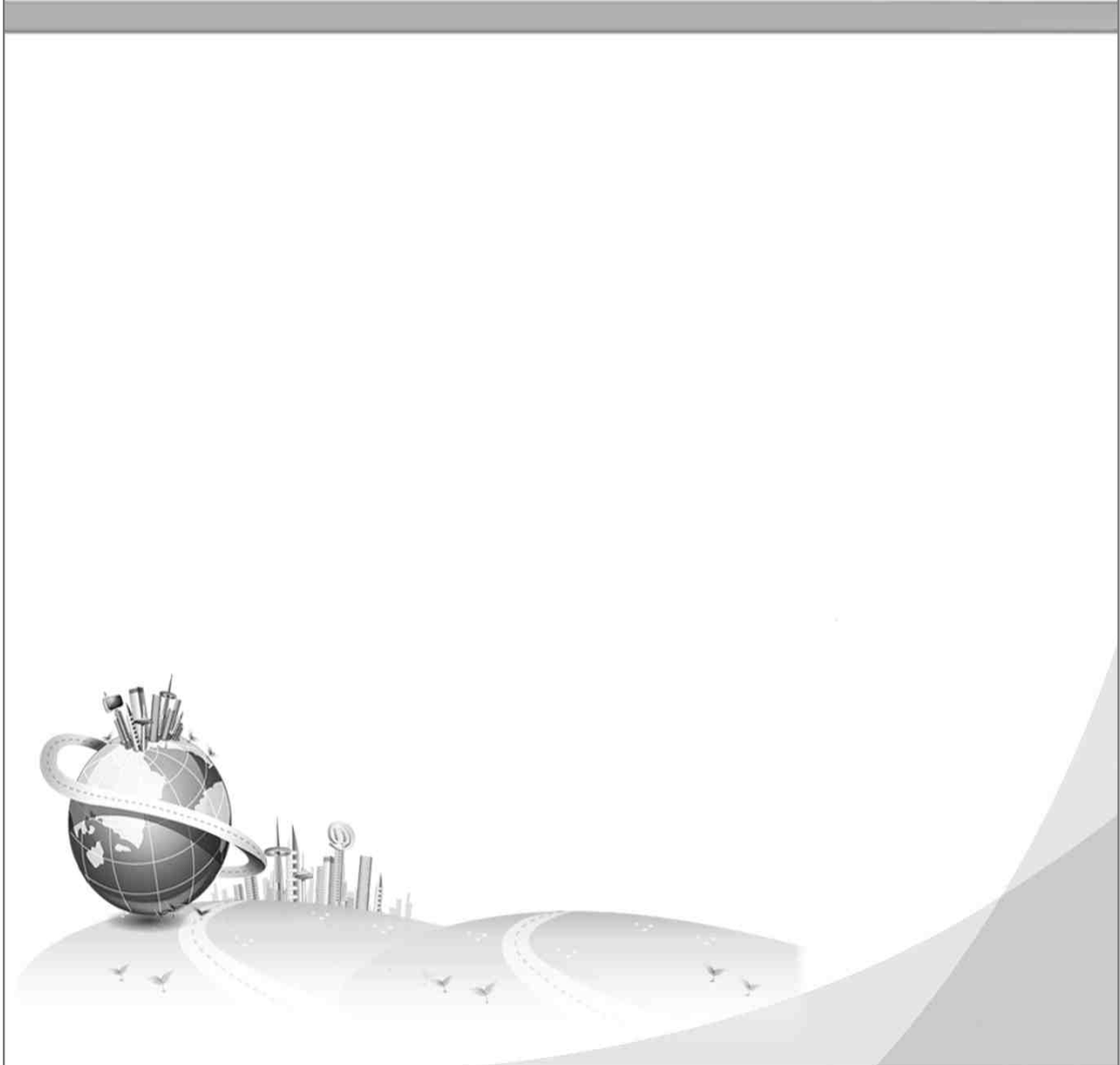
<표 IV-8> 동 제도의 불법거래 근절 효과

(단위: 건, %)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비도움	도움
전체		(252)	6.3	8.7	31.7	26.6	4.4	22.2	15.1	31.0
기관 종별	병원급 이상	(5)	0.0	40.0	0.0	20.0	0.0	40.0	40.0	20.0
	의원	(247)	6.5	8.1	32.4	26.7	4.5	21.9	14.6	31.2
진료과	성형외과	(101)	6.9	7.9	32.7	34.7	4.0	13.9	14.9	38.6
	피부과	(75)	6.7	4.0	36.0	21.3	5.3	26.7	10.7	26.7
	치과	(25)	0.0	32.0	32.0	16.0	0.0	20.0	32.0	16.0
	한방과	(51)	7.8	5.9	23.5	23.5	5.9	33.3	13.7	29.4
지역	서울	(182)	5.5	7.7	31.9	28.6	6.0	20.3	13.2	34.6
	경기	(48)	8.3	14.6	33.3	16.7	0.0	27.1	22.9	16.7
	대구/제주	(22)	9.1	4.5	27.3	31.8	0.0	27.3	13.6	31.8



V. 타당성 분석



V. 타당성 분석

1. 타당성 분석: 이론모형 분석을 중심으로

가.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의료서비스 부가가치세 과세 시 소비균형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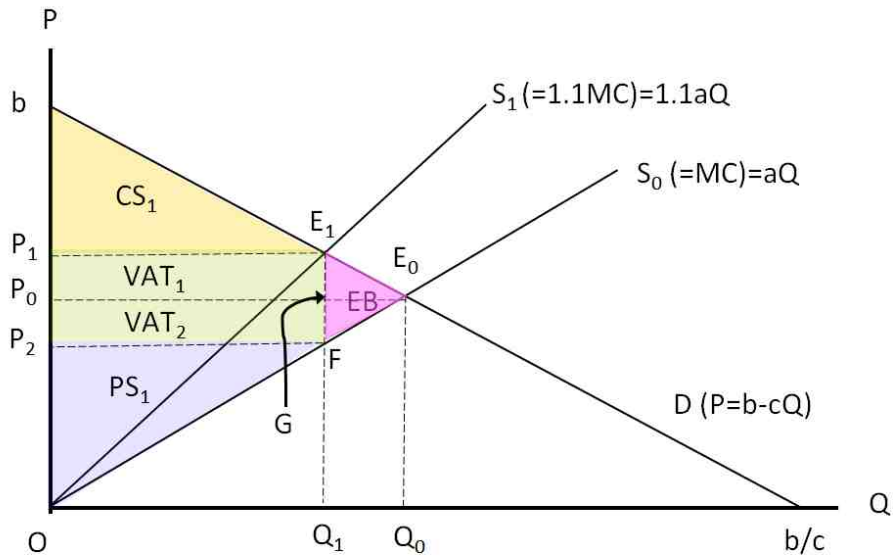
-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미용성형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수요는 다음과 같이 가정함
 - 공급곡선은 한계비용(MC: marginal cost)으로 결정되며, 한계비용곡선은 원점으로부터 공급량(Q)에 비례하는 직선(단, 기울기는 a (단, $a > 0$))
 - [그림 V-1]의 $S_0: P = aQ$
 - 수요곡선은 Y 축(가격)의 절편이 b 이고 기울기가 $-c$ (단, $c > 0$)인 직선
 - [그림 V-1]의 $D: P = b - cQ$
 - 수요·공급곡선이 선형이 아니더라도 논의 결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음
- 부가가치세 과세 전 균형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기 이전의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의료서비스 시장의 균형은 수요곡선(D)과 공급곡선(S_0)이 교차하는 E_0 점에서 균형가격과 균형량이 각각 P_0 와 Q_0 에서 성립
 - 이때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는 각각 $\triangle bP_0E_0$ 와 $\triangle P_0OE_0$
-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 내에서 미용성형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 소비균형점과 사회후생(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세금, 초과부담 등) 수준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결정됨
 -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의료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면 공급가격에 대해 10%씩 세후가격이 상승하므로,
 - (소비자가 체감하는) 공급곡선은 원점을 중심으로 시계반대방향으로 회전이동
 - 새로운 공급곡선: [그림 V-1]의 $S_1: P = 1.1 \cdot aQ$

- 동 시장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면 공급곡선이 시계반대방향으로 회전이동하면서 수요곡선(D)과 새로운 공급곡선(S_1)이 교차하는 E_1 점에서 새로운 소비균형이 성립하면서 새로운 균형가격과 균형량이 각각 P_1 와 Q_1 으로 변화
 - 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경우, 새로운 균형가격 P_1 은 종전의 균형가격 P_0 보다 높지만, 그 차이의 비율은 부가가치세의 세율(10%)보다는 작음
 - 그 이유는 부가가치세 과세로 인해 공급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한계비용이 작아졌기 때문
 - 공급자(즉, 국내의 미용성형의료서비스 제공자)가 수취하는 공급가격은 P_1 에서 P_2 로 하락
 - 이때 소비자가 지불하는 소비자가격 P_1 은 공급자가 수취하는 (세전)공급가격 P_2 보다 정확히 10%가 많음: 즉 $P_1 = 1.1 \times P_2$
 - 미용성형의료서비스 1단위당 부가가치세액은 $P_1 - P_2 = 0.1 \times P_2$ 이며, 이때 총 부가가치세 부담액(세수)은 사각형 $\square P_1 P_2 F E_1$ 의 넓이([그림 V-1]의 VAT_1 과 VAT_2 의 합)에 해당
 -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부가가치세 과세로 인한 소비세 부담액 중 $VAT_1 = \square P_1 P_0 \geq 1$ 은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이 귀착되며, $VAT_2 = \square P_0 P_2 F G$ 는 생산자에게 부담이 귀착
 - 이 때 소비자잉여(consumer surplus)는 $CS_1 = \triangle b P_1 E_1$, 생산자잉여(producer surplus)는 $PS_1 = \triangle P_2 O F$

-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의료서비스 시장에 부가가치세가 과세하였을 때 생성되는 새로운 소비균형점에서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사회후생 수준은 비대칭사각형인 도형 $\square b O F E_1$ 으로 구성
 -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의료서비스 시장에 가상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 때 기대할 수 있는 총사회후생수준은 $\triangle b O E_0$ 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시의 총 사회후생 $\square b O F E_1$ 보다 큼
 - 그 경제학에서 차이를 흔히 조세 부과에 따른 초과부담(excess burden)으로 지칭

- 부가가치세 과세의 결과 미용성형의료서비스의 양으로 평가한 시장규모는 $\overline{OQ_0}$ 에서 $\overline{OQ_1}$ 으로 감소

[그림 V-1]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의료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시 소비균형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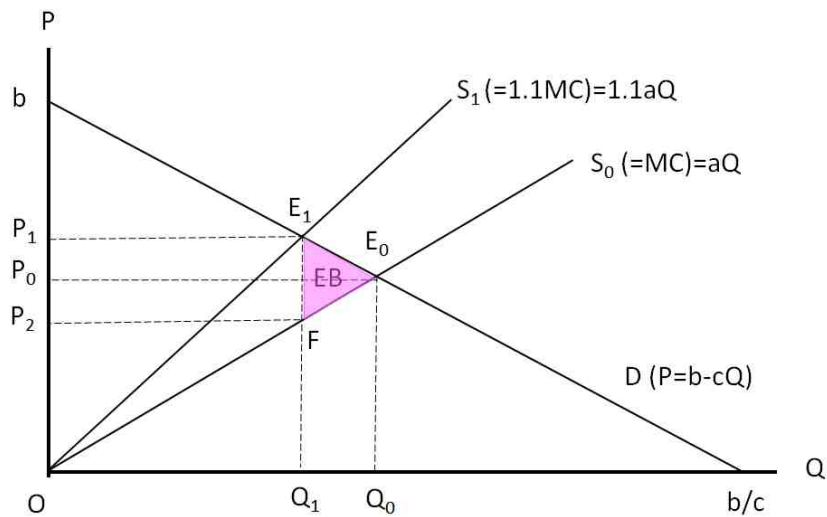
- (소비자잉여)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의료서비스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 소비자잉여는 $CS_0 \equiv \triangle bP_0E_0$ 에서 $CS_1 = \triangle bP_1E_1$ 로 축소
 - 소비자잉여의 순감소분은 일부 부가가치세($VAT_1 = \square P_1P_0GE_1$)로 귀속되고,
 - 나머지($\triangle E_1GE_0$)는 순후생감소로 구성
- (생산자잉여) 마찬가지로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의료서비스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 생산자잉여는 $PS_0 \equiv \triangle P_0OE_0$ 에서 $PS_1 = \triangle P_2OF$ 로 축소
 - 생산자잉여의 순감소분은 일부 부가가치세($VAT_2 = \square P_0P_2FG$)로 귀속되고,
 - 나머지($\triangle GFE_0$)는 순후생감소로 구성
- 여기서 부가가치세 과세로 인한 순후생감소 규모는 상기의 2개 순후생감소분을 합산한 $\triangle E_1GE_0 + \triangle GFE_0 = \triangle E_1FE_0$ 에 해당

나. 초과부담

-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의료서비스 시장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을 때 새로운 균형점 E_1 에서 사회적 한계편익과 사회적 한계비용은 다음과 같이 결정됨
 - 사회적 한계비용: 세전 공급곡선을 따라 $MC_1 : P_2 = aQ_1$ 로 결정
 - 사회적 한계편익
 - 수요곡선을 따라 $MB_1 : P_1 = 1.1b - 1.1cQ_1$,
 - 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곡선으로부터 $MB_1 : P_1 = 1.1aQ_1$ 으로 결정
 - 이때 $(1.1b - 1.1cQ_1) = 1.1aQ_1 = MB_1 > MC_1 = aQ_1$

- 새로운 균형점에서 한계편익($MB_1 : P_1 = 1.1aQ_1$)이 한계비용($MC_1 : aQ_1$)을 초과하므로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있는 상태로 보기 어려움
 - 한계편익과 한계비용 사이의 차이(gap)는 부가가치세가 차지

[그림 V-2]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의료서비스 부가가치세 환급 시 초과부담



- 그러므로 [그림 V-2]에서 보듯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따라 균형점이 E_0 에서 E_1 으로 이동하는 경우 총사회후생수준이 $\triangle bOE_0$ 에서 사다리꼴 형태의 사각형 $\square bOFE_1$ 으로 축소
 - 이 경우 양자의 차이는 $\triangle E_1FE_0$ 로 표시 가능

- 이 부분은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의료서비스 시장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후생의 순감소분으로서 초과부담(excess burden, 또는 사중손실, 자중손실이라고도 함)이라고 함
 - [그림 V-2]에서 $\triangle E_1FE_0$ 에 해당하는 EB (excess burden)로 표시
- 새로운 균형점(E_1)에서 사회적 한계편익이 한계비용을 초과하므로 오히려 소비를 증가시켰을 때 사회후생이 증가
- 이는 현재의 균형(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는 상태의 균형점 E_1)이 효율적 자원배분 상태가 아님을 시사하며,
 - 따라서 현재의 소비균형에서는 비효율(초과부담)이 존재
 - 그러므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비량을 증가시킴으로써 현재보다 한계편익이 작아지고 한계비용이 커지게 하여 양자가 서로 일치하는 점에서 균형을 회복한다면 효율적인 자원배분 상태의 회복이 가능

다.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의료서비스 부가가치세 면세와 환급제도의 비교

1) 개요

- 위의 제1절에서 논의한 부가가치세의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비추어볼 때, 거주목적 아닌 관광목적으로 단기간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미용성형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동 서비스에 대한 실제적인 소비가 관광객이 거주하는 해외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만큼, 수출(행위)에 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또는 사실상의 영세율과 유사)해주는 것이, 최소한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물론 미용성형의료서비스에 대한 주된 소비지를 어디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세계무역기구(WTO) 등을 비롯하여 이런 경우에 대한 과세·면세 여부의 적정성에 대해 아직 국제적으로 확립된 국제규범이 없는 실정이며
 - 따라서 국가들마다 과세, 면세 또는 사후적 환급 등 다양한 형태로 과세 또는 면세제도를 지니고 있는 만큼 실무적 차원에서의 과세·면세의 적정성 문제 등은 위에서 설명한 이론적 논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본 항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의료서비스에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면세(또는 사실상의 영세율)하는 경우, 방법론상 사전적 면세와 사후적 면세(즉, 출국시 환급제도)해주는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상호 비교·논의함
- 사전적 면세의 경우에는 미용성형의료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요금 징수단계에서 서비스요금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지 않고 원천면세를 적용하는 것과 동일
 - 이 경우 외국인 관광객에게 적용되는 공급곡선은 서비스 제공자의 한계비용 ($MC=aQ$)만으로 결정되는 S_0 ([그림 V-3] 참조)로 결정
 - 따라서 내국인 소비자가 체감하는 한계비용(부가가치세 포함, $MC=1.1aQ$)으로 결정되는 S_1 ([그림 V-3] 참조)으로 결정
- 사후적 면세(환급제도)는 미용성형의료서비스 제공자가 소비자의 국적이나 거주지역, 국내 체류기간 등을 불문하고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서비스요금을 징수하는 한편, 서비스를 수혜한 외국인 관광객이 출국 시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제도임
 - 이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을 불문하고 시장 공급곡선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한계비용($MC=1.1aQ$)곡선인 S_1 으로 공급곡선이 결정
 - 그러나 이때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출국시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환급세액만큼 가격보조혜택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미용성형의료서비스 제공자가 체감하는 수요곡선은 외국인 관광객의 실제 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를 나타내는 D_0 보다 상방에 위치
 - 외국인 관광객의 실제 지불의사: $D_0 : P = b - cQ$
 - 미용성형의료서비스 제공자가 체감하는 수요곡선: $D_1 : P = 1.1b - 1.1cQ$
 -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체감하는 수요는 외국인 관광객의 지불의사보다 부가가치세율(10%)만큼 더 높은 수준에서 형성됨

2) 부가가치세 면세의 효과분석: 부가가치세 과세와의 비교

- (사전면세: 부가가치세의 과세와 사전면세시 균형의 변화) 아래의 [그림 V-3]에서 보듯이 외국인 관광객 대상의 미용성형의료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 소비균형점은 E_0 점에서 E_1 으로 이동하지만, 다시 사전면세제도를 적용하면 균형점은 E_1 점에서 E_0 으로 회귀

-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사전면세제도를 적용하는 경우의 소비균형 및 사회후생 변화효과를 상세하게 분석
- (사전면세: 부가가치세 과세시 공급곡선의 변화) 완전경쟁시장에서 공급곡선은 한계비용곡선으로 설정되는데, (단일세율의)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 부가가치세 포함 한계비용은 세율만큼 비례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시장공급곡선은 시계반대 방향으로 회전 이동함
- [그림 V-3]과 같이 세전공급곡선(한계비용곡선)이 원점에서 우상향하는 직선으로 표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시장공급곡선은 세율(10%)만큼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형태로 변화
 - [그림 V-3]에서 세전 및 세후 공급곡선은 각각 $S_0 : P(=MC_0) = aQ$ 와 $S_1 : P(=MC_1 = 1.1MC_0) = 1.1aQ$ 로 표시
- (사전면세: 사전면세 적용시 공급곡선의 변화)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미용성형의료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데, 가상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에 제공된 미용성형의료서비스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사전면세제도가 적용되면, 외국인 관광객이 체감하는 동 서비스에 대한 시장공급곡선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상태의 세포함 한계비용곡선 $S_1 : P = 1.1aQ$ 에서 $S_0 : P = aQ$ 로 회전 이동(회전축은 원점)
- 결과적으로 사전면세를 통해 공급곡선은 당초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았던 최초 상태의 한계비용곡선으로 회귀
- (사전면세: 균형 변화) 부가가치세를 계속 과세하는 경우(S_1)와 사전면세를 적용하는 경우(S_0)를 상호 비교하였을 때 시장균형의 변화효과는 다음과 같음
-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 시장균형은 E_0 점에서 E_1 점으로 좌상방으로 이동하는데,
 - 만약 면세제도를 적용하면 시장균형점은 다시 본래 수준인 E_0 점으로 복귀
 - 면세로 인한 종전 균형점(E_0) 복귀 후, 과세 시의 균형점(E_1)과 비교하였을 때 균형소비량은 증가($Q_1 \rightarrow Q_0$)하는 반면 균형가격은 하락($P_1 \rightarrow P_0$)
 - 그 결과 시장균형소비량은 과세 전 수준으로 확대되는데,

- 매출액기준의 시장규모의 확대 여부는 불확실
- 부가가치세 사전면세로 인한 시장규모 확대효과의 크기는 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의 가격탄력성, 즉 기울기에 의존
- 각각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즉, 기울기의 절댓값이 작을수록) 부가가치세 사전면세로 인한 시장규모 확대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탄력성이 작을수록 시장 확대 효과가 작아짐

□ (사전면세: 시장규모) 그런데 [그림 V-3]의 경우와 같이 공급곡선이 원점에서 선형의 형태를 지니면 공급곡선의 가격탄력성은 항상 1이므로, 매출액 기준 시장규모의 크기는 수요곡선의 가격탄력성에 의해 결정

- 만약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의 균형점(E_1)에서 수요가격탄력성이 1을 초과하였다면, 일반적으로 (사전)면세를 통해 균형가격이 인하되는 경우 가격인하효과보다 균형량 증가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면서 매출액 기준의 시장규모는 확대
- 반대로 부가가치세 과세 시 균형점(E_1)에서 수요구조가 가격비탄력적이었다면 시장(규모) 확대 효과는 오히려 (-)일 것으로 예상

□ (사전면세: 소비자후생) 사전면세로 인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후생수준, 즉 소비자잉여는 ΔbP_1E_1 에서 ΔbP_0E_0 로 증가

- 동 서비스를 과세하였을 때 부과하였던 부가가치세액 중 소비자(외국인 관광객)가 부담하였던 부분($\square P_1P_0GE_1$: 영역 A)이 다시 소비자에게 귀속되고,
- 부가가치세 과세로 인해 발생하였던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즉 초과부담)이 감소하면서 ΔE_1GE_0 (영역 EB_0) 만큼의 후생이 증가
- 소비자의 후생증가분 중 전자는 정부가 징수하였던 부가가치세가 소비자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사회후생의 증감은 없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사전)면세함에 따라 초과부담이 제거되면서 후생이 증가한 것인 만큼 소비자에게 귀속된 사회후생의 순증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 (사전면세: 생산자잉여) 사전면세로 인해 미용성형의료서비스 공급자들이 체감하는 후생수준, 즉 생산자잉여는 ΔP_3OF 에서 ΔP_0OE_0 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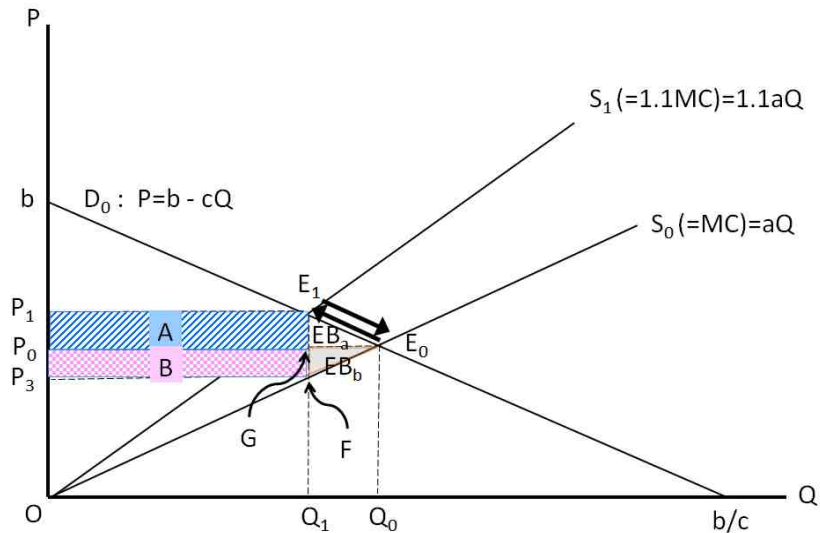
- 동 서비스를 과세하였을 때 부과하였던 부가가치세액 중 미용성형의료서비스의 공급자가 부담하였던 부분($\square P_0 P_3 FG$: 영역 B)이 다시 공급자에게 귀속되고,
- 부가가치세 과세로 인해 발생하였던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즉 초과부담)이 감소하면서 $\triangle GFE_0$ (영역 EB_b) 만큼의 후생증가분이 공급자에게 추가로 귀속
- 공급자의 후생증가분 중 전자는 정부가 징수하였던 부가가치세가 공급자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사회후생의 증감은 없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사전)면세함에 따라 초과부담이 제거되면서 후생이 증가한 것인 만큼 그 중 일부가 생산자에게 추가로 귀속되는 사회후생의 순증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 (사전면세: 세수 및 초과부담의 변화)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의료서비스를 사전면세하는 경우의 사회후생 변화효과를, 과세하는 경우와 비교해볼 때, 정부의 세수는 $\square P_1 P_3 FE_1$ (영역 A+B)만큼 감소하는데, 이 중 영역 A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귀속되어 해외로 누출(leakage)되고, 영역 B는 국내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이전되므로 국내에 잔존하며, 사전면세를 통해 초과부담이 감소하면서 증가된 후생 가운데 영역 EB_b 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귀속되고 EB_b 는 국내공급자에게 귀속되므로 일종의 주입(injection)의 역할을 수행

- 그러므로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의료서비스 사전면세를 통해 국내의 경제주체(공급자+정부)에 창출되는 사회후생의 순증규모는 주입에서 누출을 차감한 $EB_b - A$ 의 부호, 즉 EB_b 와 A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 순증감의 부호가 결정
- 일반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가 가격탄력적일수록 A의 비중이 작아지는 반면 EB_b 의 비중이 커지는 경향이 있음. 가격비탄력적일수록 반대의 효과가 예상
 - 국내미용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은 반면, 서비스가격도 낮지 않기 때문에 국내미용의료서비스를 수요하는 외국인 소비자들의 수요는 가격탄력적일(즉 수요곡선의 기울기의 절댓값이 매우 작을) 가능성이 작지 않은 것으로 추측됨
 -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미용성형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격탄력성의 크기는 실증분석을 통해 검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속단은 곤란
 - 그런데 수요가격탄력성을 분석할 수 있을 만큼의 미시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이를 실증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어려움

- (사전면세: 소비지국 과세원칙의 적용) 그런데 비록 미용의료서비스의 제공지역은 국내지만 실제 소비는 대부분 외국인이 거주하는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준용하면 외국인 관광객이 수증하는 미용성형의료서비스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절하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음
 - 만약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동 서비스를 면세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과세 → (사전)면세로 전환할 때 세수 감소분을 세수 감소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따라서 실질적 의미에서 누출규모를 0으로 보는 것이 적절
 - 사전면세를 통한 부가가치세 감소분 중 $\square P_0P_3FG$ (영역 B) 부분은 국내 공급자에게 생산자잉여의 한 형태로 이전된 부분이므로 사회후생은 변화가 없으며, 다만 초과부담 감소분 중 일부(영역 EB_b)가 공급자에게 귀속되면서 공급자의 시장확대 효과를 유발하며, 그만큼 GDP 증가에도 기여한다고 할 수 있음

[그림 V-3]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의료서비스 부가가치세 면세제도 적용 시의 균형 변화



3) 부가가치세 환급제도의 효과분석: 부가가치세 과세와의 비교

- (환급제도: 부가가치세의 과세와 사후환급시 균형의 변화) 아래의 [그림 V-4]에서 보듯이 외국인 관광객 대상의 미용성형의료서비스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 소비균형점은 E_0 점에서 E_2 로 상방수직이동하지만, 출국시에 환급해주면 균형점은 E_2 점에서 E_0 로 회귀(하방수직이동)

- 이 경우 국내의 미용성형의료서비스 공급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P_2 를 서비스 수증자로부터 수취하지만, 서비스 수증자는 출국 시에 부가가치세 부분을 환급받으므로 서비스 수증 시에 P_2 만큼의 가격을 지불하였지만 환급 후 체감부담액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균형가격 P_0 와 동일
 - 아래에서는 사후적 환급제도를 적용하는 경우의 균형 및 사회후생 변화효과를 상세하게 분석
 - 물론 환급 시 환급수수료가 적용되어 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환급되는 경우라면, 환급제도를 운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 (또는 사전면세 포함)보다는 균형소비량이 다소 축소될 수도 있음
 - 여기서는 논의 편의상 환급수수료가 없는 것을 전제로 논의함
- (환급제도: 시장공급곡선) 외국인 관광객이 출국할 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사후적 면세제도의 경우에는 이론적으로는 부가가치세를 사전적으로 면세해주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았던 상태의 시장규모로 회귀하는 되돌림 효과를 보유
- 그러나 사전면세제도의 경우와 달리 서비스 공급자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미용성형의료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계속 부가가치세를 대신 수취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해야 하는 납세의무가 지속된다는 점에서 사전면세제도와 큰 차이가 존재
 - 따라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의 경우 시장공급곡선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한계비용곡선에 의해 결정되므로, 서비스 공급자의 관점에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형식적인 차이는 없음
 - 다만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출국 시에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시행되면 서비스 공급자와 서비스 수증자 사이에 중재(arbitrage)행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음
- (환급제도: 시장수요곡선) 한편 미용성형의료서비스를 수요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액만큼 가격보조를 지원받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효과를 지님
- 그러므로 사전면세제도의 경우와 달리 서비스 공급자가 체감하는 시장수요곡선은 외국인 관광객의 실제 지불의사(WTP: willingness to pay)를 나타내는 수요곡선($D_0 : WTP_0 = b - cQ$)보다 부가가치세율(10%)만큼 상방으로 더 높은 곡선($D_1 : WTP_1 = 1.1b - 1.1cQ$)으로 결정

- 이 경우 수요곡선은 X 축의 절편([그림 V-4]에서 $\frac{b}{c}$)을 중심으로 시계방향으로 회전이동한 것과 마찬가지로

□ (환급제도: 균형점의 이동)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미용성형의료서비스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출국 시에 환급해주는 경우,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았을 경우의 시장균형점 E_0 에서 정확히 10% 상방이동한 E_2 점에서 새로운 균형이 성립

- 10%의 부가가치세율은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에 따른 공급곡선의 회전이동비율과, 부가가치세 환급으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의 환급액부담을 포함한 시장수요곡선의 회전이동비율이 서로 동일하기 때문에 새로운 균형점은 정확히 수직상승하여 성립
- 그 결과 환급제도를 운용하더라도 사전면세의 경우에 실현되는 균형소비량과 동일하게 Q_0 에서 균형량이 결정
- 수요자(외국인 관광객)로부터 수취한 부가가치세를 과세당국에 납부한 후 서비스 공급자에게 귀속되는 순수취 시장가격은 사전면세의 시장균형가격 P_0 와 동일

□ (환급제도: 부가가치세의 과세규모와 환급규모) 위에서 비교하였듯이 사전면세제도와 사후적 환급제도를 통한 최종적인 시장균형점에서 소비자(외국인 관광객)와 서비스 공급자가 체감하는 최종 균형점은 각각 $E_0 = (P_0, Q_0)$ 로 서로 동일하지만, 부가가치세의 사전면세규모 또는 환급규모의 크기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음

-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의료서비스에 대해 과세하였다가 사전면세제도로 전환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감소규모는 $\square P_1 P_3 F G = \overline{P_1 P_3} \times Q_1 = 0.1 P_3 Q_1$
-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의료서비스에 대해 사후환급제도를 적용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의 환급규모(과세규모와 동일)는 $\square P_2 P_0 E_0 E_1 = \overline{P_2 P_0} \times Q_0 = 0.1 P_0 Q_0$
- $P_0 > P_3$ 과 $Q_0 > Q_1$ 이므로 각각을 곱해 산출한 부가가치세 환급규모와 사전면세규모한 금액은 전자가 후자보다 더 큼
-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소비자(외국인 관광객)와 공급자가 체감하는 두 제도의 최종 균형가격과 균형량은 동일하지만 중간단계에서 체감하는 부가가치세 감면규모 또는 환급규모는 상당히 큰 차이가 존재

- (환급제도: 소비자후생·소비자잉여)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는, 소비자(외국인 관광객)가 미용성형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지불하는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P_2 로 (최대)지불의사인 P_0 의 110%로서 지불의사를 10% 초과함
 - 그러나 출국시에 (최대)지불의사를 초과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부담분을 환급받으므로 서비스를 제공받은 외국인 관광객이 체감하는 환급 후 지불액은 최대지불의사인 P_0 와 일치
 - 만약 미용성형의료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외국인 관광객이 누릴 수 있는 소비자잉여는 $\triangle bP_1E_1$ 이지만,
 -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경우에는 소비자잉여가 $\triangle bP_0E_0$ 로 $\square P_1P_0E_0E_1$ 만큼 증가

- (환급제도: 생산자잉여와 서비스 공급자의 시장확대 효과)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적용하면 미용성형의료서비스 공급자가 체감하는 수요곡선은, 수요자(외국인 관광객)의 (최대)지불의사를 나타내는 D_0 가 아닌 환급세액을 포함한 D_1 으로 상방으로 (회전)이동하기 때문에 시장이 확대
 - 서비스 공급자가 체감하는 수요곡선은 수요자의 지불의사의 110%이므로 공급자의 한계비용에 10%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시장공급곡선과 E_2 에서 교차함에 따라, 환급제도를 시행함에 따른 시장균형량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와 동일한 Q_0 수준으로 균형량이 증가
 -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균형점 E_1 에서 서비스 공급자가 수취하는 생산자잉여는 $\triangle P_3OF$ 이지만,
 -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경우에는 생산자잉여가 $\triangle OP_0E_0$ 로 $\square P_0P_3FE_0$ 만큼 증가
 - 환급제도를 운용함에 따라 미용성형의료서비스 공급자가 당면하는 시장규모가 Q_1 에서 Q_0 로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균형량 증가에 따라 생산자잉여도 함께 증가하면서 사회후생도 순증

- (환급제도: 환급세수 및 초과부담의 변화)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의료서비스를 사후 환급해주는 경우, 서비스 공급자가 수요자(외국인 관광객)로부터 대리징수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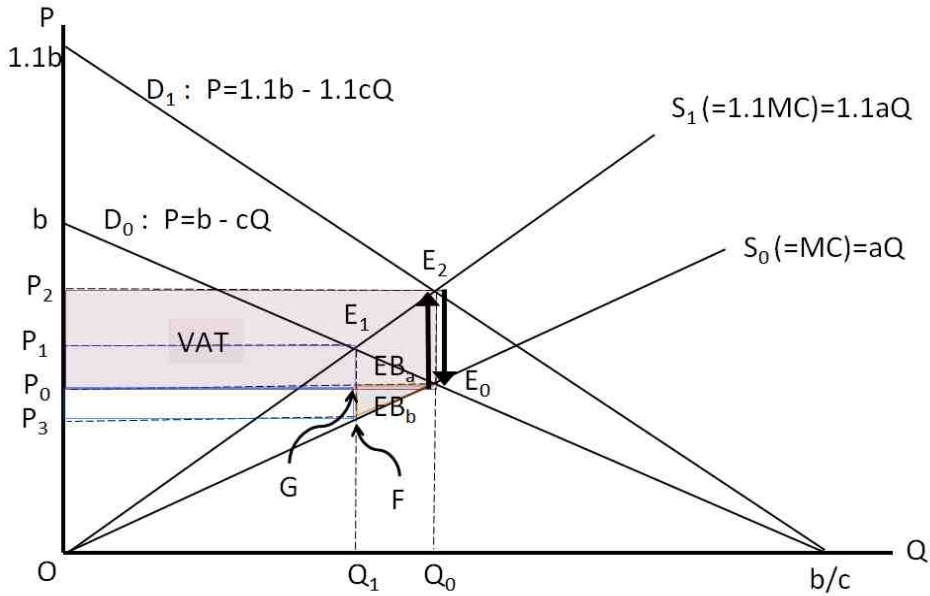
여 과세당국에 납부한 부가가치세 금액($\square P_2 P_0 E_0 E_1$) 전액이 수요자가 출국하는 단계에서 100% 환급되므로 실세수는 0임

- 동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와 환급해주는 경우의 사회후생 수준을 비교하면, 전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로 인해 사중손실이 $\triangle E_1 F E_0$ (영역 $EB_a + EB_b$)만큼 발생하지만,
-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면,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은 상태와 동일한 상태로 회귀하면서 시장균형량도 Q_0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사중손실이 사라지고, 따라서 사회후생도 동일한 액수($\triangle E_1 F E_0$)만큼 증가
- 이 가운데 EB_a 는 수요자인 외국인 관광객에게 귀속되고, EB_b 는 시장 확대의 결과로 서비스 공급자에게 귀속
- 결과적으로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의료서비스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국내 서비스 공급자에게 시장을 확대해주는 효과를 나타내줄 뿐만 아니라 시장 확대의 결과로서 GDP 증가에도 일조

□ (환급제도: 소비지국 과세원칙의 적용) 미용성형의료서비스 제공지역이 국내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외국인 관광객이 미용성형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일시 체류하는 것은, 외국인이 거주하는 소비지국에서 동 서비스를 원격으로 제공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국내에서 시술·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일 뿐, 실제 소비가 수요자(외국인 관광객)의 실거주국(해외)에서 이루어지므로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의거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된 미용성형의료서비스는 수출에 준해서 출국 시 환급해주는 것이 부가가치세의 과세 취지에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는 사후적 환급제도와 사전면세제도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지만,
- 세무행정 측면에서의 징세비용(수요자 또는 공급자의)과 납세협력비용, 그리고 탈세·변칙·부정수급 가능성 등을 종합해보면 사전면세의 경우보다 환급제도가 이런 부작용이 작으므로 후자가 전자보다 우월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V-4]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의료서비스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적용 시의 균형 변화



주: 부가가치세 환급제이란, 외국인 관광객이 출국할 때 국내에서 구입 또는 서비스 받은 물품이나 서비스를, 국외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해외에 반출하는 경우 출국시점에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로써 기능상 사후적 면세제도(또는 사후적 영세율 제도)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함

4) 부가가치세 면세와 환급제도의 정책효과 비교

□ (사전면세와 환급제도의 비교) 사전적 면세제도와 환급제도(사후적 면세제도)를 비교하면, 비록 시장규모나 가격효과 등에서는 동일하지만, 절차상의 복잡성이나 납세협력비용·징세비용 등의 제반 과세비용 등의 측면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

○ 사전적 면세의 경우

- 동일한 미용성형의료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서비스 수증자의 내·외국인 구분 및 외국인 확정 시 국내거주자 또는 단기관광객 여부 등을 서비스 제공자가 구분하여 과세·면세 여부를 차등하여 적용하여야 하는데
-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의무를 부여하여 면세 적용을 위한 증빙자료 확인의무와 절차가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입장에서도 구비서류와 확인절차가 복잡해지는 등 납세협력비용이 크게 증가
- 허위 증빙 및 제도를 악용한 탈세의 가능성도 커지는 부작용이 존재

○ 환급제도의 경우

- 미용성형의료서비스 제공자는 내외국인의 구분 없이 통일적으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므로 납세협력비용이 낮게 유지 가능

- 관광 목적으로 단기 입국하여 기간 내 출국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므로 허위·부정환급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특징

□ 그러므로 시장규모나 시장가격 측면에서는 “사전면세 vs. 환급제도”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지만, 제도 시행상의 오·남용과 부정수급 및 절차상의 복잡성과 납세협력비용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사전면세보다는 환급제도가 보다 비용효율성 측면에서 보다 우월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해외부문의 국내재·국내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는 실질적 의미에서 수출수요 증가를 통한 국내재·서비스에 대한 총수요를 증가시키므로 결과적으로 생산·공급증가를 유발하여 한계비용(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

○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의료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사전면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한 균형소비량 증가는 국내균형가격을 상승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

- 이는 해외부문의 국내재에 대한 수요(즉, 수출수요)의 증가로 인한 국내재의 가격상승 효과와 동일
- 다만, 미용성형의료서비스 시장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차지하는 점유비가 높을수록(작을수록) 부가가치세 환급(또는 사전면세)제도 시행에 따른 국내 미용성형의료서비스의 가격 상승률이 높을(낮을) 것으로 예측 가능

라.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의료서비스 부가가치세 환급제도의 시장확대 효과: 이론 분석을 중심으로

1) 부가가치세 과세 대비 국내후생의 변화

□ 본 항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의료서비스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와, 사후환급제도를 통해 사실상 면세해주는 경우에 국내경제의 순후생 변화를 이론모형을 이용하여 분석

○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의료서비스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은 각기 [그림 V-1]~[그림 V-4]에서 상정한 바와 같이 선형으로 가정함

□ 공급곡선으로부터 다음의 관계식을 도출할 수 있음

$$P_1 = 1.1aQ_1 = 1.1P_3 \quad \text{식 (1)}$$

$$P_0 = aQ_0 \quad \text{식 (2)}$$

$$P_3 = aQ_1 \quad \text{식 (3)}$$

□ 수요곡선으로부터 다음의 관계식을 도출할 수 있음

$$P_1 = b - cQ_1 \quad \text{식 (4)}$$

$$P_0 = b - cQ_0 \quad \text{식 (5)}$$

□ 식 (1)과 (2)를 각각 식 (4)와 (5)에 대입하면 다음을 얻을 수 있음

$$Q_1 = \frac{b}{1.1a+c} \quad \text{식 (6)}$$

$$Q_0 = \frac{b}{a+c} \quad \text{식 (7)}$$

□ 식 (6), (7)을 각각 식 (4)와 (2)에 대입하면 다음을 얻을 수 있음

$$P_1 = b - \frac{bc}{1.1a+c} = \frac{1.1ab}{1.1a+c} \quad \text{식 (8)}$$

$$P_0 = \frac{ab}{a+c} \quad \text{식 (9)}$$

□ 식 (8)을 식 (1)에 대입하고, $P_2 = 1.1P_0$ 이므로 다음을 얻을 수 있음

$$P_3 = \frac{ab}{1.1a+c} \quad \text{식 (10)}$$

$$P_2 = \frac{1.1ab}{a+c} \quad \text{식 (11)}$$

□ 그러므로 $Q_0 = \frac{b}{a+c}$, $Q_1 = \frac{b}{1.1a+c}$

$$P_0 = \frac{ab}{a+c}, P_1 = \frac{1.1ab}{1.1a+c}, P_2 = \frac{1.1ab}{a+c}, P_3 = \frac{ab}{1.1a+c}$$

□ [그림 V-5]에서 보듯이 미용성형의료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적용하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비해 부가가치세 세수 중 외국인 관광객에 환급되는 부가가치세 규모(영역 A)보다 초과부담 감소를 통해 국내 서비스 공급자의 후생이 증가하는 부분(영역 EB_b)이 더 크면, 환급제도로 전환할 때 국내의 총후생이 순증가하며, 반대의 경우에는 국내총후생이 순감소함

$$\begin{aligned} \circ \text{영역 } EB_b &= \frac{1}{2}(Q_0 - Q_1)(P_0 - P_3) \\ &= \frac{1}{2} \left(\frac{b}{a+c} - \frac{b}{1.1a+c} \right) \left(\frac{ab}{a+c} - \frac{ab}{1.1a+c} \right) \\ &= \frac{ab^2}{2(1.1a+c)^2(a+c)^2} \{ (1.1a+c) - (a+c) \}^2 \\ &= \frac{a^3b^2}{200(1.1a+c)^2(a+c)} \end{aligned}$$

$$\begin{aligned} \circ \text{영역 } A &= (P_1 - P_0)Q_1 \\ &= \left(\frac{1.1ab}{1.1a+c} - \frac{ab}{a+c} \right) \frac{b}{1.1a+c} \\ &= \frac{ab^2}{(1.1a+c)^2(a+c)} \{ 1.1(a+c) - (1.1a+c) \} \\ &= \frac{ab^2c}{10(1.1a+c)^2(a+c)} \end{aligned}$$

○ 국내총후생의 순증감 효과

$$\begin{aligned} - EB_b - A &= \frac{ab^2}{200(1.1a+c)^2(a+c)^2} \{ a^2 - 20c(a+c) \} \\ &= \frac{ab^2(a^2 - 2ac - 20c^2)}{200(1.1a+c)^2(a+c)^2} \end{aligned}$$

- 그러므로 $EB_b - A$ 의 부호는 $a^2 - 2ac - 20c^2$ 의 부호와 동일

- 판별식을 이용하면 $a \geq (10 + \sqrt{120})c$ 이면 $EB_b - A \geq 0$,

$a < (10 + \sqrt{120})c$ 이면 $EB_b - A < 0$

- 그러므로 공급곡선의 기울기(a)가 수요곡선의 기울기(c , 절댓값 기준)보다 약 20.95 ($= 10 + \sqrt{120}$)배 또는 그 이상이면,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의료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보다 외국인 관광객이 출국 시에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도록 허용하는 것이 국내의 사회후생을 순증가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됨
 - 단, 상기의 분석결과는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모두 선형이라는 전제하에서만 타당한 결과이며, 비선형인 경우에는 순편익의 부호를 결정하는 구간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물론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수요 여건이 가격탄력적일수록, 상대적으로 공급환경이 가격비탄력적일수록 환급제도를 운용할 경우 국내 후생의 순편익이 (+)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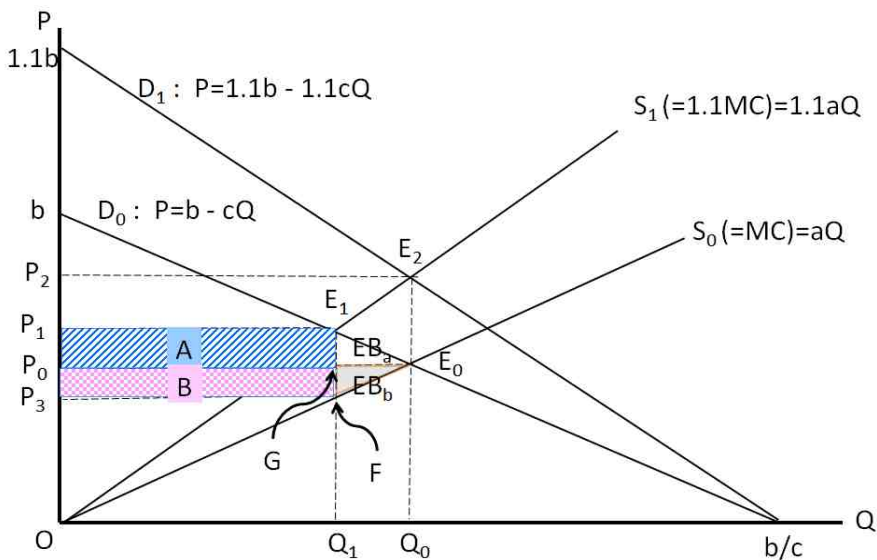
- 현실적으로 외국인 관광객 대상 미용성형의료서비스의 공급곡선 기울기가 매우 가파르거나 또는 수요곡선이 매우 탄력적이어서 수평에 가까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대부분 공급자에게 귀착되는 반면 수요자(외국인 관광객)에게 귀착되는 부가가치세는 미미하기 때문에 환급제도를 운용하더라도 국외로 누출되는 부가가치세 규모는 매우 미미
 -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해 사실상의 면세를 부여하더라도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수의 실질적인 감소분이 국내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이전되기에 누출규모가 최소화
 - 한편 부가가치세 과세로 인해 감소하였던 후생감소분, 즉 초과부담 중에서 EB_0 부분이 국내 서비스 공급자에게 추가로 귀속되면서 주입이 발생

- 그러나 이와 반대로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가격비탄력적이거나 또는 국내 공급자의 공급이 가격탄력적인 경우에는 반대로 국내 공급자에게 추가되는 후생(즉, 생산자잉여) 증가분은 “과세 → 환급” 전환에 따른 부가가치세수 감소 효과보다 작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는 사회후생의 순손실이 발생

- 그러나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충실하게 부가가치세제를 운용한다면,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국내에서 제공되는 미용성형의료서비스의 주

된 소비지가 서비스 수요자(외국인 관광객)의 거주지국이므로 국내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문제가 이론적으로 근거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데, 만약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이 경우에도 적용한다면, 비록 수요곡선이 비탄력적이고, 공급곡선이 탄력적이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전제하에서는 국내 사회후생수준이 최소한 (-)값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그림 V-5]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의료서비스 부가가치세 환급 시 후생·시장확대 효과



가) 생산자잉여의 변화

- [그림 V-5]에서 보듯이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미용성형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비교하여 환급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 서비스 공급자의 후생변화를 생산자잉여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부가가치세 과세를 환급제도로 전환하였을 때 균형(공급량)이 Q_1 에서 Q_0 으로 증가하고, 생산자가 세금(부가가치세)을 제외하고 순수취하는 가격수준은 P_3 에서 P_0 로 상승하므로 생산자잉여는 $\triangle P_3OF$ 에서 $\triangle P_0OE_0$ 로 증가
 - 생산자잉여의 증가분은 사각형 $\square P_0P_3FE_0$ 이고, 이 것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을 때 서비스 공급자에게 귀착되었던 부가가치세 부분($\square P_0P_3FG$)과 초과부담분($EB_b = \triangle GFE_0$)의 두 가지로 구성

□ 생산자잉여의 변화

- 부가가치세 과세 시 생산자잉여: $\Delta P_3OF = \frac{P_3 \times Q_1}{2} = \frac{ab^2}{2(1.1a+c)^2}$
- 부가가치세 환급 시 생산자잉여: $\Delta P_0OE_0 = \frac{P_0 \times Q_0}{2} = \frac{ab^2}{2(a+c)^2}$
- 전자의 분모가 후자의 분모보다 크므로 양자간의 대소관계는 후자(ΔP_0OE_0) > 전자(ΔP_3OF)

2. 타당성 분석: 정책 및 과세 타당성 평가

가. 부가가치세 면세

1) 부가가치세 면세 분야

-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외부효과, 국가의 정책적 목적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와 용역이 존재함
 - 외부효과 등을 감안해서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정하기도 함
 - 개별 국가의 정책목적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국가별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는 다양함
- 국제적으로 언급되는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에는 OECD의 부가가치세 표준면세(Common exemptions) 범위와 EU의 부가가치세 지침 등을 참고할 수 있음

가) OECD 부가가치세 표준면세

- OECD에서는 부가가치세 표준면세(Common exemptions) 범위를 제시하고 있음¹⁷⁾
 - OECD 회원국 중 부가가치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은 특정 재화와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하고 있음

17)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8," 2018.

- 부가가치세 제도를 운영하는 OECD 회원국들이 OECD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면세를 적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 부가가치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OECD 회원국 35개국 중 우리나라를 포함한 29개 국가에서 표준면세를 적용
- OECD에서는 다음과 같은 표준면세(Common exemptions) 범위를 제시하고 있음

〈표 V-1〉 OECD 표준면세 적용 대상 분야

1	우편
2	환자 및 부상자 이송
3	의료
4	혈액
5	세포 및 조직
6	치과 치료
7	자선 사업
8	교육
9	비영리 단체의 비영리 활동
10	스포츠
11	문화(라디오 및 TV 방송 제외)
12	보험 및 재보험
13	부동산 임대
14	금융
15	도박 및 복권
16	토지 및 건물 공급
17	특정기금 모금

자료: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8,” 2018.

- 다수의 OECD 회원국들이 표준면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은 회원국별로 상이함
 - 회원국별로 표준면세만 적용하는 경우, 표준면세 대상 외 추가적으로 면세대상을 규정하는 경우, 표준면세 대상 중에서도 일부 과세하는 부문이 있는 경우가 있음
 - 독일, 벨기에 등은 표준면세 대상만 면세 적용
 - 표준면세를 적용하는 국가 대부분은 표준면세 대상 외 추가적으로 면세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공영방송(라디오 및 TV), 저작권, 장례, 대중교통 등을 면세대상으로 추가하고 있음

<표 V-2> OECD 주요 회원국의 부가가치세 면세 및 과세 대상

국가	면세대상	표준면세 중 과세대상
한국	표준면세, 특정 대중교통, 물 및 특정 석탄의 공급, 농어업용 특정 목적의 원유, 장례, 노동과 같은 특정 개인 서비스, 도서, 신문, 잡지, 방송, 농업, 어업, 임업 제품	상업용 건물의 임대 및 공급, 상업용 문화서비스, 허가된 클럽에서의 도박
네덜란드	표준면세, 장례, 화장, 공영방송, 스포츠 클럽, 작곡·작사·저널 서비스	문화,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 부동산 공급, 스포츠 시설 이용, 오락, 영화관·콘서트·극장의 입장, 스포츠 이벤트
독일	표준면세	-
벨기에	표준면세	-
스페인	표준면세, 문학 및 예술작품 저작권, 협회 및 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단체가 제공하는 특정 사회 지원 서비스	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상업용 건물 임대, 토지 건축, 신축 건물 공급
영국	표준면세, 장의 및 화장, 스포츠 대회, 특정 고가 의료서비스, 예술품	일반세율: 신축 상업용 건물의 소유권 판매, 게임기와 허가된 클럽에서의 도박 영세율: 신규주택, 거주용 및 자산단체의 건물
이탈리아	표준면세, 택시, 장례 서비스	토지 임대 및 공급, 신축 후 5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나 5년 경과 후라도 비면제를 선택한 경우,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가 제공하는 특정 사회지원 서비스, 직원 복지 서비스
프랑스	표준면세, 기념비 건설·보수·유지,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기관이 추진하는 전쟁 희생자 추모 공동묘지, 장내 선물 거래	부동산 임대(영리 목적의 개발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전액 과세, 영리 목적의 미개발된 부동산은 선택적 과세), 환자 및 부상자 이송, 오락 및 스포츠 서비스, 영화관, 극장, 콘서트
캐나다	표준면세, 법률 지원, 대중교통, 수상운송, 통행료, 아동 돌봄 서비스	대부분의 복권 및 도박, 상업용 부지와 건물의 임대 및 공급, 신축 또는 개조된 주택 판매, 국내 우편 서비스, 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공공부문, 놀이시설 입장료, 혈액 및 특정 생물학적 물질(영세율)
일본	표준면세, 사회복지 서비스, 장애인용 특정 장비 판매, 행정 서비스, 증권 양도, 교과서, 수업료	우편, 건물 공급, 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비영리단체의 서비스는 제외), 상업용 부동산 임대
뉴질랜드	금융, 주거용 시설 공급, 비영리단체의 기부 물품 및 서비스 공급	우편, 의료, 환자 이송, 치과, 자선사업, 특정 기금 조성 행사, 교육, 비영리 단체의 비영리 활동, 문화, 스포츠, 보험 및 재보험, 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 복권 및 도박, 토지 및 건물의 공급
호주	금융서비스, 주거 목적의 임대, 특정 귀금속 공급,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학교 매점, 자선단체가 진행하는 특정 기금 모금	국내 우편, 스포츠, 문화서비스, 보험 및 재보험(건강보험 제외), 도박, 토지 및 건물의 공급

주: 1. 표준면세란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면세를 의미. 예를 들어 우편, 환자 이송, 의료, 자선사업, 교육, 비영리단체의 비영리 활동, 스포츠, 문화(방송 제외), 보험 및 재보험, 금융, 부동산 처분, 토지 및 건물의 공급, 특정 기금 모금 등의 서비스가 해당
2. 부가가치세를 적용하고 있는 OECD 회원국 전체 현황은 부록 참고

자료: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8," 2018.

- 국가별로 표준면세 중 과세되는 부문을 규정하는 경우도 많은데, 우편, 상업용 건물 공급 및 임대, 도박 및 복권 등이 대표적임

나) EU의 부가가치세 면세¹⁸⁾

□ EU의 부가가치세 면세 분야

- EU VAT 지침(Directive 2006/112/EC)에서는 회원국의 규정을 침해하지 않는 가운데 부가가치세 면세의 정확한 적용을 위해 면세대상 분야를 규정하고 있음
- 면세대상 분야는 크게 공익을 위한 활동과 기타 활동으로 구분되어 있음

<표 V-3> EU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구분	면세대상
공익 활동	- 우편 - 공적 단체가 행하는 의료, 인체기관·혈액·모유 공급, 치과, 공적 단체가 행하는 청소년 보호, 고령층 주거 공간 공급 등의 사회 복지서비스, 청소년 보호, 교육·직업훈련, 종교단체 등이 행하는 인력 공급, 비영리단체가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 비영리단체의 스포츠 관련 서비스, 특정 문화 서비스, 환자 및 부상자 이송, 공영방송(TV, 라디오)
기타 활동	보험 및 재보험, 신용공여 및 신용관리, 신용 보증, 예금·결제·송금 등과 관련된 거래, 법정통화와 관련된 거래, 회원국에 의해 정의된 특별 투자 기금 관리, 우표 공급, 도박 및 복권,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공급, 건축용지 이외의 토지 공급, 부동산 임대

자료: EU Directive 2006/112/EC Title IX EXEMPTIONS,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06L0112&from=EN>, 검색일자: 2020. 3. 23.

2) 미용성형 등의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 인간의 질병 치료목적의 의료용역은 국민 보건 증진을 목적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의료용역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 의료용역을 제한할 필요성은 낮음

18) EU Directive 2006/112/EC Title IX EXEMPTIONS,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06L0112&from=EN>(검색일자: 2020. 3. 23.)

- 이런 이유로 치료목적의 의료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국가들이 다수임
 - OECD에서도 표준면세 범위에 의료용역을 제시하고 있음
 - 다만 OECD 표준면세 범위에서는 구체적으로 의료용역의 범위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국가별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됨
 - 부가가치세제도를 시행하는 유럽 국가들도 치료목적의 의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음
 - EU 지침에서는 공적단체가 치료목적의 의료용역에 대해 면세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10년 이전까지는 모든 의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였지만, 2010년부터 미용목적의 성형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시작하였음
 - 눈, 코, 가슴, 지방흡입 등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과세
 - 치료목적의 의료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는 그대로 적용

- 그리고 2014년부터는 치료목적이 아닌 모든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피부시술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과세 범위를 확대함
 - 다시 말해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축소함

<표 V-4> 의료용역과 미용성형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구분	의료용역에 대한 면세 여부	미용성형에 대한 면세 여부
OECD	medical care를 표준면세로 규정	규정 없음
EU	치료·예방목적의 medical care에 한하여 면세됨	치료·예방·보건·회복 목적이 아닌 의료용역은 과세됨. 미용성형도 이 원칙에 의하여 판단해야 함. 면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의료용역에 대해서는 경감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영국	2007년에 위와 동일하게 개정	치료·예방·보건·회복 목적이 아닌 의료용역은 과세됨. 미용성형도 이 원칙에 의하여 판단해야 함.
독일	medical work에 대하여 면세됨	
프랑스	medical care에 대하여 면세됨	
네덜란드	medical care에 대하여 면세됨	미용성형수술에 대해서도 면세됨
오스트리아	의사의 공급(supplies made by doctors)에 대하여 면세됨	

자료: 정규언, 「의료용역 중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폐지의 타당성 검토」, 『세무와회계저널』, 제11권 제2호 2010, p. 253

- 인간의 질병 치료목적의 의료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런 취지에 따라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의 의료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치세를 과세함으로써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조정함

나. 부가가치세의 소비지 과세주의 원칙

1) 소비지 과세주의

- 부가가치세는 대표적인 일반 소비세로 재화와 용역에 부과되고 있음
 -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은 재화와 용역
-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가가치세 부담을 지게 됨
 - 재화와 용역이 거래되는 매 단계마다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거래 단계별 창출된 부가가치가 과세표준임
 - 거래 단계별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과세된 금액이 다시 과세되거나 과세가 전가되는 경우는 없음
- 부가가치세는 유럽 국가들을 비롯해서 다수의 국가들이 부가가치세제를 운영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제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은 소비지 과세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음
 - 소비지국 과세원칙 또는 행선지국 과세원칙이라고도 함
 - 부가가치세는 재화와 용역이 소비되는 국가의 부가가치세제에 따라 적용됨
 - 수입국가와 수출국가 간의 부가가치세율이 다를 경우에도 국가 간 과세 경쟁 측면에서 과세 중립적이라는 장점이 있음
- 이러한 소비지 과세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소비되는 모든 재화와 용역은 과세되고, 해외로 수출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음

- 국내에서 소비되는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해당 재화가 국내에서 생산되었던지 아니면 해외에서 수입된 재화인지와 상관 없이 공평하게 과세됨
 - 국내에서 생산되었더라도 해외에 수출된 재화는 다른 국가에서 소비되기 때문에 해당 재화는 수입국의 부가가치세제에 의해 과세됨
- 소비지 과세주의 원칙을 외국인(해외여행자)에게도 적용해서 국내에서 구매한 재화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거나 면세하는 제도를 운영하기도 함
- 다수의 국가들에서 외국인(해외여행자)들이 구매한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소비지 과세주의 원칙 적용
 - 다수의 유럽 국가들을 비롯해서, 일본, 캐나다, 중국 등 다수의 국가들이 외국인(해외여행자)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유럽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전문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는 Global Blue, Premier Tax Free 등의 업체가 있음
 - 해외여행자들의 구매품은 자국에서 소비될 것으로 간주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여행자들의 구매한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사후 부가가치세 환급
- 또한 외국인(해외여행자)들은 우리나라 시내 혹은 공항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매할 경우 내국인과 달리 구매한도를 적용하지 않음
- 사전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점에서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모두 면세되는 반면, 사후면세점 혹은 사후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는 부가가치세만 환급되고 관세는 환급 대상이 아님

2) 소비지 과세주의와 외국인 소비 용역

- 다수의 국가들이 소비지 과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해외여행자)이 구매 한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고 있음

-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해외여행자)이 국내에서 소비한 일부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외국인의 미용성형 용역에 대한 의료비 부가가치세 환급
 - 외국인의 국내 숙박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등이 있음

- 해외여행자가 국내에서 소비된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원칙에 맞지 않음
 - 국내에서 소비된 용역은 소비지 과세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적함
 - 소비자가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와 상관없이 국내에서 소비되었기 때문에 국내 부가가치세제가 적용되는 것이 타당함

- 반대로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하여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도 있음
 - 일부 의견에 따르면 미용성형의료서비스의 경우 비록 국내에서 서비스(시술 등)가 이루어지고 동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가 국내에서 지불되어 형식상으로 동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가 완료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출(expenditure)이 완료된 것일 뿐 소비(consumption)행위 자체가 완료된 것은 아님
 - 이럴 경우 미용성형의료서비스에 대해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적용하면 단기체류 후 출국 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것이 이론적·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음

- 결론적으로, 이론적인 측면에서 소비지 과세주의 원칙 적용 여부에 대한 논란은 명확히 답을 내리기 어려움

다. 정부개입 타당성

1) 외국인의 미용성형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시행 배경

- 우리나라에서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의 성형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해외여행자)에 한해 정책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 시행이 가능함
 - 2010년 이전처럼 미용목적의 성형 등 모든 의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했던 시절에는 외국인에 대해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혜택을 제공할 수 없었음
 - 2014년부터는 모든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피부수술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과세범위를 확대함

- 2014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였음
 - 외국인 환자 유치를 정부 중점 국정과제로 추진
 - 우리나라 의료기관을 찾아오는 해외환자는 2009년 6만명에서 2013년에는 21만 명으로 증가

〈표 V-5〉 해외환자 유치실적

(단위: 명, 억원,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연평균 증가율
환자 수(실인원)	60,201	81,789	122,297	159,464	211,218	36.9
진료수익	547	1,071	1,809	2,673	3,934	63.8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중국 미용성형 환자 등 외국인 환자 권리보호 강화된다」, 2015. 2. 12.

- 그리고 2016년부터 외국인(해외여행자)에 한정해 미용목적의 성형 의료용역에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시행하였음
 - 2016년 4월부터 외국 관광객에 한해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에 등록된 의료기관에서 미용목적의 성형 의료용역을 수행했을 때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시행

- 이처럼 외국인(해외여행자)에 한해 미용목적의 성형 의료용역에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시행한 이유는 이 제도 시행 당시에 외국인(해외여행자)에 대한 진료비 과다, 불법 중개인(브로커)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었기 때문임
 - 2014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함
 - 외국인 환자 유치를 정부 중점 국정과제로 추진
 - 2015년 2월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외국인 환자 미용성형 유치시장의 건전화 대책을 발표
 - 불법 중개인(브로커)에 의한 수수료 및 진료비 부풀리기, 의료분쟁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
 - 2016년 4월에 외국 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시행하였음

- 보건복지부에서 2015년 2월에 외국인 환자 미용성형 유치시장의 건전화 대책을 발표한 이유는 불법 중개인(브로커)에 의한 수수료 및 진료비 부풀리기, 의료분쟁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었음
 - 불법 중개인(브로커)에 의한 수수료·진료비 부풀리기(바가지)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 의료사고 발생 시 원만하지 못한 분쟁해결 등은 외국인 미용·성형 환자의 불만 증가뿐만 아니라 해외환자 유치시장의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불법 중개인(브로커) 단속 관리 강화 및 건전 유치사업자 육성
 - 과도한 수수료 및 진료비 부과 금지
 - 불법 중개인(브로커)과 거래한 경우에 처벌
 - 불법 중개인(브로커) 신고포상금제 등
 -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한국의료 정보제공체계 구축
 - 미용성형 표준 진료비용 및 수수료 공개
 - 우수 유치기관 지정 및 메디컬 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제공
 - 외국인 환자 권익보호 및 분쟁조정기능 강화
 - 외국인 환자 진료 시 진료비 등 사전 설명의무 부과
 -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조정제도 이용 유도
 - 외국인 환자 대상 의료기관 배상보험 가입 활성화

- 당시 보건복지부의 대책 중에서는 환자가 실제 지불한 진료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후 영수증 발급 지원체계 구축, 거래투명화 유도 및 병원의 책임범위 명확화 등의 대책도 있었음
 - 외국인 환자 종합적 지원을 위한 ‘국제환자지원센터’ 설립 추진(2016년)
 - 국제환자지원센터를 통해 환자가 실제 지불한 진료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후 영수증 발급 지원체계를 구축
 - 이를 통해 거래투명화를 유도하고 병원의 책임범위를 명확화

- 특히 국제환자지원센터를 통해 환자가 실제 지불한 진료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후 영수증을 발급하는 제도를 제시하였음
 - 국제환자지원센터를 통한 진료비 사후 영수증 발급제도를 실시하는 이유는
 - 첫째, 외국인 환자가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 지불한 진료비에 비해 불법 중개인(브로커)에게 과다하게 수수료를 지불했거나,
 - 둘째, 불법 중개인(브로커)이 진료비를 속여 환자 모르게 과다하게 수수료를 받은 경우 등의 중개인(브로커)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을 방지하려는 목적이었음

- 그러나 외국인 환자의 진료비 사후 영수증 제도는 취지와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제도였음
 - 외국인 환자가 사후에 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가 드물었고,
 - 특히, 설령 사후에 영수증을 발급받아도 외국인 환자가 중개인(브로커)으로부터 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제도였음

- 이런 이유로 외국인 환자가 진료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진료비 확인과 함께 부가가치세 환급이라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음

- 따라서 외국 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는 외국인 환자들에게 정확한 진료비를 확인시킴으로써 불법 중개인(브로커)에 의한 수수료·진료비 부풀리기(바가지)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음

- 이러한 불법 중개인(브로커)에 의한 수수료 및 진료비 부풀리기(바가지)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고 거래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 미용성형 환자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였음
- 외국인 환자의 의료비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가 사후 영수증제도에 비해 실효성이 높은 제도임은 분명함
 - 외국인 환자 입장에서는 사후 영수증제도와 마찬가지로 진료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추가로 부가가치세 환급이라는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음

2) 외국인 환자 중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 대상

- 이처럼 수수료 및 진료비 바가지가 감소하면서 거래 투명성이 제고되어 외국인 환자 유치에도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지만,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에서는 뚜렷한 변화가 감지되지는 않았음
-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을 보면, 2016년까지는 빠르게 증가하였지만, 그 이후에는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실적을 보이고 있음
 - 외국인 환자 수는 2009년 약 6만명에서 2016년에는 약 36.4만명으로 빠르게 증가하였지만, 2017년에 약 32.2만명으로 감소하였고, 2018년에는 다시 약 37.9만명으로 증가하였음
 - 부가가치세 환급제도가 2016년 4월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제도의 효과로 2017년에도 외국인 환자가 증가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환자 수는 감소하였음
 - 2017년과 2018년에는 사드 등으로 인해 중국의 한한령으로 중국의 단체관광객이 급격히 감소한 요인이 있어서, 외국인 환자 수 변화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보다 더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함
 - 외국인 환자 진료수익은 2009년 약 547억원이었는데 2016년에는 약 8,606억원으로 빠르게 증가하였지만, 2017년 이후 감소하여 2018년에도 약 6,238억원으로 2015년 수준보다도 더 낮아졌음

<표 V-6> 해외환자 유치실적

(단위: 만명, 억원)

구분	환자 수(실환자 수)	진료수익
2009	6.0	546.8
2010	8.2	1,032.3
2011	12.2	1,808.8
2012	15.9	2,672.9
2013	21.1	3,933.6
2014	26.7	5,569.2
2015	29.7	6,693.8
2016	36.4	8,605.5
2017	32.2	6,398.6
2018	37.9	6,238.2

주: 동일 환자가 복수의 진료과를 방문하거나 재진을 받아도 환자 1명으로 집계한 실환자 수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9. 4. 17.) 및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주요 국가별 외국인 환자 수를 보면, 중국인 환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으로 미국과 일본인 환자였음
 - 2016년 4월부터 부가가치세 환급제도가 시행되었는데, 그 이후 중국 한한령으로 2017년에 중국 관광객이 10만명 미만으로 감소하였지만, 2018년에는 약 12만명으로 증가함
 - 일본인 환자는 2016년과 2017년에 약 2만 7천여명이었는데, 2018년에는 약 4만 3천명으로 증가하였음
 - 미국인 환자 수도 일본인 환자 수와 비슷한 약 4만 5천명 수준임

<표 V-7> 주요국별 외국인 환자 수(실환자 수)

(단위: 명)

구분	2016	2017	2018
미국	48,788	44,440	45,213
일본	26,702	27,283	42,563
중국	127,648	99,837	118,310
러시아	25,533	24,859	27,185
몽골	14,798	13,877	14,042
기타	120,720	111,278	131,654
합계	364,189	321,574	378,967

주: 동일 환자가 복수의 진료과를 방문하거나 재진을 받아도 환자 1명으로 집계한 실환자 수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표 V-8> 주요국별 외국인 환자 비중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미국	13.4	13.8	11.9
일본	7.3	8.5	11.2
중국	35.0	31.0	31.2
러시아	7.0	7.7	7.2
몽골	4.1	4.3	3.7
기타	33.1	34.6	34.7
합계	100.0	100.0	100.0

주: 동일 환자가 복수의 진료과를 방문하거나 재진을 받아도 환자 1명으로 집계한 실환자 수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과 달리, 외국인 환자 미용성형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전표 발행건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2016년 3만여건에서 2018년에는 약 7만 6천여건으로 증가하였고, 2019년에는 약 14만 2천여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주요 국가별 부가가치세 환급전표 발행건수를 보면, 일본인 환자의 발행건수가 가장 많았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전체 외국인 환자 수에서는 중국인 환자 수가 일본인 환자 수보다 더 많았지만, 부가가치세 환급전표 발행건수는 이와 달리 일본인 환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전표 발행건수가 더 많았음
 - 특히 일본인 환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전표 발행 건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표 V-9> 주요국별 부가가치세 환급전표 발행건수

(단위: 건)

구분	2016	2017	2018	2019
미국	1,959	3,444	3,929	5,366
일본	10,417	17,424	29,839	63,678
중국	14,708	19,553	28,774	47,268
러시아	375	557	697	833
몽골	263	344	376	379
기타	5,937	9,016	12,720	24,252
합계	33,659	50,338	76,335	141,776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외국인 환자 수와 부가가치세 환급전표 발행건수를 비교해 보면, 전체 외국인 환자의 20% 미만의 환자들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는 것으로 추측됨
 - 다만, 국가별 환자 수 대비 부가가치세 환급전표 발행 건수 비율을 해석할 때 제시된 20%보다 낮게 보는 것이 합리적임
 - 첫째, 자료 한계상 실환자 수를 사용했는데 실환자 수는 진료과별 중복 환자를 제외해서 진료과별 실환자 수보다 적기 때문에 이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음
 - * 예를 들어 진료과별 실환자 수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2018년을 비교해보면, 2018년 실환자 수는 378,967명이고 진료과별 실환자 수는 464,452명으로 차이를 알 수 있음
 - 둘째, 1명의 환자가 1장 이상의 부가가치세 환급전표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외국인 환자들 중에서 환급하는 환자 비율은 더 낮아질 것임
 - 국가별로는 일본인 환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전표 발행건수 비율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높았음

<표 V-10> 주요국별 환자 수 대비 부가가치세 환급전표 발행건수 비율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미국	4.0	7.7	8.7
일본	39.0	63.9	70.1
중국	11.5	19.6	24.3
러시아	1.5	2.2	2.6
몽골	1.8	2.5	2.7
기타	4.9	8.1	9.7
합계	9.2	15.7	20.1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진료과별 실환자 수 대비 부가가치세 환급전표 발행건수를 비교해 보면, 전체 외국인 환자의 약 16.4%로 나타나며 이 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외국인 환자들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것으로 보면 적절함
 - 앞서 언급하였듯이, 1명의 환자가 1개 이상의 부가가치세 환급전표를 가지고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시된 비율보다 실제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일본인 환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전표 발행건수가 성형 및 피부과를 이용한 일본인 환자 수보다 많음
 - 진료과별 실환자 수 대비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성형 및 피부과를 이용한 외국인 환자 수의 비율은 약 28%임
 - 그리고 성형 및 피부과를 이용한 외국인 환자 수 대비 부가가치세 환급전표 발행건수 비율을 보면 약 58%임
- 이는 다시 말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환자들 중에서 약 85% 이상의 외국인 환자들은 부가가치세 환급제도와는 상관없이 의료용역을 이용한다고 볼 수 있음
- 만약 성형 및 피부과를 이용한 모든 외국인 환자들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다고 해도 그 비율은 약 28% 정도임
 - 자료 한계상, 성형 및 피부과 이외에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의료용역이 있으며, 또한 성형 및 피부과에서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하는 의료용역이 있어서,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표 V-11> 주요국별 환자 수 및 부가가치세 환급전표 발행건수(2018년)

(단위: 명, 건)

	총 실환자 수 ¹⁾	총 진료과별 실환자 수 ²⁾	성형/피부과 환자 수	부가세 환급전표 발행 건수
미국	45,213	58,588	8,622	3,929
일본	42,563	44,890	24,772	29,839
중국	118,310	129,905	50,988	28,774
러시아	27,185	45,061	3,671	697
몽골	14,042	20,245	1,966	376
기타	131,654	165,763	40,621	12,720
합계	378,967	464,452	130,640	76,335

주: 1) 동일 환자가 복수의 진료과를 방문하거나 재진을 받아도 환자 1명으로 집계한 실환자 수
 2) 1명의 환자가 복수의 진료과를 방문한 경우, 방문한 진료과별로 1명으로 표기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9. 4. 17.) 및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표 V-12> 주요국별 환자 수 대비 부가가치세 환급전표 발행건수 비율(2018년)

(단위: %)

	총 실환자 수 ¹⁾	총 진료과별 실환자 수 ²⁾	성형/피부과 환자 수
미국	8.7	6.7	45.6
일본	70.1	66.5	120.5
중국	24.3	22.2	56.4
러시아	2.6	1.5	19.0
몽골	2.7	1.9	19.1
기타	9.7	7.7	31.3
합계	20.1	16.4	58.4

주: 1) 동일 환자가 복수의 진료과를 방문하거나 재진을 받아도 환자 1명으로 집계한 실환자 수
 2) 1명의 환자가 복수의 진료과를 방문한 경우, 방문한 진료과별로 1명으로 표기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9. 4. 17.) 및 보건복지부 내부자료를 이용해서 저자가 재작성

□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는 일본과 중국인 환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부가가치세 환급건수를 기준으로 일본과 중국인 환자들의 환급건수는 전체 환급건수에서 약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2016년에는 74.6%였고, 2019년에는 78.2%를 차지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기준으로 보면, 일본과 중국인 환자들의 환급액이 전체 환급액에서 약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2016년에는 60.2%였고, 2019년에는 62.4%를 차지하고 있음
- 일본인 환자들의 부가가치세 환급건수 및 액수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중국인 환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건수 및 액수 비중은 감소하고 있음

[그림 V-6] 외국인 환자의 국적별 부가가치세 환급건수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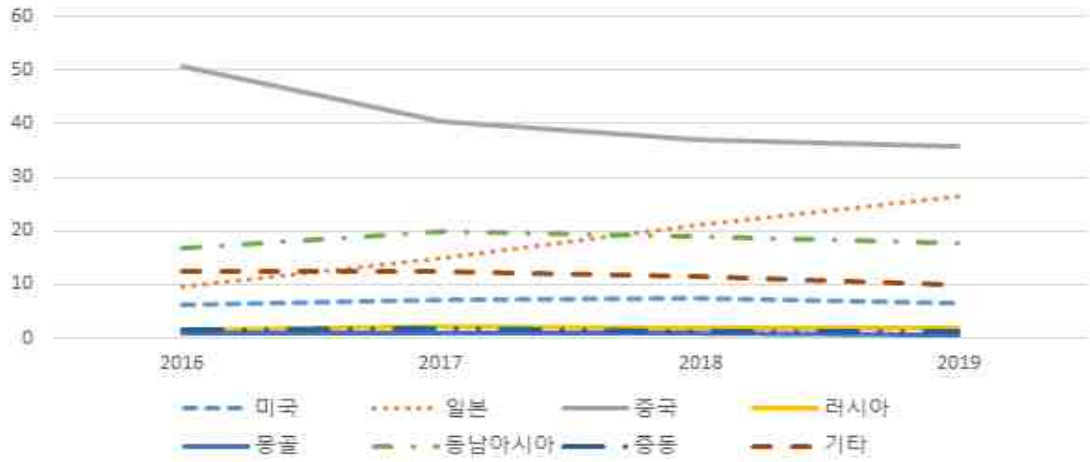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그림 V-7] 외국인 환자의 국적별 부가가치세 환급액수 비중 추이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표 V-13> 외국인 환자의 국적별 부가가치세 환급건수 및 액수 비중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건수	액수	건수	액수	건수	액수	건수	액수
미국	5.8	6.2	6.8	7.2	5.1	7.4	3.8	6.5
일본	30.9	9.6	34.6	15.1	39.1	21.1	44.9	26.6
중국	43.7	50.6	38.8	40.4	37.7	36.9	33.3	35.8
러시아	1.1	1.7	1.1	2.3	0.9	2.0	0.6	1.9
몽골	0.8	1.1	0.7	0.9	0.5	0.8	0.3	0.5
동남아시아	7.7	16.8	8.3	19.9	8.3	19.0	10.4	17.6
중동	0.8	1.6	1.0	1.8	0.6	1.4	0.4	1.2
기타	9.1	12.4	8.6	12.4	7.8	11.4	6.3	10.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이는 주요 국적별 상위 진료과 자료를 보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성형외과와 피부과의 이용 빈도가 일본과 중국인 환자들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임
- 중국과 일본인 환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진료과가 성형외과와 피부과임
- 미국과 러시아 등의 다른 국가들은 내과를 이용하는 환자가 가장 많았음
 - 내과를 이용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과는 상관이 없음

<표 V-14> 주요 국적별 상위 진료과(2018년)

구분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태국
1	성형외과	내과통합	피부과	내과통합	내과통합	내과통합	성형외과
2	피부과	검진센터	성형외과	검진센터	검진센터	검진센터	내과통합
3	내과통합	피부과	내과통합	산부인과	산부인과	일반외과	치과
4	산부인과	성형외과	검진센터	일반외과	피부과	산부인과	피부과
5	정형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정형외과	피부과	산부인과
6	검진센터	산부인과	일반외과	피부과	일반외과	비뇨기과	검진센터
7	신경외과	치과	치과	비뇨기과	성형외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8	치과	안과	이비인후과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이비인후과	안과
합계	129,905	58,588	44,890	45,061	20,245	23,634	9,317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9. 4. 17.) p. 9 표를 이용해서 저자가 제작성

3) 부가가치세 환급제도의 필요성

- 정부 정책을 통해 의료관광객 유치에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 의료 분야의 성장을 지원할 필요는 분명 있음
 - 국내의 높은 의료 수준을 이용해서 외국인들의 의료관광 또는 치료관광을 유치함으로써 관광 수입 증대
 - 의료서비스 시장 확대

-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 이를 위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6년부터 적용되고 있음

- 외국인 환자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는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지원 정책 중 하나로 도입되었음

- 다양한 정책 중에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시행되었음
 - 특히 외국인 환자들에게 정확한 진료비를 확인시킴으로써 불법 중개인(브로커)에 의한 수수료·진료비 부풀리기(바가지)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음

- 이러한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고 거래투명성을 높임으로서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 미용·성형 환자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였음

□ 이 목적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고 거래투명성을 높이는 성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외국인 환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진료비를 확인할 수 있어 중개인(브로커)에 의한 수수료·진료비 부풀리기(바가지)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짐
- 또한 외국인 환자는 진료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부가가치세 환급이라는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음

□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미용 및 성형 의료용역에 한정된 것으로 미용 및 성형 의료용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방지에만 한정된 성과를 얻은 것임

- 앞서 보았듯이, 미용 및 성형 의료용역 이외에서 진료를 받는 외국인 환자가 80%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은 상황임

□ 현재 정부에서는 미용 및 성형 의료용역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 환자 의료용역에 대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려는 여러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앞서 보았듯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징금이 부과됨
- 등록된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정해진 수수료를 이상을 수수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등록 취소와 과징금이 부과됨
- 또한 등록된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매년 사업실적을 보고해야 하며, 거짓으로 사업실적을 보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됨

□ 참고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로 등록된 유치업자 중에서 약 35% 정도만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이 있음

- 2018년 기준으로 등록된 유치업자는 총 1,572명이고 이 중 551명이 유치 실적이 있다고 보고함

- 유치업자와 달리 등록된 의료기관에서는 약 75% 가까운 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이 있다고 보고함

<표 V-15>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

(단위: 명,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유실적	431	479	579	481	551
(유실적 업자 비율)	36.5	33.4	30.8	35.8	35.1
무실적	428	763	779	513	628
미보고	322	190	524	351	393
합계	1,181	1,432	1,882	1,345	1,572
총 유치업자 대비 외국인 환자 수	226	207	194	239	241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266,501	296,889	364,189	321,574	378,967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9), <표 2.1>, p. 13을 이용해서 저자 작성

<표 V-16>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단위: 개소,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유실적	1,389	1,446	1,613	1,238	1,431
(유실적 의료기관 비율)	51.7	51.4	51.8	74.4	73.1
무실적	1,001	1,264	1,104	392	388
미보고	298	103	398	34	139
합계	2,688	2,813	3,115	1,664	1,958
총의료기관 대비 외국인 환자 수	99	106	117	193	194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266,501	296,889	364,189	321,574	378,967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9), <표 2.1>, p. 13을 이용해서 저자 작성

-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는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지원 정책 중 하나이지만,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유치시킬 중요한 정책은 아님
- 외국인 환자가 우리나라에 의료관광을 오는 이유는 국내 우수 의료기술 때문임
 - 외국인 환자 중에서 약 85% 이상의 외국인 환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제도와는 상관없이 의료용역을 이용

- 미용 및 성형 의료용역 이외의 다른 의료용역을 제공받기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가 다수
 - 앞서 보았듯이, 전체 외국인 환자의 20% 미만의 환자들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는 것으로 추측
 -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환자들 중에서 약 85% 이상의 외국인 환자들은 부가가치세 환급제도와는 상관없이 의료용역을 이용
 - 이전에 문제가 되었던 중개인(브로커) 수수료 및 진료비 부풀리기(바가지) 등은 법에 의해 억제 장치를 갖추고 있고, 중개인(브로커) 수수료, 진료비 등은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 공유가 용이해진 상황에서 중개인(브로커) 수수료 및 진료비 부풀리기(바가지) 등은 쉽지 않을 듯
 - 앞서 보았듯이,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로 등록된 유치업자 중에서 절반 이하인 약 35% 정도만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이 있음
- 따라서 부가가치세 기본 원칙에 맞지 않는 제도를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정확한 진료비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VI. 효과성 분석 1



Ⅵ. 효과성 분석 1

-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한 효과성 평가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음
 - 효과성은 제도의 도입 취지 달성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제도의 도입 취지 첫 번째는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이며, 두 번째는 불법 브로커들의 과다 수수료 청구로 인한 의료기관의 피해를 방지하고, 거래 양성화를 통한 세금 탈루 방지 및 과표 양성화임
 - 이러한 목표를 통해 궁극적으로 외국인 미용성형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최종 목표임
 - 따라서 효과성 평가의 핵심은 두 가지 제도 도입 취지의 달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임

1.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효과

- 2015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효과성 검증을 위해서는 적절한 방법론과 적절한 측정 변수가 요구됨
 - 첫째, 효과성 검증을 위한 방법론은 두 가지를 혼용할 계획임
 - 사건 분석(event study)과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을 활용하여 제도 도입 이후에 대한 효과를 검토함
 - 둘째, 의료관광객 유치 효과성을 검토하기 위해 의료관광객 유치와 관련된 적절한 측정 변수가 필요함
 - 우선, 의료관광객 유치의 목적 달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량적인 변수로서, 환자 수 및 진료수입, 의료용역별 진료건수,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환급 건수 등을 살펴볼 수 있음
 - 다음으로는 정성적인 변수로서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본 의견들을 종합하여 의료관광객 유치와 관련한 목표 달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음

- (사용된 자료)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보건복지부 의료용역별 외국인 환자 관련 자료들과 연도별 진료과별 환자 수 및 진료수입 현황 자료임
 - 의료용역별 외국인 환자 관련 자료는 의료용역별 환자 환급실적, 진료과별 부가가치세 환급 의료기관 현황, 환급창구운영사업자별 부가가치세 환급 의료기관 현황,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과 환급사업자 간 가맹·미가맹 여부에 따른 의료기관, 외국인 환자 국적별 현황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제공함
 - 두 번째 자료인 연도별·진료과별 환자 수 및 진료수입 현황 자료는 진료과별 내국인 및 외국인 환자의 환자 수와 진료수입 내역을 포함하며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정보가 제공됨
 - 두 자료를 적절히 혼용하여 적절한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이 분석에 핵심임

가. 사건 분석(Event Study)

- (사건 분석) 사건 분석 방법은 미용성형 의료용역 외국인 환자 부가세 환급제도가 실시된 2016년을 기점으로 그 전후의 환자 수 및 진료수입을 비교하는 방법임
 - 사건 분석의 장점은 환자 수 및 진료수입의 연도별 변화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제도의 변화 전·후를 상대적으로 쉽게 파악해 볼 수 있다는 점임
 - 자료는 연도별·진료과별 외국인 환자 수 및 진료수입 현황 자료를 사용함
 - 분석에 사용된 회귀방정식은 다음과 같음

$$\ln(\text{환자수 혹은 진료수입}_{st}) = \sum_{d=-6}^3 \tau_{st}^d \cdot \beta_d + T_t + \sigma_s + \epsilon_{st} \quad \text{식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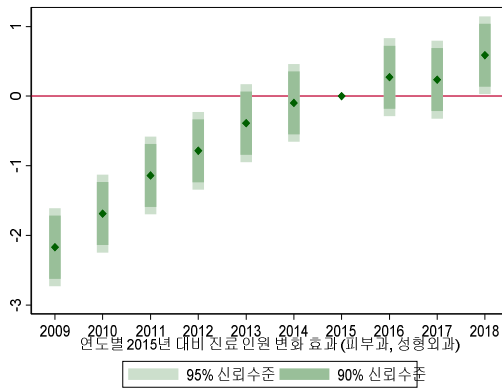
- 회귀식에서 s 는 의료 진료과를 나타내며, t 는 연도를 의미하며, d 는 미용성형에 대한 외국인 환자 부가가치세 환급이 실시된 2015년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변수임
 - 예를 들어, t 가 2011년이라고 한다면, d 는 2015년까지의 거리이므로, -4가 됨
 - τ_{st}^d 는 사건 연도(event year)를 지시하는 지시변수(indicator)임
- (사건 분석 결과) 그래프 분석을 통해 진료인원 및 진료비 효과를 살펴봄
 - 부가가치세 환급제도가 실시되기 시작한 2016년을 전후로 살펴봄

- 이때 비교를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이 실시되기 바로 직전 연도인 2015년 대비 효과를 그래프에 표시함
-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되는 진료과목은 피부과 및 성형외과이며, 그 외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고 따라서 환급 자체가 없는 기타 진료과는 내과통합(일반내과, 감염내과, 내분비대사내과, 류마티스내과,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신장내과, 알레르기내과, 혈액종양내과, 호흡기내과, 가정의학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신경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치과, 한방통합(한의과, 한방내과, 사상체질의학과, 한방부인과, 한방재활의학과, 한방피부과, 침구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소아과, 한방이비인후과, 한방안과)임
-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되는 과는 피부과 및 성형외과이고 그 외의 과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진료과목이 아니므로¹⁹⁾, 두 집단의 연도별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그림 VI-1]은 부가가치세 환급제도가 실시된 2016년을 기점으로 2015년 대비 각 연도별로 진료인원 및 진료비에 미친 효과의 차이를 보여줌
 - (가)와 (나)는 2015년 대비 각 연도별 진료인원에 미치는 효과를 보여주며, (다)와 (라)는 2015년 대비 각 연도별 진료비에 미치는 효과를 보여줌
 -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2015년의 효과와 대비하여 2009~2013년까지는 진료인원 및 진료비에 있어서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작음
 - 즉, 연도별 진료인원 및 진료비에 미치는 효과는 점점 상승하는 추세에 있음을 파악할 수 있음
 - 중요한 점은 부가가치세 환급제도가 실시된 2016년 이후에 진료인원 및 진료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는지 여부임
 - 2015년 이후 2016년, 2017년 및 2018년 3개년도 자료만 존재하여 장기간의 데이터 분석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으나, 2016년 이후 진료인원 및 진료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약하게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됨
 - 2009년부터 2018년까지의 진료인원 및 진료비 효과가 진료과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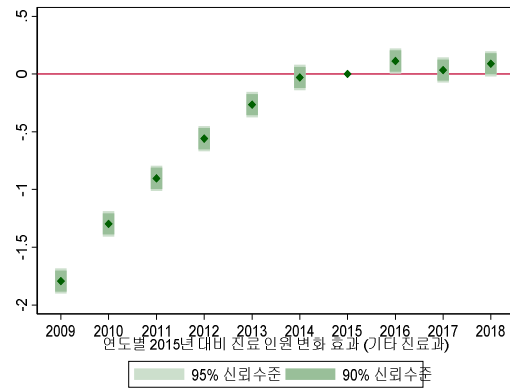
19) 치과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되는 진료 영역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에서는 이를 구분하기가 어려워,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진료과에서 제외함

-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피부과 및 성형외과와 부가가치세 환급을 적용 받지 못하는 기타 진료과의 경우 효과의 추세(trend)가 유사하여, 본 그래프만 놓고 부가가치세 환급의 효과를 정확히 식별하는 것은 불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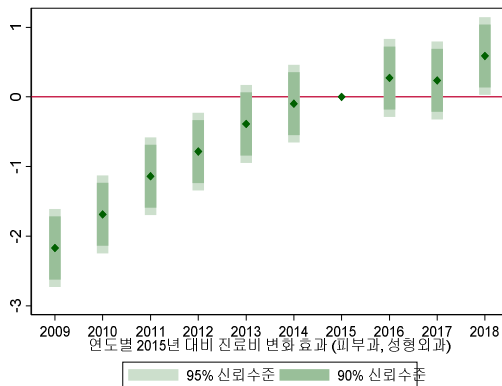
[그림 VI-1] 연도별 진료인원 및 진료비 효과(2009~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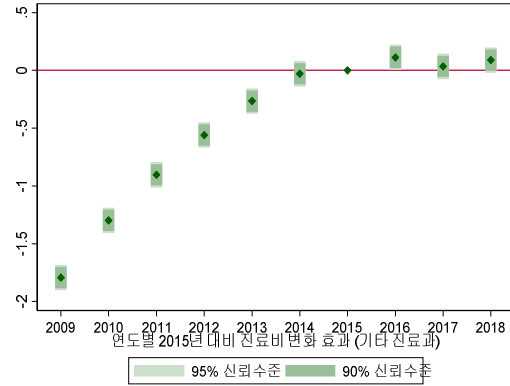
(가) 피부과, 성형외과 진료인원



(나) 기타 진료과 진료인원



(다) 피부과, 성형외과 진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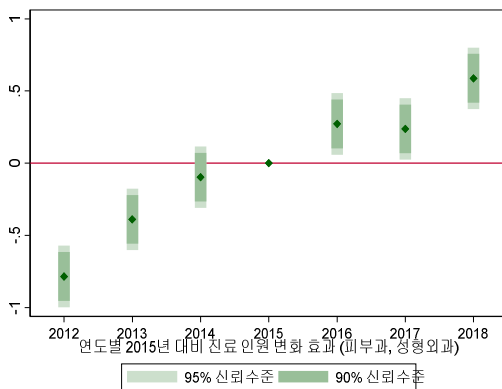


(라) 기타 진료과 진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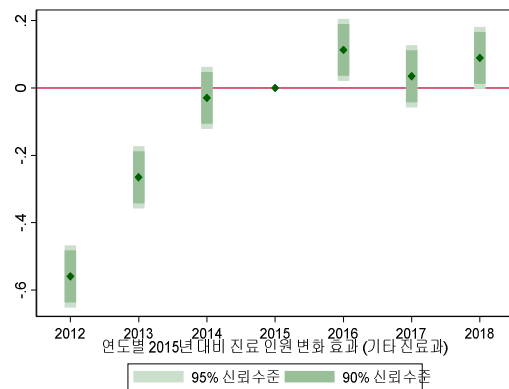
- [그림 VI-1]은 2015년을 기준으로 과거 연도의 자료가 상대적으로 많아 추정 결과에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그림 VI-2]에서는 2015년 이전 3개년도 자료와 그 이후 3개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균형(balanced)을 이룬 자료를 활용하여 동일한 분석을 실시함
 - 분석 결과를 검토하면, [그림 VI-1]과 해석에서 차이가 있음
 - 2015년 이후 2016~2018년에는 진료인원 및 진료비의 효과가 2015년의 효과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또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적용받는 피부과 및 성형외과와 기타 진료과목을 비교할 경우 차이점이 관찰됨
- 피부과, 성형외과의 경우 진료인원 및 진료비 효과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환급이 실시된 2016년에 2015년의 효과와 비교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2018년에는 그 차이가 더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반면, 기타 진료과목의 경우 진료인원 및 진료비에 있어서 그 효과가 2015년과 비교하여 2016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나, 그 이후 2017년과 2018년에는 그 효과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음
-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실시된 2016년 이후 외국인 환자의 진료인원 수 및 진료비는 증가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그 효과는 2016년에 비해 유의미하게 큰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제도의 적용을 받는 피부과와 성형외과에서 그러한 경향을 더 크게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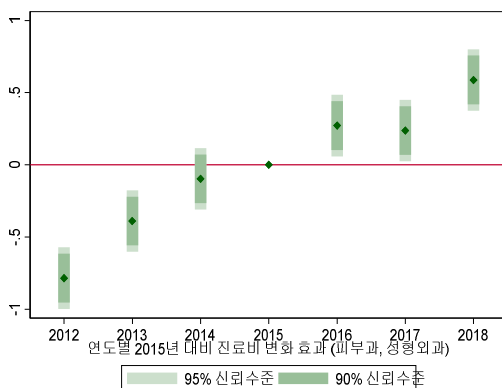
[그림 VI-2] 연도별 진료인원 및 진료비 효과(2012~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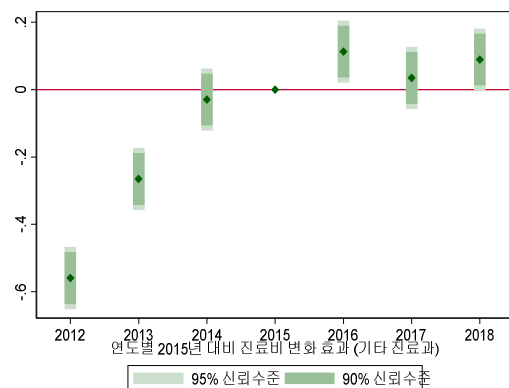
(가) 피부과, 성형외과 진료인원



(나) 기타 진료과 진료인원



(다) 피부과, 성형외과 진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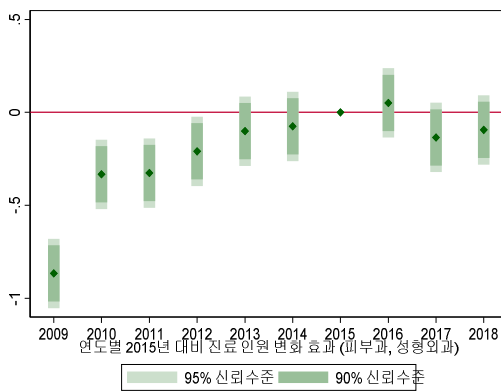


(라) 기타 진료과 진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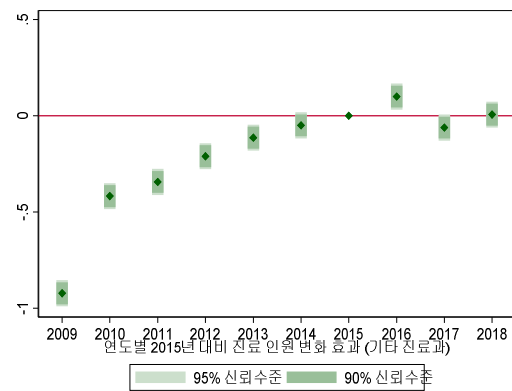
○ 또 다른 강건성 검토를 위해 내국인 환자의 연도별 효과 변화를 통해 위약효과(placebo test)를 검토함

- 내국인의 경우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보건·의료용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됨
- 다만, 미용성형 목적의 의료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는 것이 원칙이며, 외국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만, 내국인의 경우 여전히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음
- 따라서 이론적인 관점에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에 대한 정책적 변이(variation)가 없는 내국인 환자의 경우, 진료과목에 따라 진료인원 및 진료비효과의 급격한 변화가 관찰되어서는 안 됨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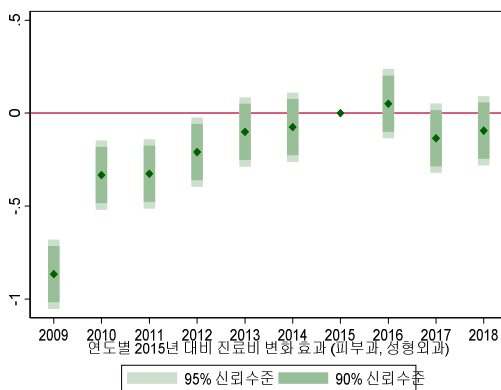
[그림 VI-3] 연도별 진료인원 및 진료비 효과(2009~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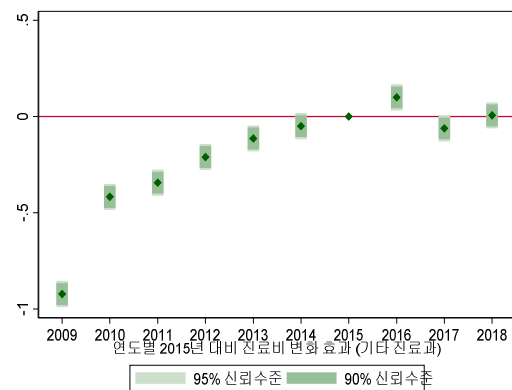
(가) 피부과, 성형외과 진료인원



(나) 기타 진료과 진료인원



(다) 피부과, 성형외과 진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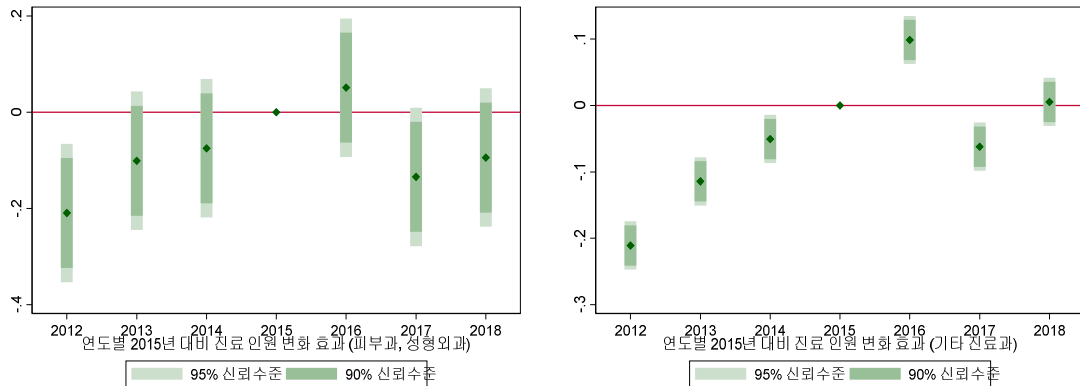


(라) 기타 진료과 진료비

20) 물론 분석 기간 중 부가가치세 관련 정책 외의 다른 정책이 존재한다면, 진료인원 및 진료비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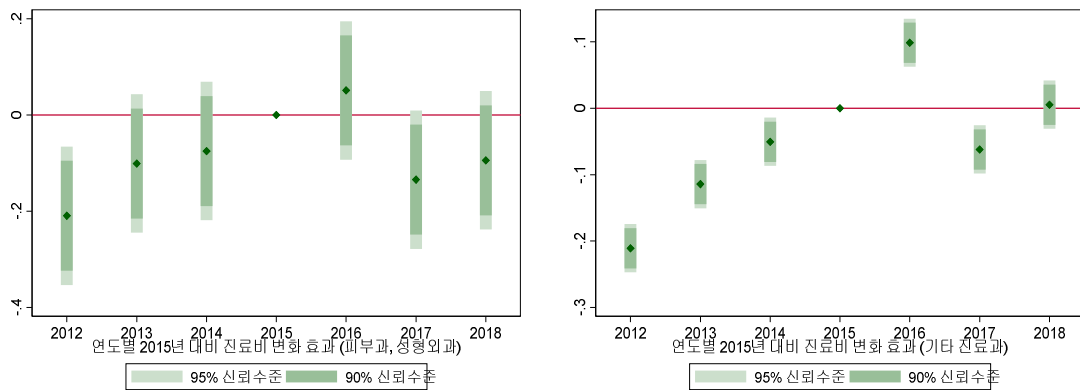
- [그림 VI-3]은 [그림 VI-1]에서 살펴본 분석을 내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동일하게 검토한 것임
- 실증 분석 결과 이론적 예측과 동일하며, 피부과, 성형외과, 기타 진료과목 모두 2015년에 비해 진료인원 및 진료비에 미치는 효과는 2016년, 2017년 및 2018년에 뚜렷한 경향성이 발견되지 않음
- 또한 피부과, 성형외과 및 기타 진료과 등 진료과목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지 않아 이론적인 예측과 일치함

[그림 VI-4] 연도별 진료인원 및 진료비 효과(2012~2018년)



(가) 피부과, 성형외과 진료인원

(나) 기타 진료과 진료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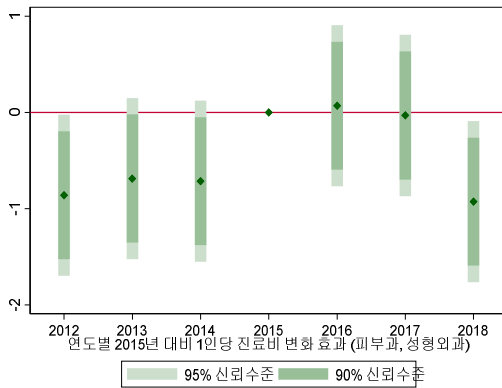
(다) 피부과, 성형외과 진료비

(라) 기타 진료과 진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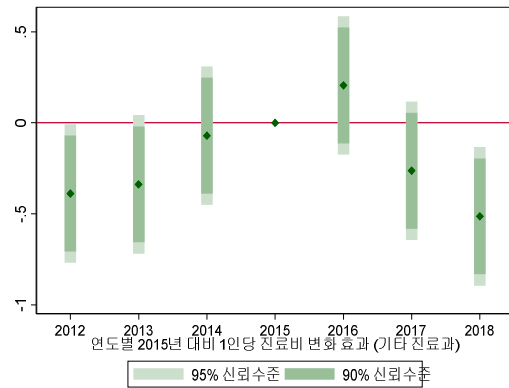
- [그림 VI-4]는 [그림 VI-2]와 동일한 검토를 내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살펴봄
 -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2015년 전후의 균형을 이룬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016~2018년의 효과는 진료인원 및 진료비에 유의미하게 크게 영향을 미침

- 이론적인 관점에서는 내국인 환자에게 2016년 부가가치세 환급제도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타당함
 - 이론적인 예측과 마찬가지로, 실증분석 결과 2016~2018년에는 2015년의 효과에 비해 진료인원 및 진료비에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음
 - 다만, 기타 진료과목의 경우 2016년의 효과가 2015년에 비해 유의미하게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2017년에 다시 큰 폭으로 그 효과가 감소하는데, 이는 2017년 국내 진료 환자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에 따른 이유로 해석됨
- 지금까지 진료인원과 진료비를 따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이제는 진료인원 대비 진료비(1인당 진료비)의 변화를 통해 부가가치세의 환급효과를 분석함 (그림 VI-5)
- 본 분석은 2012-2018년 자료를 기준으로 살펴봄
 - [그림 VI-5]의 (가)와 (나)는 외국인 환자의 1인당 진료비 효과를 2015년과 대비하여 분석한 그래프이며, (다)와 (라)는 내국인 환자의 1인당 진료비 효과를 2015년과 대비하여 분석한 그래프임
 - 외국인 환자의 경우, 2018년 연도별 진료인원 및 진료비의 효과는 2015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양(+)의 값을 가졌으나, 1인당 진료비 효과는 2018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음(-)의 값을 보임
 - 반대로, 내국인 환자의 경우 2015년 대비 2018년의 진료인원 및 진료비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크게 관찰되지는 않았으나, 1인당 진료비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양(+)의 값을 보임
 - 1인당 진료비의 연도별 효과에 있어서 피부과, 성형외과를 기타 진료과와 비교해보면, 외국인 환자의 경우 기타 진료과에서는 2017년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피부과, 성형외과에서는 2017년에는 차이가 없고 2018년에만 감소하는 효과가 있음
 - 사드 영향 등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의 감소와 더불어 1인당 진료비 효과도 2017년에 많이 감소할 수 있으나, 피부과, 성형외과의 경우 큰 감소를 보이지는 않은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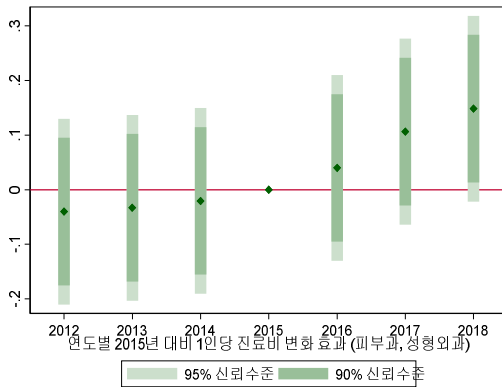
[그림 VI-5] 연도별 1인당 진료비 효과(2012~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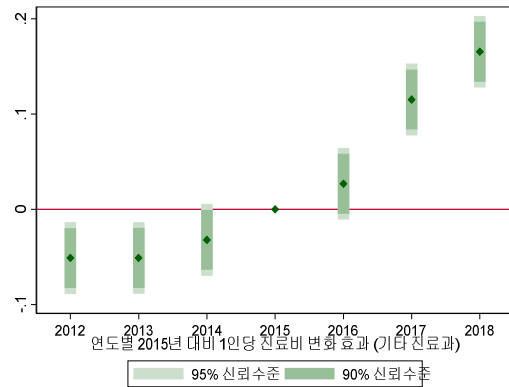
(가) 피부과, 성형외과 외국인



(나) 기타 진료과 외국인



(다) 피부과, 성형외과 내국인



(라) 기타 진료과 내국인

- (사건 분석 소결) 여러 그래프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미용성형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이 실시된 2015년 이후 외국인 환자의 진료건수 증가 및 진료비 증가 현상을 관찰할 수 있음
 - 다만, 그 증가 현상이 부가가치세 환급으로 인한 것임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더 다양한 정보를 통한 추가 분석이 요구됨
 - 2016년 사드 관련 이슈로 인해 2017년 중국인 관광객의 감소가 있었음에도, 사건 분석에서 연구한 상대적인 효과의 크기를 통해 살펴본 부가가치세 환급 효과가 양(+)의 효과로 나왔다는 점은 부가가치세 환급이 의료관광객 숫자 증가에 일정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음

나. 이중차분법 분석(Difference in Difference)

- (이중차분법 분석) 이중차분법은 부가가치세 환급제도가 실시된 2016년 전후로 미용성형 의료용역과 기타 용역의 진료인원 및 진료비 변화를 분석하는 것임
- 효과의 추정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사용함

$$y_{it} = \alpha + \beta D_i^* T_t + D_i + T_t + \epsilon_{it} \quad \text{식 (2)}$$

$$y_{it} = \alpha + \beta D_i^* T_t + D_i + T_t + \epsilon_{it} \quad \text{식 (3)}$$

- 식 (2): i 는 환자의 국적(내국인 또는 외국인)을 의미하며, t 는 진료 연도를 나타내고, y_{it} 는 외국인 또는 내국인 환자의 미용성형 진료인원 및 진료비를 의미하며, $D_i = 1$ 이면 미용성형 의료용역을 이용한 외국인 환자, $D_i = 0$ 이면 미용성형을 이용한 내국인 환자를 의미하며, $T_t = 1$ 은 2016년 이후, $T_t = 0$ 은 2016년 이전을 의미함
- 환자의 국적별, 연도별 변화에 따른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각각 환자 국적 고정효과(D_i)와 연도별 고정효과(T_t)를 회귀방정식에 포함시킴
- 식 (3): i 는 진료과목을 의미하며, t 는 진료 연도를 나타내고, y_{it} 는 외국인 환자 진료인원 및 진료비를 의미하며, $D_i = 1$ 이면 미용성형 의료용역이며, $D_i = 0$ 이면 기타 의료용역을 의미하며, $T_t = 1$ 은 2016년 이후, $T_t = 0$ 은 2016년 이전을 의미함
- 진료과목별, 연도별 변화에 따른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각각 진료과목 고정효과(D_i)와 연도별 고정효과(T_t)를 회귀 방정식에 포함시킴
- 직관적으로는 이중차분법에서는 두 개의 그룹을 비교하는 것인데, 식 (2)에서는 미용성형 의료용역을 이용한 외국인 환자를 처치집단(treatment group), 미용성형 의료용역을 이용한 내국인 환자를 통제집단(control group)으로 분류하며, 식 (3)에서는 미용성형 의료용역 분야를 처치집단, 기타 의료용역 분야를 통제집단(control group)으로 정함
- 이중차분법 적용을 위해서는 기본 가정인 평행 추세선(parallel trend) 가정이 성립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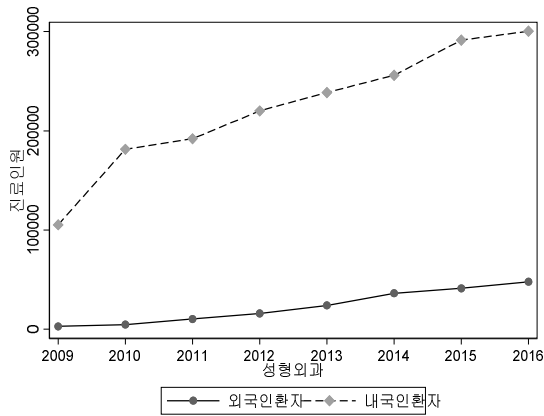
- 식 (2):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은 외국인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내국인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함
- 이중차분법의 기본 가정을 적용해보면, 외국인 환자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부가가치세 환급제도가 시행된 2016년 이전에 외국인 환자 및 내국인 환자의 진료인원 및 진료비 추이가 유사해야 함
- 식 (3): 외국인 환자들의 경우 진료과목에 상관없이 상당히 동질적이라고 가정함
- 이중차분법의 기본 가정을 적용해보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시행된 2016년 이전에 미용성형 의료용역을 이용한 외국인 환자의 진료인원과 진료비가 기타 진료과목을 이용한 외국인 환자의 진료인원 및 진료비와 유사해야 함

□ **(방법 1: 식 (2) 분석 결과)** 미용성형 의료용역을 이용한 외국인 환자와 미용성형 의료용역을 이용한 내국인 환자를 비교하는 식 (2)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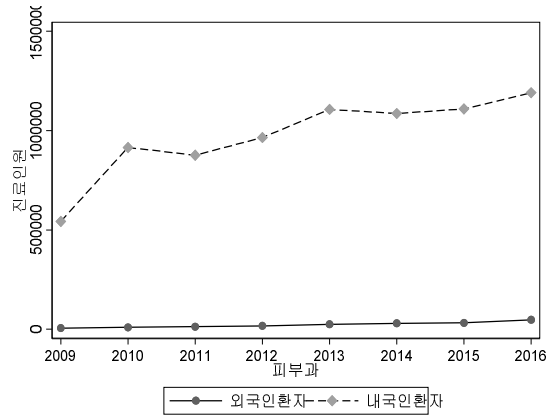
- 먼저 이중차분법 가정이 성립하는지 확인해 봄
 - [그림 VI-6]은 외국인 환자 및 내국인 환자의 진료인원 및 진료비 추이를 2009년부터 비교함
 - 성형외과의 경우 진료인원 및 진료비에 있어서 외국인 환자와 내국인 환자의 추이가 매우 유사하게 보임
 - 반면, 피부과의 경우 외국인 환자와 내국인 환자의 추세선이 평행하다고 판단하기 다소 어려움
 - 따라서 분석은 성형외과와 피부과를 모두 고려한 분석과, 평행 추세선 가정을 상대적으로 더 잘 만족하는 성형외과의 경우를 바탕으로 별도의 분석을 가함
- 회귀방정식 결과를 검토하기 전 그래프 분석을 통해 성형외과와 피부과의 진료인원 및 진료비의 추이가 2016년 이후 어떻게 달라지는 검토함
- [그림 VI-7]의 경우 [그림 VI-6]을 연장하여 2017년과 2018년을 포함시킴
 - [그림 VI-7]은 2016년 이후 성형외과와 피부과의 추이를 보여주는데, 내국인 환자의 경우 공통적으로 2016년 이후 감소함
 - 외국인의 경우 진료인원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성형외과의 경우 진료비는 감소하는 현상이 관찰되나, 감소 폭은 내국인 환자의 경우에 비해 작음

- 직관적으로 봤을 때, 2016년 이후 미용성형 분야의 진료인원 및 진료비 감소 현상이 관찰되나, 외국인 환자의 경우 미세하게 증가하거나, 감소 폭이 내국인 환자에 비해 작다는 것이 특징임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2016년 부가가치세 환급제도의 효과를 통해 추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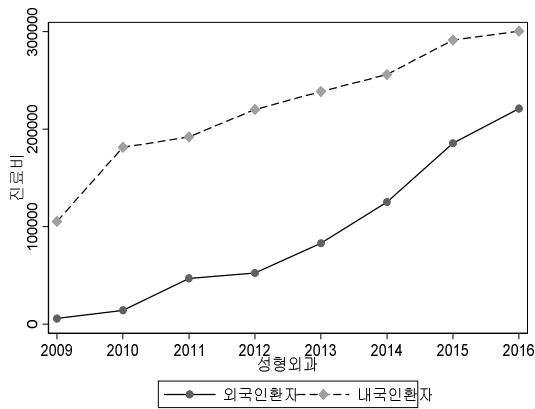
[그림 VI-6] 외국인 환자 및 내국인 환자 진료인원 추이(2009~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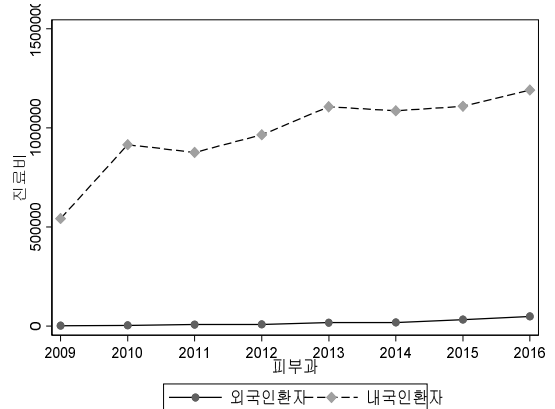
(가) 외국인 및 내국인 진료인원 추이 (성형외과)



(나) 외국인 및 내국인 진료인원 추이 (피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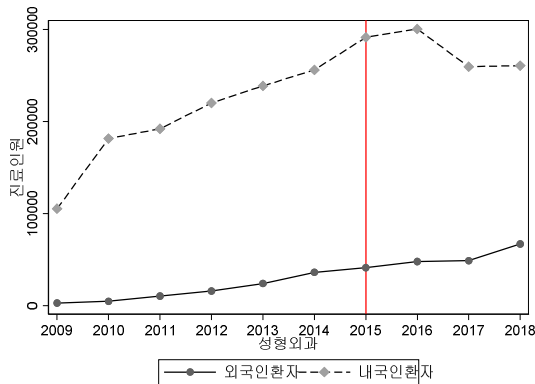


(다) 외국인 및 내국인 진료비 추이 (성형외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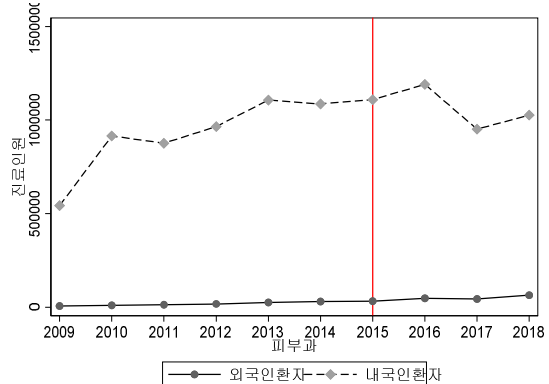


(라) 외국인 및 내국인 진료비 추이 (피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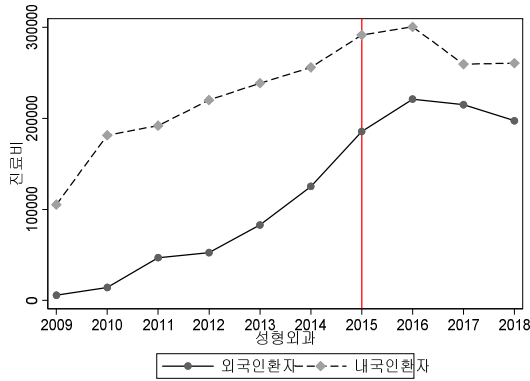
[그림 VI-7] 외국인 환자 및 내국인 환자 진료인원 추이(2009~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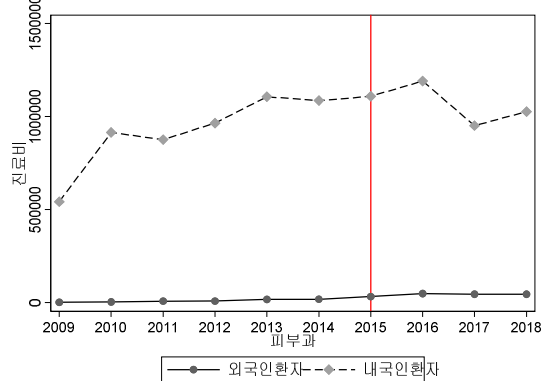
(가) 외국인 및 내국인 진료인원 추이 (성형외과)



(나) 외국인 및 내국인 진료인원 추이 (피부과)



(다) 외국인 및 내국인 진료비 추이 (성형외과)



(라) 외국인 및 내국인 진료비 추이 (피부과)

○ 추정결과는 다음 표와 같음

- <표 VI-1>은 2009년부터 2018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며, <표 VI-2>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 분석 기간과 관계없이 실증분석 결과는 매우 일관적(consistent)인 것으로 보임
- 분석 결과를 보면, 어떠한 모형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음
- 이를 해석하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첫째, 실제로 부가가치세 환급효과가 없거나 둘째, 처치집단과 비교하는 통제집단의 설정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앞의 [그림 VI-6]을 통해 살펴본 외국인과 내국인의 평행 추세선 가정을 위배할 경우 실제 참된 추정치와 다른 결과값을 보일 수 있음

- 실제로 진료비의 경우 외국인 및 내국인의 추세가 상당히 평행하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외의 그래프에서는 평행 추세선 가정이 위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표 VI-1> 이중차분법 회귀방정식 결과: 2009~2018년

가. log(진료인원)	성형외과+피부과	성형외과	피부과
상수	10.75***(0.43)	10.73***(0.45)	10.81***(0.46)
$D_i^* T_t$	0.20(0.91)	0.30(1.25)	0.09(1.27)
나. log(진료비)	성형외과+피부과	성형외과	피부과
상수	10.22***(0.35)	10.30***(0.37)	10.26***(0.37)
$D_i^* T_t$	0.33(0.73)	0.34(1.02)	0.32(1.03)

주: *** 1% 유의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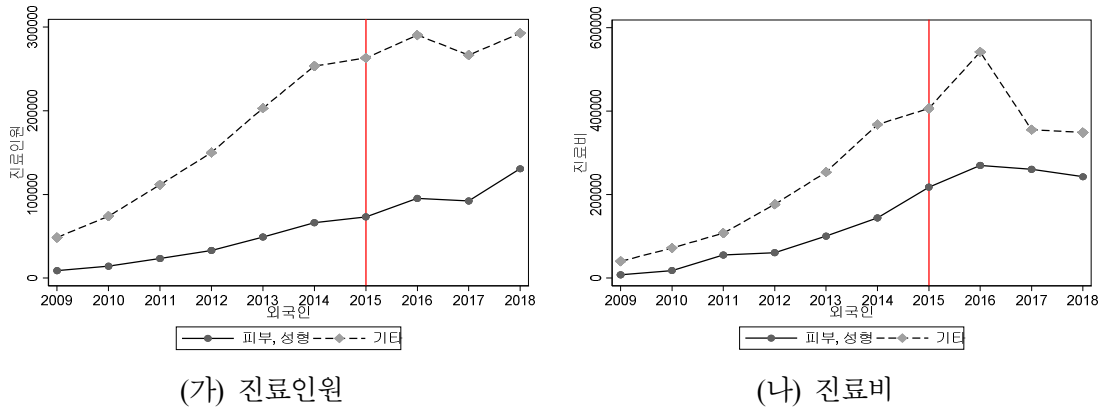
<표 VI-2> 이중차분법 회귀방정식 결과: 2012~2018년

가. log(진료인원)	성형외과+피부과	성형외과	피부과
상수	11.72***(0.42)	10.79***(0.45)	10.74***(0.44)
$D_i^* T_t$	0.16(0.96)	0.09(1.27)	0.30(1.26)
나. log(진료비)	성형외과+피부과	성형외과	피부과
상수	10.22***(0.35)	10.23***(0.36)	10.27***(0.36)
$D_i^* T_t$	0.33(0.73)	0.32(1.02)	0.34(1.02)

주: *** 1% 유의수준

- 따라서 몇 가지 다른 표본을 구성하여 동일한 분석을 시도하여 결과의 신뢰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
- (방법 2: 식 (3) 분석 결과) 식 (2)의 분석결과가 신뢰할 만한 결과인지 평가하기 위해 식 (3)을 통해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을 다르게 구성하여 검토함
 - 먼저 이중차분법 가정이 성립하는지 확인해 봄
 - [그림 VI-8]은 외국인 환자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인 피부과 및 성형외과의 진료인원 및 진료비를 외국인 환자의 기타 진료과목과 비교함
 - 모든 의료용역에서 상승하는 추세가 관찰되나, 이중차분법의 평행 추세선 가정을 만족한다고 보기 어려움

[그림 VI-8] 외국인 환자 피부, 성형 및 기타진료과 진료인원 및 진료비



[그림 VI-9] 외국인 환자 피부, 성형 및 내과통합 진료인원 및 진료비



- 따라서 여러 기타 진료과목 중 피부 및 성형외과의 2016년 전 진료인원 및 진료비와 비슷한 추세를 따르는 과목을 선택함
 - 여러 기타 진료과목 중에서 2016년 이전 피부과 및 성형외과의 진료인원 및 진료비 추세를 가장 비슷하게 따르는 진료과목은 내과통합임
 - 따라서 내과통합을 통제집단으로 정한 후, 피부과 및 성형외과를 처치집단으로 분류하여 분석함
 - [그림 VI-9]의 (가)와 (나)는 피부과 및 성형외과의 총진료인원 및 진료비를 처치집단으로 이용하였으며, (다)와 (라)는 성형외과만을 처치집단으로 분류한 분석결과이고, (마)와 (바)는 피부과만을 처치집단으로 분류한 분석 결과임
- 내과통합을 통제집단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VI-3>에 제시됨
 - 여러 기타 진료과목 중에서 2016년 이전 피부과 및 성형외과의 진료인원 및 진료비 추세를 가장 비슷하게 따르는 진료과목은 내과통합임
 - 성형외과와 피부과를 모두 처치집단으로 고려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이후 진료인원과 진료비의 증가가 관찰되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임
 - 해석을 하면, 외국인 환자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부가가치세 환급이 시행된 이후에 진료인원은 내과통합에 비해 약 59% 증가하였으며, 진료비는 45% 증가함
 - 이러한 결과는 피부과만을 처치집단으로 고려하였을 경우 통계적으로 더욱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피부과의 경우 내과통합 외국인 환자에 비해 진료인원은 46%가 증가하고, 진료비의 경우 50%가 증가함
 - 다만 평행 추세선 가정에 비추어 보면, 진료인원의 경우가 더욱 신빙성이 있고, 진료비의 경우에는 추정치의 신뢰성이 진료인원의 경우에 비해 떨어짐
 - 또한 분석에 포함되어야 하는 통제 변수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이러한 점이 추정에 오차를 일으킬 수 있음
 - 결론적으로, 주어진 자료로 분석하였을 경우, 미용성형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내과통합 외국인 환자에 비해 피부과 및 성형외과 외국인 환자를 유의미하게 증가시킴

<표 VI-3> 이중차분법 회귀방정식 결과: 내과통합이 통제집단인 경우

가. log(진료인원)	성형외과+피부과	성형외과	피부과
상수	8.83***(0.13)	8.89***(0.19)	9.26***(0.05)
$D_i^* T_t$	0.59***(0.18)	0.72**(0.26)	0.46***(0.07)
나. log(진료비)	성형외과+피부과	성형외과	피부과
상수	8.50***(0.12)	9.00***(0.20)	8.42***(0.11)
$D_i^* T_t$	0.45**(0.18)	0.40(0.28)	0.50**(0.15)

주: *** 1% 유의수준, ** 5% 유의수준

2. 세수 효과 분석

- 세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한 의료기관 및 가맹점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등록제도를 운영함
 -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에게 일정한 요건을 갖춰 등록하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로 인한 국내 의료시장질서 혼탁화를 방지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 과다경쟁으로 인한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막고, 미자격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난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한국 의료서비스의 대외 이미지 실추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임
 - 또한 환급창구운영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맺은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함
- 부가가치세 환급의 세수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동 제도를 통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 효과(+)와 동 제도의 시행으로 발생하게 되는 조세지출 효과(-)를 비교하여 분석함

- 우선 부가가치세 환급의 조세지출 규모는 외국인 환자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의 실제 부가가치세 환급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 동 제도를 통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 효과(+)는 외국인 환자 수 증가에 따른 진료수입의 증가와 과표 양성화를 통한 추가적인 소득세수로 계산함
- 세수 효과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자료를 사용함
 - 첫 번째 자료는 2015년의 성형외과 및 피부과 의료기관의 2016년 기준 가맹 209개 성형외과 및 109개 피부과 의료기관의 진료수입 자료임
 - 두 번째 자료는 첫 번째 자료와 마찬가지로 2015년의 성형외과 및 피부과 의료기관의 2017년 기준 가맹 및 미가맹 의료기관의 진료수입 자료임
 - 세 번째 자료는 2017년을 기준으로 313개 가맹 의료기관 중 2014년 이후 환급실적이 있는 기관과 환급실적이 없는 의료기관의 진료수입 자료임

□ (조세지출 내역) 조세지출 금액은 부가가치세 환급액으로 나타나며,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표 VI-4>와 같음

- 2016년 이후 연도별 부가세 환급전표 발행건수가 증가하면서, 부가가치세 환급액 규모도 증가함
- 2016년 부가세 환급액은 약 79억원 수준에서 2019년에는 약 192억원까지 증가함

<표 VI-4> 연도별 부가가치세 환급 규모

(단위: 건, 원)

연도	부가세 환급전표 발행건수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환급액
2016	33,659	100,993,319,390	9,181,201,460	7,892,811,498
2017	50,338	133,023,394,329	12,149,036,040	10,479,184,000
2018	76,335	174,808,904,780	16,084,198,679	13,784,759,500
2019	141,776	247,233,224,907	22,760,876,218	19,238,638,500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

□ (진료과별 부가가치세 내역) <표 VI-5>는 연도별로 의료용역별 부가가치세 내역을 요약함

- 연도별 부가가치세 총합계가 <표 VI-4>와 차이가 나는 부분은 백만원 단위로 절삭함에 따른 차이로 해석할 수 있음

- 쌍꺼풀 수술과 코성형 수술의 부가가치세 규모가 크며, 최근 들어서는 주름살 제거술, 안면윤곽술의 부가가치세 규모가 크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음
- 의료용역별 부가가치세 환급 규모에 대한 자료는 없지만, <표 VI-4>의 부가가치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액 비율로 추정해 보면, 각 의료용역별로 부가가치세 환급규모는 부가가치세 규모의 약 85%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표 VI-5> 의료용역별 부가가치세 규모

(단위: 백만원)

의료용역	2016	2017	2018	2019
쌍꺼풀수술	1,326	1,533	1,362	1,883
코성형수술	978	1,219	1,611	2,065
유방수술	413	636	899	1,268
지방흡입술	587	797	1,146	1,763
주름살제거술	990	1,389	1,763	2,657
안면윤곽술	1,107	1,832	2,054	2,500
치아성형술	9	14	35	38
악안면교정술	134	230	301	232
색소모반, 주근깨, 흑색점, 기미 등	123	160	203	220
여드름 치료술	26	38	49	49
제모술	3	4	2	7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205	247	376	563
문신술, 문신제거술, 피어싱	41	35	23	22
지방융해술	127	250	239	146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1,212	1,436	2,023	2,328
기타	1,890	2,320	3,998	7,009
합계	9,171	12,149	16,084	22,750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

- 세수효과 추정은 세 가지 자료(자료 1, 자료 2, 자료 3)와 두 가지 방법론(세수계산1, 세수계산2)을 사용하여 분석하며, 방법론과 관련된 설명은 추후 서술함

- (자료 1) 외국인 환자유치 의료 등록기관 중 부가가치세 환급창구운영 사업자와 가맹/미가맹 의료기관의 미용성형 의료용역 외국인 환자의 진료건수 및 공급가액, 그리고 부가가치세 환급실적 규모를 살펴보면 <표 VI-6>과 같음
 - 동 제도가 실시된 2016년과 바로 전년도인 2015년의 자료임
 - 성형외과의 경우 2016년 가맹 의료기관의 진료수입은 약 2,000억원이 넘으며, 이들의 2015년 진료수입은 약 1,640억원으로, 제도가 시행된 이후 가맹 의료기관의 진료수입은 약 360억원 증가함
 - 반면, 미가맹 성형외과 의료기관의 진료수입은 2015년 약 213억원에서 2016년 약 199억원으로 약 14억원이 감소함
 - 이와 같은 추세는 피부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가맹 피부과 의료기관의 경우 진료수입이 2015년 약 245억원에서 2016년 420억원으로 약 175억원이 증가한 반면, 미가맹 피부과 의료기관의 경우 2015년 진료수입이 약 78억원에서 2016년 약 67억원으로 약 11억원이 감소함

<표 VI-6> 부가가치세 환급 가맹/미가맹 의료기관 진료수입 현황

(단위: 원)

구분	2015년	2016년	차이	
	금액	금액		
성형외과	가맹(209개 기관)	164,223,260,893	201,139,427,651	36,916,166,758
	미가맹(223개 기관)	21,335,578,894	19,983,686,587	-1,351,892,307
	합계	185,558,839,787	221,123,114,238	35,564,274,451
피부과	가맹(109개 기관)	24,511,237,723	42,018,315,673	17,507,077,950
	미가맹(194개 기관)	7,861,401,969	6,758,613,017	-1,102,788,952
	합계	32,372,639,692	48,776,928,690	16,404,288,998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

- 2016년에 동 제도가 시행이 된 후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환급창구업자와 가맹 계약을 맺은 성형외과 및 피부과의 2015년, 2016년 진료수입을 미가맹 의료기관과 비교함
 - 가맹 의료기관의 경우 동 제도 시행 전인 2015년에 비해 2016년 진료수입이 상승함

- 가맹 성형외과의 경우 진료수입이 약 22% 증가하였으며, 가맹 피부과의 경우에는 71%가 증가함
 - 미가맹 성형외과 및 피부과의 경우 모두 진료수입이 감소함
- (2016년 조세지출) <표 VI-4>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른 외국인 미용성형 관련 조세지출 규모는 총 91억 7,100만원임
- 이를 의료용역 및 진료과별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표 VI-5>의 자료를 이용함
 - 단 이미 언급했듯이, 의료용역 및 진료과별 부가가치세 환급 자료는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환급 규모를 추정함(부가가치세 규모 대비 약 85%)
 - 따라서 성형외과의 경우(쌍꺼풀, 코성형, 유방수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부가가치세 환급 규모는 36억 4,900만원임
 - 피부과의 경우(색소모반, 주근깨, 흑색점, 기미,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문신술, 지방용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14억 7,600만원임
- (긍정적인 세수효과 추정) 동 제도 도입에 따른 증가된 세수는 외국인 환자 증가에 따른 추가적인 소득세수 및 과표 양성화에 따른 추가 소득세수이며, 이를 계산하기 위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실효세율 정보를 이용함
- 가맹 성형외과 및 피부과의 증가된 수입으로 인한 세수 증가분은 이들의 실제 실효세율 정보를 바탕으로 추정함
 - 성형외과 및 피부과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속할 가능성이 높고, 이들의 실효세율을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한 후 이를 적용하여 최종 세수를 추정함
 - 국세통계연보 자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현황에 피부과 및 성형외과의 사업장 당 평균 신고수입금액은 2억원에서 4억 5천만원 정도이므로, 실효세율 계산을 위해 종합소득 구간 3억원 구간을 기준으로 계산함
 - <표 VI-7>은 국세통계연보를 사용하여 종합소득금액 3억원 고소득 자영업자의 실효세율을 추정한 결과 약 24%이며, 연도별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음

<표 VI-7> 고소득자(3억원) 실효세율 추이

(단위: 백만원,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종합소득	결정세액	1,603,188	1,718,579	1,968,453	2,341,532	2,761,447
	종합소득금액	7,024,885	7,529,645	8,581,612	9,576,170	10,502,754
	실효세율	22.8	22.8	22.9	24.5	26.3

자료: 『국세통계연보』 2012~2016년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 (세수 계산 1) 세수 추정을 위해서 가맹 의료기관과 미가맹 의료기관 비교를 통한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분석함
 - 첫째, 비교 집단인 가맹 및 미가맹 의료기관의 경우 신고된 수입이 정확한 수입금액이라고 가정하며, 탈루된 소득은 없다고 가정함
 - 이 경우에 성형외과 및 피부과의 증가된 진료수입은 미가맹 의료기관과의 비교를 통해 <표 VI-8>과 같이 계산함
 - 계산 결과 동 제도에 따른 수입의 증가는 약 568억원으로 계산됨

<표 VI-8> 가맹-미가맹 의료기관 진료수입 이중차이

(단위: 원)

구분	2015년	2016년	차이	
종합소득	가맹 성형, 피부	188,734,498,616	243,157,743,324	54,423,244,708
	미가맹 성형, 피부	29,196,980,863	26,742,299,604	-2,454,681,259
	차이	159,537,517,753	216,415,443,720	56,877,925,967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 증가된 진료수입의 약 24%를 납부세액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568억원의 24%인 약 137억원(13,650,702,232원)이 증가된 진료수입에 따른 추가적인 세 수입으로 계산됨
- 비용 대비 편익을 계산하기 위해 조세지출 규모 51억 2,600만원과 추정된 세수 증가분 136억 5,100만원을 비교함
- 추정소득세를 조세지출금액으로 나누면 2.66이 산출되며, 이것은 세무당국이 포기한 부가가치세 1원에 대한 추가적인 소득세 기여율이라고 볼 수 있음

- (세수 계산 2) 세수 계산 1에서는 불법 브로커 및 현금 거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증가된 세수는 오직 외국인 환자 증가에 따른 추가적인 소득세수입
 - 하지만 외국인 환자 증가에 따른 소득세수 증가 외에 소득탈루 감소에 따른 추가적인 세수입을 고려해야 함
 - 동 제도가 소득탈루 감소에 영향을 주었다면 2016년 미가맹 의료기관의 진료 수입은 과소 보고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2015년에는 제도 시행 전이므로 가맹·미가맹 의료기관 모두 소득탈루율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2016년에 소득탈루율이 두 집단 간 차이가 난다고 가정
 - 자영업 가구의 소득탈루율을 추정된 최근 신영임·강민지(2014) 및 김태일·김도균(2016)의 자료를 토대로 소득탈루율을 추정함(<표 VI-9>)
 - 2016년에 상위 10%의 소득탈루율은 38%로 추정됨

<표 VI-9> 자영업자의 소득계층별 소득탈루율

(단위: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6
하위 10%	26.2	34.5	25.8	23.4	25.8	19.4	18.5	16.9	13.4	15.1	18.5
10~20%	22.6	20.5	19.1	18.1	20.1	18.9	17.5	13.6	19.0	15.9	19.5
20~30%	15.0	18.6	15.9	19.2	18.5	14.5	16.4	15.6	15.3	20.7	20.6
30~40%	19.2	21.4	19.6	17.6	20.2	18.0	17.9	17.9	16.7	16.7	20.4
40~50%	22.2	23.7	20.8	22.7	20.1	20.8	16.3	14.8	18.0	18.1	20.4
50~60%	18.1	24.3	18.6	19.6	24.7	25.2	19.6	20.8	17.4	17.7	21.8
60~70%	22.6	19.0	21.2	26.0	26.7	25.2	23.2	22.1	24.0	21.9	25.8
70~80%	29.8	27.0	24.9	28.2	30.7	29.3	27.3	23.3	21.7	25.3	26.6
80~90%	32.3	28.2	31.6	31.3	35.8	39.8	27.9	29.8	30.5	26.8	31.9
상위 10%	44.8	42.6	45.9	36.4	46.9	44.7	41.8	33.7	37.6	33.5	38.1

자료: 2003~2012년(신영임·강민지(2014)), 2016년(김태일·김도균(2016))

- 소득탈루율 정보를 바탕으로 미가맹 의료기관의 경우 신고된 금액이 과소 보고된 금액이라고 가정하면 <표 VI-8>의 계산은 달라짐
- <표 VI-10>은 미가맹 의료기관에 소득탈루율 38%를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진료수입 금액임
- 이를 바탕으로 동 제도의 효과를 추정하면 진료수입의 증가는 약 405억원임

<표 VI-10> 가맹-미가맹 의료기관 진료수입 이중차이

(단위: 원)

구분		2015년	2016년	차이
종합 소득	가맹 성형, 피부	188,734,498,616	243,157,743,324	54,423,244,708
	미가맹 성형, 피부	29,196,980,863	43,132,741,297	13,935,760,434
	차이	159,537,517,753	200,025,002,027	40,487,484,274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 세수 계산 1과 비슷한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실효세율 24%를 적용할 경우 예상되는 세수입은 약 97억원(9,716,996,225원)임
 - 추정소득세를 조세지출금액으로 나누면 1.89가 산출되며, 이것은 세무당국이 포기한 부가가치세 1원에 대한 추가적인 소득세 기여율이라고 볼 수 있음
- (자료 2 분석) 이러한 분석을 2017년 자료를 사용하여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함
- 세수 계산 1을 이용하여 분석하면 2017년에는 동 제도의 효과가 약 513억원으로 추정되고, 세수 계산 2를 이용하면 약 196억원으로 추정됨
 - 비슷한 방식으로 실효세율(약 24%)을 적용한 추가적인 세수입은 세수 계산 1의 경우 약 123억원(12,314,253,257원)으로 추정되고, 세수 계산 2의 경우 세수는 약 94억원(9,458,839,652원)으로 추정됨
 - 2017년 조세지출 규모는 약 65억 8,200만원으로 추정됨(부가가치세 약 77억원의 85%로 추정한 결과)
 - 세수 계산 1의 경우 부가가치세 1원에 대한 추가적인 세수입은 1.87원으로 추정되고, 세수 계산 2의 경우 1.43원으로 추정됨

<표 VI-11> 가맹-미가맹 의료기관 진료수입 이중차이

(단위: 원)

세수 계산 1		2015년	2017년	차이
종합 소득	가맹 성형, 피부	188,734,498,616	230,258,709,340	41,524,210,724
	미가맹 성형, 피부	29,196,980,863	19,411,803,014	-9,785,177,849
	차이	159,537,517,753	210,846,906,326	51,309,388,573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표 VI-12> 가맹-미가맹 의료기관 진료수입 이중차이

(단위: 원)

세수 계산 2		2015년	2017년	차이
종합 소득	가맹 성형, 피부	188,734,498,616	230,258,709,340	41,524,210,724
	미가맹 성형, 피부	29,196,980,863	31,309,359,700	2,112,378,837
	차이	159,537,517,753	198,949,349,640	39,411,831,887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 (자료 3 분석) 세 번째 자료는 2017년을 기준으로 환급창구사업자와 가맹을 맺은 의료기관 가운데 환급실적이 있는 의료기관과 환급실적이 없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현황 자료를 2014년부터 제시한 자료임
 - <표 VI-13>은 부가가치세 실적 유무에 따른 가맹 의료기관들의 진료수입 현황을 보여줌
 - 부가가치세 환급 유실적 의료기관의 진료수입이 부가가치세 환급 무실적 의료기관의 진료수입에 비해 약 3배 정도 많음
 - 또한 이러한 경향은 2014년에도 발견되는데, 해석하면 진료수입이 큰 의료기관일수록 외국인 환자를 더 많이 유치하여 동 제도가 시행된 이후 부가가치세 환급 실적이 더 많을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유실적 가맹 의료기관의 경우 무실적 가맹 의료기관에 비해 동 제도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기본 전제로 함
 - 유실적 의료기관 및 무실적 의료기관의 진료수입은 2016년까지 증가하다가 2017년에 감소하였으며, 2017년에 유실적 의료기관의 진료수입은 약 3천억원이 넘고, 무실적 의료기관의 진료수입은 약 1천억원 수준임

- 자료 3의 경우는 자료 1 및 자료 2와 차이가 있음
 - 자료 3은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창구사업자와 가맹을 맺은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
 - 따라서, 실증분석 과정에서 가맹 및 미가맹 의료기관의 본래적 차이(예를 들면, 외국인 환자 유치 기대 정도 등)에 따른 분석의 오류를 줄일 수 있음
 - 물론 부가가치세 환급 유실적 기관과 무실적 기관 사이에 본래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가맹 및 미가맹 의료기관의 차이와는 다른 관점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음
 - 결론적으로, 자료 3을 바탕으로 한 분석은 자료 1 및 자료 2의 분석과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분석이 될 수 있음

〈표 VI-13〉 가맹 의료기관 진료수입

(단위: 원)

환급실적유무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유실적(244개소)	106,874,111,857	301,018,181,887	372,599,190,543	308,462,208,345
무실적(69개소)	33,756,276,289	116,836,196,657	154,521,767,221	102,932,621,815
계(313개소)	140,630,388,146	417,854,378,544	527,120,957,764	411,394,830,160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 (세수 계산 1) 앞선 방법과 같은 분석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동일한 가정을 사용함
 - 부가가치세 환급 유실적 및 무실적 기관의 경우 소득탈루가 없는 경우를 먼저 고려함
 - 동 제도가 시행된 2016년 이전 자료가 2개년도 자료이고, 동 제도가 시행된 이후 자료가 2개년도 자료이므로, 앞선 분석과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이중차이를 계산하기 어려움
 - 이 경우 동 제도의 효과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이중차분 방정식을 활용하여 계산할 수 있으나, 통제변수로 사용할 추가적인 변수가 존재하지 않아 이 방법 역시 한계가 있음
 - 따라서 2014년과 2015년 평균과 2016년과 2017년 평균을 비교하는 방식을 사용함
 - 이때 실적 여부에 따른 가맹 의료기관의 진료수입은 <표 VI-14>와 같음

<표 VI-14> 가맹 의료기관 진료수입

(단위: 원)

환급실적유무	2014~2015년 평균	2016~2017년 평균	차이
유실적(244개소)	203,946,146,872	340,530,699,444	136,584,552,572
무실적(69개소)	75,296,236,473	128,727,194,518	53,430,958,045
차이	128,649,910,399	211,803,504,926	83,153,594,527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 동 제도 시행 이후 유실적 의료기관의 경우 무실적 의료기관과 비교하여 약 830억원의 진료수입 증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증가된 진료수입의 약 24%를 납부세액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830억원의 24%인 약 200억원(19,956,862,686원)이 증가된 진료수입에 따른 추가적인 세 수입으로 계산됨
- <표 VI-4>에 제시된 연도별 조세지출 내역을 참고하여, 2016년과 2017년의 평균 조세지출 규모를 계산하면, 약 92억원임
- 따라서, 세수 계산 1을 적용하여 비용 대비 편익을 계산해보면 2.17로서 이는 세무당국이 포기한 부가가치세 1원에 대한 추가적인 소득세 기여율은 2.17원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세수 계산 2) 앞선 방법과 마찬가지로 세수 계산 방법 2의 경우 소득탈루가 있는 것을 가정하여 계산해 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 경우를 적용하는 데 실익은 없음
 - 자료 3의 경우 모두 가맹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경우 보건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유치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0명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외국인 환자 미용성형시장은 매우 경쟁적인 시장으로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도 고의로 그 사실을 누락할 경우 경쟁 의료기관들이 보건당국에 고발하는 사례가 많아 실질적으로 소득을 탈루하기가 쉽지 않음
 - 따라서 동 제도의 시행 이전과 이후 가맹 의료기관이었던 자료 3의 경우 분석 기간 동안 소득탈루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3. 소결

- 자료 1, 자료 2, 자료 3을 사용하여 분석해본 결과, 자료와 추정에 사용된 계산 방법에 따라 비용 대비 효과의 크기가 조금씩 차이가 있음
 - <표 VI-15>는 각 자료와 방법론의 비용 대비 효과를 계산한 결과표임
 - 자료 1의 경우 조세지출 1원 대비 세수 효과는 소득탈루 효과가 없을 경우(세수 계산 1) 2.66원이며, 소득탈루 효과를 고려하였을 경우(세수 계산 2) 1.89원으로 나타남
 - 자료 2의 경우 조세지출 1원 대비 세수 효과는 소득탈루 효과가 없을 경우 1.87원, 소득탈루 효과를 고려하였을 경우 1.43원으로 계산됨
 - 자료 3의 경우에는 소득탈루 효과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만 계산하였으며, 조세지출 1원 대비 2.17원의 세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료의 한계로 인해 더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는 없으나, 세수 계산 1의 추정치를 효과의 최대치로, 세수 계산 2의 추정치를 효과의 최소치로 가정할 수 있음
 - 이 경우 동 제도의 효과는 조세지출 1원당 1.43원에서 2.66원 사이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표 VI-15> 제도의 세수효과 추정

(단위: 원)

구분	자료 1	자료 2	자료 3
세수 계산 1	2.66	1.87	2.17
세수 계산 2	1.89	1.43	N.A

자료: 저자 계산

Ⅶ. 효과성 분석 2



VII. 효과성 분석 2

1. 산업연관분석을 중심으로

가. 분석자료와 분석범위 및 분석방법

- (분석자료) 본 절에서는 한국은행의 2015년 381개 기초부문 투입산출표(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의료서비스 부가가치세 환급제도의 경제적 효과성을 분석함
 - 미용성형의료서비스 부문은 투입산출표의 381개 기초부문 가운데 ‘의료 및 보건(국공립, 비영리, 산업의 3개 부문 합산)’ 부문으로 설정함
 - 다만 의료 및 보건 부문은 의료서비스(미용성형 포함) 부문은 물론이고, 기타 보건부문까지도 포함
 -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미용성형의료서비스 부문의 생산함수는 여타 의료서비스 및 보건 분야와 동일하거나 또는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암묵적으로 가정
 - 산업연관분석에 기초가 되는 투입산출표는 기본적으로 선형함수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산출효과(생산·부가가치·고용유발효과 등)의 크기는 투입량에 선형관계를 가지면서 정비례하는 특성을 지니기에 유의하기 바람
 - 산업연관표상 ‘의료 및 보건’ 부문의 총산출 규모 중에서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의료서비스 시장(부문)의 비중 산출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의료서비스 관련 진료자 수 및 진료금액 통계치를 사용함
 - 부수적으로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의료서비스 부가가치세 환급규모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추계한 내부자료 수치를 이용함
- (분석방법) 투입산출 분석을 통한 각종 유발효과 분석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의료서비스 부가가치세 환급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
 -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량) 증가 효과는 수요분석을 통해 추정하여야 하지만, 자료여건상 수요분석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수요가격탄력성을 가정하여 분석

- 보수적 관점에서 미용성형의료서비스에 대한 외국인 관광객의 가격탄력성을 1%로 상정
 - 이는 부가가치세 환급으로 인한 가격인하 효과가 이론상 $9.1\%(=10/110)$ 이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한 수요량 증가효과가 9.1%에 이른다는 것을 시사함
 - 만약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크면, 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른 수요 증가율은 탄력성의 크기에 정비례하여 증가할 수 있음
 - 그런데 최근 수년간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의료서비스에 대한 진료비 및 부가가치세 환급규모를 보면 소득효과가 매우 큰데,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 급증현상의 요인을 소득효과 하나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우며 그 이면에는 가격탄력성도 상당히 클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
 - 최근 국내 미용성형의료서비스 시장에 진입하는 성형외과 의원 및 그와 일부 경쟁관계에 있는 피부과 등의 인접과목 의원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가격경쟁으로 인해 성형의료서비스의 가격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소득효과도 크지만 가격효과도 상당히 클 것으로 추정
 - 그러므로 아래에서 추정·논의하는 부가가치세 환급제도의 경제적 효과의 정량적 크기는 일종의 하한선(lower bound)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분석범위)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의료서비스 부가가치세 환급제도에 따른 경제적 효과(효과성)는 가격인하효과를 통한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의료서비스 수요(량)의 증가를 통해 국내 미용성형의료서비스 시장에서 산출(즉, 매출)이 증가하고 그에 수반되는 고용 및 부가가치 증가 등을 기대할 수 있음
- 미용성형의료서비스 부문에서 생산(산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여타 부문으로부터의(중간)투입(input)도 함께 증가해야 하기 때문에 이차적으로 여타 부문의 생산활동을 촉진함
 - 여타 부문의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부문으로부터의 중간투입이 증가함을 의미하므로 다시 모든 부문의 생산을 증가시키는 등 연쇄효과(chain effects)를 통해 추가적으로 모든 부문의 생산을 증가시키며, 연쇄효과가 무한 반복되면서 일정 수준에 수렴(convergence)하게 됨
 - 이런 현상은 일종의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로 볼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미용성형의료서비스 부문에 발생한 효과를 직접효과, 여타 부문에서 촉발된 효과를 간접효과로 지칭할 수 있음

- 본 절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의료서비스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3가지를 대상으로 분석함
- 2015년 시점 이후 시점(연도)을 대상으로 발간된 투입산출표 연장표 대신 2015년 귀속분 실측표를 사용하는 이유는, 연장표는 실측자료가 아닌 추정치를 토대로 확장하여 작성되는 추정표이기 때문에 실측표보다 추정오차가 더 큰 것이 일반적이므로 투입산출분석의 추정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연장표보다는 실측표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임
 - 실측표 대신 연장표를 사용하면 현재 시점에 조금 더 가까운 시점을 대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 반대로 실제 측정치가 아니라 일정한 가정에 기초하여 추측한 투입산출표를 기준으로 하는 만큼 추정오차가 크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연장표 대신 실측표를 기준으로 분석함
- 미용성형 부문은 의료산업의 일부인데, 381개 기초부문에 의하면 의료 및 보건산업(국공립·비영리·산업의 3개 부문 통합) 부문이 이에 해당함
 - 미용성형의료서비스 부문이 독립적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015년 기준 산업연관표상에서 미용성형의료서비스를 포함하는 가장 최소의 산업부문은 의료 및 서비스 부문임
 - 외국인 관광객이 미용성형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음에 있어 다양한 각급 의료시설을 이용하므로 국공립, 비영리 산업의 3개 부문을 통합한 의료 및 보건산업 부문을 최소단위로 하여 분석함
- (분석범위)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의료서비스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을 출국 시 환급해주면, 동 서비스에 대한 가격인하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동 서비스에 대한 수요량 증가를 통해 국내 거시경제의 주입(injection)이 증가하고 그 결과 국민소득(GDP, 부가가치, 또는 총생산[총산출])과 고용이 증가함
 - 본 절에서는 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른 생산, 부가가치(일종의 GDP) 및 고용(취업) 유발효과를 추정 분석함

- 산업연관분석 결과,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로 인해 파생되는 각종 유발효과로는 수요량 증가에 따라 생산(산출)이 증가하는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며, 생산유발효과에 비례하여 부가가치(GDP 등) 및 고용(취업) 증가효과가 발생함
 - 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들의 국내산업(미용성형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량, 즉 최종수요가 증가하면 증가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동 부문에서의 생산이 증가함
 - 최종수요의 증가는 민간소비지출이 증가하는 형태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음
 - 그런데 미용성형의료서비스의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동 부문에 투입되는 중간투입 요소도 함께 증가하여야 하므로 다른 산업의 생산을 유발함
 - 산업연관분석은 기본적으로 선형함수의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최종수요의 증가분에 비례하여 산업생산이 증가하고, 생산의 증가는 부가가치와 고용 증가를 수반함
 - 부가가치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도 생산유발효과에 비례하여 증가함

□ 생산유발효과에는 전방연쇄효과와 후방연쇄효과 두 종류가 있음

- 의료·보건 산업과 관련하여 연쇄효과를 살펴보면,
 - 전자는 모든 부문의 최종수요가 각각 모두 1단위씩 증가할 때 의료·보건 부문에서 생산이 증가하여 자기 부문을 포함하여 여타 부문의 중간투입으로 투입되기 위한 필요투입분을 나타내며,
 - 후자는 의료·보건산업의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하였을 때, 의료·보건 부문의 최종수요 1단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각 부문에서 증가된 필요생산분을 나타냄
- 특정 부문에 한정하여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또는 제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경제적 파급효과(유발효과)를 추정·분석할 때에는 흔히 후방연쇄효과를 많이 분석

□ (분석방법)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행렬)를 가공하여 각 부문별로 총산출(X) 대비 중간투입분의 비율을 측정하여 투입계수행렬(A)을 작성하고 중간투입(AX)과 최종수요(Y)의 합이 총산출이 된다는 항등식을 가공하여 생산유발계수행렬을 도출함

○ $AX + Y = X$

- $X = (X_j)$: 총산출 벡터, $j = 1, \dots, n$

X_{ij} : i 부문에서 j 부문으로 투입된 중간투입액, $i, j = 1, \dots, n$

$A = (a_{ij})$: 투입계수행렬, 단, $a_{ij} = \frac{X_{ij}}{X_j}$

$Y = (Y_j)$: 최종수요 벡터

○ 위의 식을 총산출 X 에 대해 풀면 $X = (I - A)^{-1}Y$ 을 도출(단, I 는 항등행렬)

- 위 식의 우변에서 $(I - A)^{-1}$ 을 생산유발계수행렬이라고 함

- 생산유발행렬의 앞쪽에 각 부문별 부가가치율과 총산출 대비 고용인원수를 대각원소로 하는 행렬을 곱해주면 각각 부가가치유발계수행렬과 고용유발계수행렬을 도출할 수 있음

- 부가가치유발계수행렬: $A^v(I - A)^{-1}$

단, $A^v = (v_{ij})$, $v_{ij} = \frac{v_i}{X_j}$

v_i : i 부문의 부가가치(피용자보수, 영업잉여, 생산물세, 고정자본소모 등)

- 고용유발계수행렬: $L^v(I - A)^{-1}$

단, $L^v = (l_{ij})$, $l_{ij} = \frac{L_i}{X_j}$

L_i : i 부문의 고용인원 수(명)

- 각 유발계수행렬은 각 부문의 최종수요 1단위(우리나라 산업연관표의 경우 100만원 기준)당 유발액 또는 유발인원수를 나타냄

- (총)생산유발효과, (총)부가가치유발효과, (총)고용유발효과는 각각의 유발계수행렬에 최종수요(Y) 또는 최종수요의 변화액(ΔY)을 곱해주어 산출함

□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의료서비스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규모)(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내부자료에 의하면)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의료서비스 부가가치세의 환급규모(추정치 기준)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연간 환급규모는 대략 200억원대 초반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표 VII-1> 참조)

○ 부가가치세의 세율이 10%이므로 세포함 지출액의 약 9.1%(=10/110)가 부가가치세액

- 최근의 증가추세를 감안하면 2020년경의 부가가치세 환급규모는 약 25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아래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연간 환급액 규모가 250억원이라는 전제(가정)하에서 분석

<표 VII-1>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금액 추정치

(단위: 건, 백만원)

	진료건수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2016	38,761	100,985	9,171
2017	56,094	133,023	12,149
2018	82,712	174,799	16,084
2019	148,611	247,225	22,750

주: 개별 15개 의료용역별 정보를 합계하여 추산한 추계치로 다소의 오차 존재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내부자료)

- (산업분류) 2015년 산업연관표(투입산출표)의 기초부문 산업분류에 의하면 모두 381개 기초부문으로 분류되는데, 분석의 편의상 의료·보건 부문을 독립부문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부문은 15개 부문으로 통합하여 16개 부문을 대상으로 분석
 - 단, 미용성형의료서비스 부문은 의료·보건 부문의 부분집합으로서 본 절에서는 전자의 생산함수는 후자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상정함
 - 그러므로 미용성형의료서비스의 각종 유발계수는 의료·보건 부문의 유발계수와 동일함
- (산업별 고용인원 통계) 산업연관표에는 산업별 고용현황에 대한 통계자료가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환급제도의 고용유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외생적으로 산업부문별 고용인원에 기초정보가 필요
 -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시스템에서 각 부문별 고용현황 통계자료를 다운로드하고, 위에서 재분류한 16개 부문에 대한 분류에 맞춰 산업부문별 고용인원 수를 <표 VII-2>와 같이 재구성하여 분석에 사용

<표 VII-2> 16개 산업분류 및 산업별 피고용자 수(2015년 기준)

(단위: 명)

부문 일련번호	부문	피고용자 수
1	농림수산업	38,580
2	광산품	15,790
3	음식료품(담배 포함)	334,625
4	섬유 및 가죽제품	331,311
5	목재 및 종이인쇄	194,179
6	석탄·석유·화학제품	499,086
7	비금속광물·1차금속제품	279,258
8	기계장비 등 기타 제조업	2,447,452
9	전력·가스·증기·수도·하수·건설	1,479,711
10	도소매·운송·음식·숙박업	6,347,692
11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563,197
12	금융·보험·부동산·임대	1,215,760
13	전문과학기술·사업지원서비스	2,116,925
14	공공행정·국방·사회보험·교육서비스	2,254,900
15	기타(기타 서비스업)	1,899,092
16	의료 및 보건(국공립·비영리·산업)	871,582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검색(2020년 4월 25일 검색 및 다운로드) 후 16개 산업분류에 맞춰 부문별 고용인원 수를 재구성함

나. 생산·부가가치·고용유발계수

- <표 VII-3>은 16개 산업부문의 생산유발계수 추정결과를 보여줌(2015년 기준)
 - 최종수요가 증가하면 해당 부문의 최종수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동 부문의 생산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최종수요 생산을 위해 필요한 각 부문의 중간투입 수요도 증가함
 - 따라서 부문별 생산유발계수는 각 부문의 최종수요가 1단위(100만원) 증가하였을 때 이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동 부문에서 생산이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 부문의 제품생산에 위해 필요한 여타 부문으로부터 중간투입(동 부문에의 자가중간투입분 포함)이 증가한 것을 모두 합산한 것을 100만원 단위로 표시한 것
 - <표 VII-3>의 세 번째 열(column)은 각 부문의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하기 위해 모든 부문에서 유발되는 생산액(100만원 단위) 증가규모의 합산금액을 나타냄

- <표 VII-3>의 네 번째 열(column)은 의료·보건 부문에서 최종수요가 1단위(100만원) 증가하였을 때 각 부문별로 유발되는 생산(산출)의 증가액을(100만원 단위를 기준으로) 나타낸 것임
- <표 VII-3>의 다섯 번째 열(column)은 각 부문의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할 때 동일 부문 내에서 유발되는 생산유발액(산출액)을 나타냄

□ <표 VII-3>의 생산유발계수는 단위당 후방연쇄효과(backward chain effect)를 나타냄

<표 VII-3> 산업부문별 생산유발계수

(단위: 백만원/부문별 최종수요 백만원)

일련 번호	부문	부문별 후방연쇄효과 (총생산유발계수)	의료·보건 부문의의 타부문 생산유발계수	부문별 자기 부문 생산유발계수
1	농림수산업	1.499877	0.016464	0.923364
2	광산품	0.066952	0.001870	0.037320
3	음식료품(담배 포함)	1.973586	0.019053	1.054480
4	섬유 및 가죽제품	1.835211	0.007414	0.962227
5	목재 및 종이인쇄	1.898059	0.011565	1.172972
6	석탄·석유·화학제품	1.515958	0.231122	1.104103
7	비금속광물·1차금속제품	1.773729	0.027002	1.177468
8	기계장비 등 기타 제조업	1.849990	0.079440	1.214166
9	전력·가스·증기·수도·하수·건설	1.868268	0.048429	1.077734
10	도소매·운송·음식·숙박업	1.779397	0.153210	1.129639
11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1.718578	0.015124	1.121299
12	금융·보험·부동산·임대	1.480017	0.072010	1.160078
13	전문과학기술·사업지원서비스	1.505296	0.047210	0.979085
14	공공행정·국방·사회보험·교육서비스	1.403154	0.000929	0.988715
15	기타(기타 서비스업)	1.805265	0.011089	0.982611
16	의료 및 보건(국공립·비영리·산업)	1.741508	0.999578	0.999578

- 주: 1. 2015년 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산출한 저자 추정치
 2. 첫번째 열은 각 부문의 최종수요가 1단위(100만원) 증가하였을 때 새로운 균형에서 16개 모든 영역에서 발생한 생산의 증가분의 합을 나타냄
 3. 두번째 열은 의료보건 부문의 최종수요가 1단위(100만원) 증가하였을 때 새로운 균형에서 각 부문별로 증가한 생산액을 나타냄
 4. 세번째 열은 각 부문별로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하였을 때 새로운 균형에서 자기 부문에서 증가한 생산액을 나타냄

- (총)생산유발계수(<표 VII-3>의 세 번째 열)는 16개 부문 중 음식료품(담배 포함, 1.97) 부문의 계수가 가장 크고, 광산품 부문이 0.07로 가장 작음
- (의료·보건 부문과 생산함수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 미용성형의료서비스 부문의 생산유발계수는 1.74인데 이는 동 부문의 최종수요가 1단위(100만원) 증가하면 우리나라 경제 전체적으로 총생산(총산출)이 모두 1.74단위(174만원) 증가
 - 이 중 1단위(100만원)는 동 부문의 최종수요로 충당되고, 나머지 0.74단위는 최종수요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중간투입으로 소요되는 것을 의미
 - 16개 부문 중 의료·보건(미용성형의료서비스) 부문의 생산유발계수의 크기 순위는 9번째로서 전체의 중간 정도 수준
- 의료·보건(미용성형의료서비스) 부문의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할 때 증가된 최종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생산유발효과를 부문별로 구분해보면(<표 VII-3>의 네 번째 열) 대부분의 생산유발효과는 동일 부문(의료·보건 부문)에서의 생산 증가(총 1.74단위 중 약 0.9996단위로서 약 57.4%)가 대부분을 차지
 - 그 밖에 석탄·석유·화학제품(0.23단위)과 도소매·운송·음식·숙박업(0.15단위) 부문에서 비교적 크게 생산이 증가(유발)되는 것으로 추정
- <표 VII-4>는 산업부문별 부가가치유발계수 및 고용유발계수 추정결과를 보여줌
 - 세 번째 열은 각 부문의 최종수요가 1단위(100만원) 증가하였을 때 이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필요한 각 부문의 산출(생산) 증가액 중에서 중간투입으로 투입된 부분을 제외한 부가가치(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기타생산세(단, 보조금 공제)의 합) 금액을 나타냄(단위는 100만원 기준)
 - 네 번째 열은 의료·보건 부문의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하기 위해 필요한 산출 증가를 통해 창출되는 각 부문별 부가가치 단위를 나타냄
 - 네 번째 열의 16개 부문 부가가치계수를 모두 합산하면 세 번째 열의 16번째 부문의 값과 일치함
 - 다섯 번째 열은 부문별 고용유발계수로서, 세 번째 열의 부문별 부가가치유발계수와 마찬가지로 각 부문별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할 때 생산이 증가하면서 전 산업에서 발생하는 고용(취업) 증가 인원수를 모두 합산한 값을 나타냄(단위는 명)

- 여섯 번째 열은 다섯 번째 열의 부문별 고용유발계수값을 전 산업 (가중)평균값으로 나눈 상대비를 나타냄
 - 그 값이 1보다 크면(작으면) 동 부문의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할 때 전 산업에 걸쳐 증가하는 고용증대효과가 다른 부문의 고용증대효과 평균치보다 큰(작은) 것을 의미
 - 의료·보건 부문의 상대비가 약 1.15이므로, 의료·보건 부문의 고용유발효과가 전 산업 평균치보다 크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음

- 미용성형의료서비스(의료·보건) 부문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780911로 16개 부문 중에서 5번째로 큼
 - 전반적으로 도소매·운송·음식·숙박업, 금융·정보통신, 교육, 의료·보건 등 서비스 부문의 부가가치유발계수가 큰 반면,
 - 제조업 등은 낮은 것이 특징

- 미용성형의료서비스(의료·보건) 부문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할 때 전 산업에 걸쳐 약 0.78단위 부가가치가 증가하는데, 그 중 동일 부문 내에서 유발되는 부분은 약 0.50단위로 전체의 약 2/3 정도를 차지
 - 의료·보건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15개 부문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는 도소매·운송·음식·숙박, 석탄·석유·화학제품, 금융·보험·부동산·임대, 기계장비 등 기타 제조업, 전력·가스·증기·수도·하수·건설 등의 5개 부문에서 유발되는 부가가치가 상당히 큰 편이고 나머지 부문은 미미한 편
 - 의료·보건 부문의 생산(산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위의 5개 부문으로부터의 중간투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이들 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음을 시사
 - 따라서 의료·보건 부문이 성장할수록 이들 5개 부문에서 유발되는 생산 및 부가가치 증가효과가 두드러질 것임을 유추할 수 있음

- 고용유발계수는 어떤 분야의 최종수요가 1단위(100만원) 증가할 때 전 산업에 걸쳐 고용이 증가하는 인원수를 합계한 것인데, 16개 부문 중 기타(기타 서비스업) 부문(0.023753명), 도소매·운송·음식·숙박(0.019880명), 섬유 및 가죽제품(0.015749

명) 부문에 이어 미용성형의료서비스(의료·보건, 0.014673명) 부문이 4번째로 높아, 미용성형의료서비스 부문의 고용유발(촉진)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VII-4> 산업부문별 부가가치 및 고용유발계수

(단위: 백만원, 명, 평균=1)

일련 번호	부문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부문별 유발계수	의료·보건 부문의 타부문 유발계수	부문별 유발계수 총계	전산업 평균 대비 상대비
단위		백만원	백만원	명/백만원	평균 = 1
1	농림수산업	0.690570	0.008917	0.005987	0.470455
2	광산품	0.031854	0.000984	0.010579	0.831309
3	음식료품(담배 포함)	0.590620	0.003303	0.011760	0.924131
4	섬유 및 가죽제품	0.483840	0.001314	0.015749	1.237588
5	목재 및 종이인쇄	0.634835	0.003459	0.014267	1.121120
6	석탄·석유·화학제품	0.442387	0.056778	0.010101	0.793771
7	비금속광물·1차금속제품	0.546523	0.007073	0.009614	0.755483
8	기계장비 등 기타 제조업	0.582077	0.022620	0.011347	0.891683
9	전력·가스·증기·수도·하수·건설	0.701592	0.018469	0.011522	0.905464
10	도소매·운송·음식·숙박업	0.758500	0.067258	0.019880	1.562187
11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0.845111	0.007958	0.010682	0.839388
12	금융·보험·부동산·임대	0.904581	0.047588	0.007134	0.560570
13	전문과학기술·사업지원서비스	0.761105	0.026387	0.013818	1.085859
14	공공행정·국방·사회보험·교육서비스	0.903267	0.000682	0.012743	1.001362
15	기타(기타 서비스업)	0.787001	0.005234	0.023753	1.866576
16	의료 및 보건(국공립·비영리·산업)	0.780911	0.502886	0.014673	1.153056
	계		0.780911		

주: 2015년 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산출한 저자 추정치

- <표 VII-5>는 산업부문별 생산유발효과를 나타내는 영향력계수(후방연쇄효과)와 감응도계수(전방연쇄효과) 추정결과를 보여줌
- 두 계수 모두 전 산업의 계수 평균값 대비 상대비를 나타냄
 - 영향력계수는 어떤 산업의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하였을 때 동 산업의 최종수요 충족을 위해 모든 산업에서 증가된 생산물의 가치를 평균치 대비 상대비로

표시한 것으로서, 동 부문의 최종수요 증가가 다른 부문(동 부문 포함)의 생산을 촉발(유발)한 효과의 (상대적)크기를 나타냄

- 어떤 부문의 영향력계수가 크다는 것은, 동 부문의 생산을 증가시키고자 할 때 다른 부문(자기 부문 포함)으로부터 동 부문으로 투입되는 중간투입 수요를 많이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 결과적으로 다른 부문(자기 부문 포함)의 생산을 촉진·유발하는 단위당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

○ 감응도계수는 전방연쇄효과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모든 부문의 최종수요가 1단위씩 증가하였을 때 다른 부문(동일 부문 포함)으로 투입되기 위한 필요한 추가필요 생산액을 각 부문별로 나타낸 것임

- 어떤 부문의 감응도계수가 크다는 것은, 다른 부문(자기 부문 포함)에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요소로서 투입되는 단위당 생산액의 크기가 크다는 것을 의미

○ 요약하면, 감응도계수(전방연쇄효과)가 크다는 것은 다른 부문(자기 부문 포함)의 생산(또는 수요)이 증가할수록 자기 부문의 생산증가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영향력계수(후방연쇄효과)가 크다는 것은 동 부문의 생산(또는 수요)이 증가할수록 다른 부문(자기 부문 포함)의 생산을 촉진하는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

□ 주로 제조업이나 음식료품 등의 부문은 후방연쇄효과(영향력계수)가 크고, 일반적으로 서비스부문 등 최종소비자와의 거리가 가까운 부문의 경우에는 후방연쇄효과가 작은 편

□ 석탄·석유 부문이나 기계장비 등 기타제조업 등은 타 부문의 생산과정에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재 등으로 투입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전방연쇄효과가 높은 반면 서비스업 부문은 대체로 전방연쇄효과가 작은 것이 두드러진 특징

□ 다만 예외적으로 도소매·운송·음식·숙박업의 경우에는 전방연쇄효과와 후방연쇄효과가 모두 큰 것이 특징

- <표 VII-5>에서 보듯이 의료·보건 부문(미용성형의료서비스 포함)의 경우 영향력 계수의 크기는 전체 16개 부문 중 9번째이고, 감응도계수는 14번째(작은 순서로는 3번째)로서, 영향력계수는 중간 수준, 감응도계수는 낮은 수준
 - 다른 산업부문과 비교해볼 때, 의료·보건 부문에서 생산물(output)을 생산하기 위해 다른 부문으로부터 평균적 수준의 투입이 필요한 반면, 다른 부문의 생산을 위해 동 부문으로부터 다른 부문에 (중간재 등으로)투입되는 투입액은 크지 않다는 것을 시사
 - 이는 의료·보건 부문이 전체 국가경제의 생산공정 중 최종단계에 가까운 형태의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시사
 - 특히 미용성형의료서비스 부문은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전방연쇄효과는 미미하고, 후방연쇄효과를 통해 여타 부문의 생산을 유발·촉진하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큰 편이라고 할 수 있음

<표 VII-5> 산업부문별 연쇄효과 추정결과(영향력계수·감응도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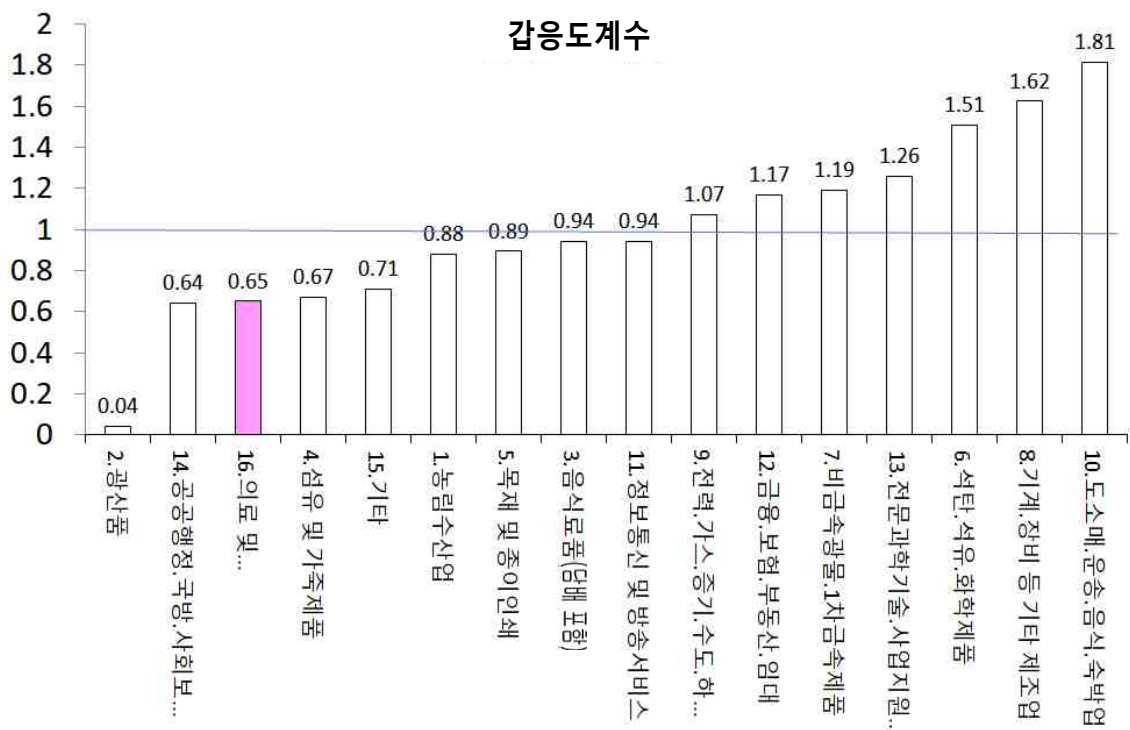
일련번호	산업부문	영향력계수	감응도계수
1	농림수산업	0.933236	0.881835
2	광산품	0.041658	0.041294
3	음식료품(담배 포함)	1.227982	0.939387
4	섬유 및 가죽제품	1.141884	0.671571
5	목재 및 종이인쇄	1.180989	0.893647
6	석탄·석유·화학제품	0.943242	1.508425
7	비금속광물·1차금속제품	1.103629	1.189449
8	기계장비 등 기타 제조업	1.151080	1.624247
9	전력·가스·증기·수도·하수·건설	1.162453	1.073021
10	도소매·운송·음식·숙박업	1.107156	1.813994
11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1.069314	0.940006
12	금융·보험·부동산·임대	0.920879	1.169554
13	전문과학기술·사업지원서비스	0.936608	1.256464
14	공공행정·국방·사회보험·교육서비스	0.873055	0.639809
15	기타(기타 서비스업)	1.123251	0.707542
16	의료 및 보건(국공립·비영리·산업)	1.083581	0.649753

- 주: 1. 2015년 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산출한 저자 추정치
 2.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는 생산유발효과를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로, 부문별 생산유발계수를 전 산업 평균치로 나눈 값임. 따라서 부문별 동 계수의 값이 1보다 크면(작으면) 전 산업 평균보다 해당 부문의 생산유발효과가 더 큰(작은) 것을 의미함.
 3.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가 각각 후방연쇄효과와 전방연쇄효과를 나타냄.

[그림 VII-1] 16개 부문별 영향력계수 추정치(2015년 투입산출분석 결과)



[그림 VII-2] 16개 부문별 감응도계수 추정치(2015년 투입산출분석 결과)



다. 생산·부가가치·고용유발효과

- <표 VII-6>은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의료서비스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줌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생산·부가가치·고용(취업) 등 세 가지 관점에서의 유발효과를 고찰·추정한 결과를 보여줌
 - 앞서 설명하였듯이 각종 경제적 효과는 연간 부가가치세 환급액 규모 250억원, 그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가격탄력성이 1이라는 전제에서 파급효과를 추정하였음
 - 국내 미용성형의료서비스에 대한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가격탄력성을 1로 가정한 것은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른 수요 증가율이 (최대) 9.1% (=10/110)에 이른다는 것을 전제로 함
 - 다만 미용성형의료서비스의 특성상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상당히 큰 사치재(luxury goods)의 하나로 분류되고,
 - 또한 일반적으로 수요소득탄력성이 클수록 가격효과 중 대체효과보다 소득효과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므로 수요가격탄력성이 클 가능성도 높다는 점에서 볼 때 외국인 관광객들의 국내 미용성형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는 이보다 더 커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추측됨

-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의료서비스 부가가치세 환급(250억원/년)을 통해 국내에서 증가하는 총생산(산출) 증가규모는 연간 약 435억원에 이르고, 그에 따라 창출되는 국내부가가치는 약 195억원(외국인 관광객의 수요증가분 250억원 중 약 50여 억원은 수입 등 유발을 통해 누출)이 증가하고, 고용은 약 370명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
 - 역으로 환급제도를 폐지하면 위의 수치만큼 생산, 부가가치, 고용이 감소할 것임을 시사
 - 만약 환급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량 증가가 가격탄력성을 1로 상정한 경우보다 더 탄력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추가 증가율에 비례하여 생산·부가가치·고용이 추가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의료서비스 부가가치세 환급(250억원/년)을 통해 창출되는 총산출(435.4억원) 중 대부분은 자기 부문(의료·보건 부문)에서 유발(249.9억원, 점유비 57.4%)
 - 여타 부문 중에서는 석유·석탄·화학제품(57.8억원, 13.3%)과 도소매·운송·음식·숙박업(38.3억원, 8.8%), 기타 제조업(19.9억원, 4.6%)에서 주로 생산이 증가하고 나머지 부분은 대체로 생산증가효과가 작은 편
 - 특히 화학제품이나 기타 제조업 등은 의료·보건 부문에 대한 중간재 투입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생산유발효과도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

-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의료서비스 부가가치세 환급(250억원/년)을 통해 창출되는 부가가치(195.2억원) 중 대부분은 자기 부문(의료·보건 부문)에서 유발(125.7억원, 점유비 64.4%)
 - 여타 부문 가운데에서는 도소매·운송·음식·숙박업이 16.8억원으로 전체의 약 8.6%를 차지하고, 석탄·석유·화학제품(14.2억원, 7.3%), 금융·보험·부동산·임대(11.9억원, 6.1%)가 그 다음 수준
 - 여타 부문 가운데 총생산은 석탄·석유·화학제품 부문이 도소매·운송·음식·숙박업 부문보다 유발효과가 가장 크지만, 부가가치의 경우에는 반대로 후자가 전자보다 효과가 더 큼
 - 이는 서비스 부문의 특성상 후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더 크기 때문

-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의료서비스 부가가치세 환급(250억원/년)을 통해 창출되는 고용 증대효과(366.8명) 중 대부분은 자기 부문(의료·보건 부문)에서 유발(223.5명, 점유비 60.9%)
 - 그다음으로는 도소매·운송·음식·숙박업이 64.9명으로 전체의 17.7%를 차지하고, 전문과학기술·사업지원서비스 부문이 16.0명(4.4%), 석탄·석유·화학제품(13.1명, 3.6%)의 순서로 고용유발효과가 크고 나머지 부문은 효과가 미미한 편
 - 특히 고용(취업)창출효과의 경우에는 서비스업종이 제조업 등에 비해 훨씬 더 큰 것이 두드러진 특징

- 위에서 보듯이 미용성형의료서비스(의료·보건 부문)에서 촉발된 최종수요의 증가가 자기 부문은 물론이고 여타 부문의 생산과 부가가치, 고용 창출에 기여하지만, 항목별 기여도는 부문별로 큰 차이를 보임
 - 이는 생산함수상의 투입·산출비율, 산출액(또는 매출액) 대비 부가가치율, 노동집약도 등이 부문별로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
-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의료서비스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통해 부가가치와 고용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부문은 자기 부문이지만, 그 외에도 도소매·운송·음식·숙박업 등에서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효과가 상당히 큰 편인 것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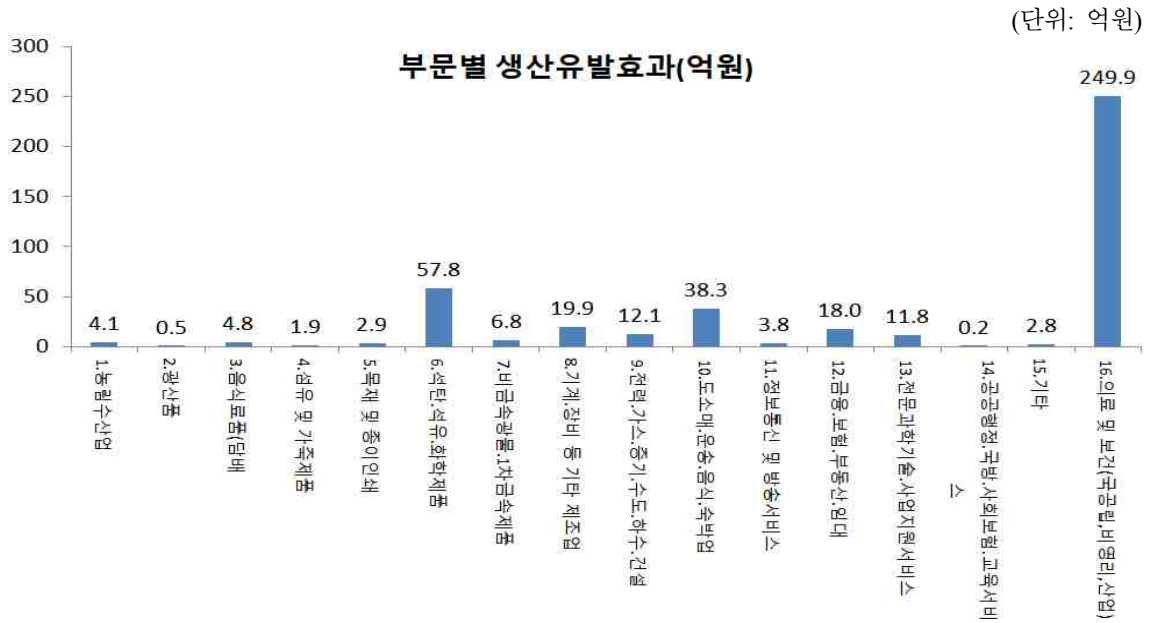
<표 VII-6>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의료서비스 부가가치세 환급제도의 경제적 파급 유발효과(연간 환급액 250억원 기준)

(단위: 백만원,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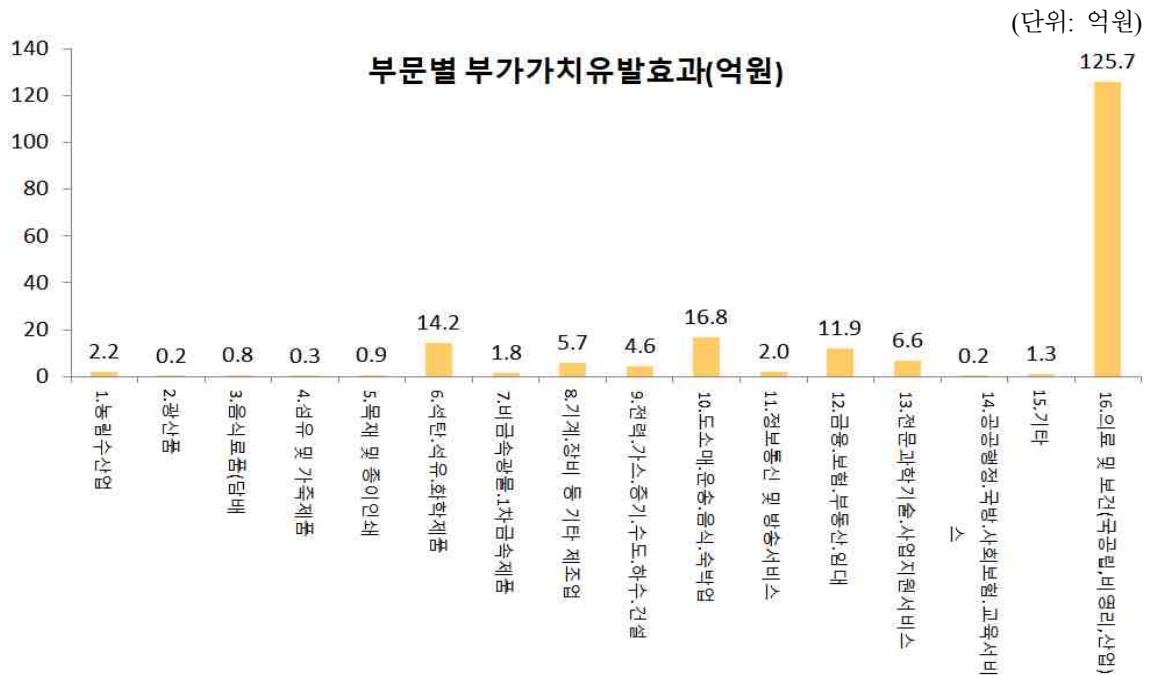
일련번호	부문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1	농림수산업	411.6	222.9	0.4
2	광산업	46.7	24.6	7.1
3	음식료품(담배 포함)	476.3	82.6	2.4
4	섬유 및 가죽제품	185.3	32.9	1.5
5	목재 및 종이인쇄	289.1	86.5	2.2
6	석탄·석유·화학제품	5,778.0	1,419.4	13.1
7	비금속광물·1차금속제품	675.0	176.8	1.6
8	기계장비 등 기타 제조업	1,986.0	565.5	10.0
9	전력·가스·증기·수도·하수·건설	1,210.7	461.7	7.0
10	도소매·운송·음식·숙박업	3,830.3	1,681.5	64.9
11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378.1	198.9	2.4
12	금융·보험·부동산·임대	1,800.2	1,189.7	8.1
13	전문과학기술·사업지원서비스	1,180.2	659.7	16.0
14	공공행정·국방·사회보험·교육서비스	23.2	17.0	0.3
15	기타(기타 서비스업)	277.2	130.8	6.2
16	의료 및 보건(국공립·비영리·산업)	24,989.5	12,572.2	223.5
	계	43,537.7	19,522.8	366.8

주: 2015년 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산출한 저자 추정치

[그림 VII-3]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의료서비스 부가가치세 환급제도의 부문별 생산유발효과(2015년 투입산출분석 결과)



[그림 VII-4]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의료서비스 부가가치세 환급제도의 부문별 부가가치유발효과(2015년 투입산출분석 결과)



[그림 VII-5]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의료서비스 부가가치세 환급제도의 부문별 고용유발효과(2015년 투입산출분석 결과)



2. 소결

- <표 VII-1>~<표 VII-6>에서는 2015년 산업연관표 실측표를 기준으로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의료서비스 부가가치세 환급제도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생산, 부가가치, 고용의 세 가지 측면에서 유발계수 및 유발효과를 추정·분석하였음
 - 다만 산업분류상 미용성형의료서비스 부문을 분리하여 동 부문의 효과를 직접 추정하지는 못하였으며,
 - 전체 381개 기초부문 가운데 가장 작은 단위에 해당하는 의료·보건 부문을 기준으로 연간 기준의 최종수요(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연간 250억원 증가하였을 때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함
 - 즉, 미용성형의료서비스의 생산함수가 의료·보건 부문 전체의 평균적인 수준의 생산함수와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파급효과를 분석함
 - 그런데 의료·보건 부문 내에서도 의료 부문과 보건 부문 사이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 부문 내에서도 진료과, 진료형태 등에 따라 생산함수 형태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 상기의 분석결과에는 일정한 정도 오차(error)를 내포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

- 일례로 상기 분석에서 미용성형의료서비스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할 때, 의료·보건 부문에서 유발되는 생산유발계수가 1단위보다 작게 추정(<표 VII-3> 중 의료·보건 부문의 생산유발계수 0.99578)된 것은 결과적으로 해외로부터의 수입 등 누출요인에 의해 일부 최종수요가 충족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시사
 - 그런데 미용성형의료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보면 증가된 최종수요 중 일부 가 상 수입 등의 요인에 따라 누출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의 자기 부문 생산유발효과는 1을 조금 상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산업연관분석 시에 의료·보건 부문 중에서 미용성형의료서비스 외의 작은 부문에서 누출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부문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종의 교란요인(noises)으로 작용함에 따라 약간의 오차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의료서비스 부가가치세 환급제도의 경우 매년 환급세수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에서 미용성형의료서비스를 받는 외국인 관광객의 수(더 정확히는 진료비 총액)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
 - 이런 현상은 주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소득 증가에 따른 소득효과와, 국내 미용성형시장의 경쟁 심화로 인한 의료서비스 단가의 하락에 의한 가격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됨
 - 한편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해 사실상의 체감가격 인하 효과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최소한 가격효과(부가가치세 환급 시 최대 9.1%: 세포함 진료비 총액 대비 부가가치세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환급제도로 인한 수요량 증가에 따른 것으로 추정됨

-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의료서비스 부가가치세 환급제도의 경우 단순히 미용성형 의료서비스만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동 서비스를 누리기 위해 국내를 방문하여 숙박 및 관광 등과 같은 부수적인 국내수요 창출에도 기여하는 만큼 특히 도소매·운송·음식·숙박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조금 더 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를테면 <표 VII-6>의 부가가치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 등은 전체 의료·보건 부문에서의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파급효과를 추정함

것인데, 이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전체 또는 평균적인 관점에서의 파급효과를 산출하여 보여준 것임

- 미용성형의료서비스에 대한 외국인 소비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거소를 두지 않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내국인 소비자에 비해 관광이나 숙박·음식 등에 대한 수요가 더 클 개연성이 높음
- 따라서 <표 VII-6>에서 제시된 것보다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의료서비스 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른 도소매·운송·음식·숙박업 부문에서의 부가가치 및 고용유발효과는 제시된 것보다 조금 더 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VIII. 결론



VIII. 결론

- 본 보고서는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미용성형 의료용역서비스 이용 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효과성과 타당성을 분석함
 - 제도의 1차적인 목적인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광 수입의 증가 효과를 검토하였으며,
 - 제도의 2차적인 목적인 불법 브로커 근절을 통한 과표 양성화 세수 효과를 추정함
 - 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이론적인 검토, 설문조사 검토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살펴봄으로써,
 -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처음으로 구체적인 평가를 시도함

- 본 보고서는 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과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함
 - 기초통계자료만을 통한 분석은 제도의 효과를 정확히 식별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으므로,
 - 본 보고서는 사건 분석, 이중차분모형 적용을 통한 분석,
 - 이론적인 분석, 설문조사 분석 등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함

- 분석 결과 효과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혼재되어 있으나, 전반적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 이론적으로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줌으로써 의료관광 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나,
 - 소비자 과세주의 원칙과 관련한 논란과 내·외국인 과세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음
 - 또한 실증분석 결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 증가나 의료 수입의 증가가 동 제도의 인과적 영향 때문인지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움
 - 설문조사 결과, 제도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어, 제도의 1차적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명확히 결론내릴 수 없음

- 다만, 제도가 불법 브로커 근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제도가 전반적으로 비용 대비 편익이 큰 것으로 추정되어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됨
 - 자료의 한계상 강한 가정을 사용하긴 했지만, 산업연관분석 결과 동 제도가 유발하는 산업연계 효과도 큰 것으로 파악되어 동 제도의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추후 동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안함
- 첫째, 실증적 분석 결과 효과성에 대한 일관적인 결과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추후 일몰을 연장할 때는 반드시 그 효과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은 물론, 일몰 연장전에도 효과를 정기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둘째, 의료기관의 설문조사 결과, 제도를 미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다는 점은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거나, 제도를 이용하지 않으려는 또 다른 인센티브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의미임
 - 따라서 우선적으로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으며,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정기적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함
 - 만약 추후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뚜렷한 효과가 여전히 발견되지 않고, 제도 이용이 미진할 경우, 제도는 장기적으로 일몰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불법 브로커 근절을 통한 과표 양성화와 관련하여 별도의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찾아 적용해 보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참고문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2~2016.
- 김순구·정연일,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제 효과분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7.
- 김태일·김도균, 「자영업자와 조세 부과의 형평성」, 『정부학연구』, 22(1), 2016, pp. 167~188.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외국인 관광객 관광호텔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 추진」, 2018. 2. 7.
- 박상곤, 『호텔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제도의 효과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
- 보건복지부,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2016. 3. 22.
- _____, 「외국인 환자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안내」, 2016. 3.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8년 외국인 환자 38만명, 10년간 누적 226만명 달성」, 2019. 4. 17.
- _____, 「4월 1일부터 외국인 환자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2016. 3. 31.
- _____, 「보건복지부, 해외환자 100만 유치 쿼텀점프 원년 선언!」, 2014. 2. 9.
- _____, 「복지부, 2015년 외국인 환자 30만명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 발표」, 2015. 8. 31.
- _____, 「중국 미용·성형 환자 등 외국인 환자 권리보호 강화된다」, 2015. 2. 12.
- 서정교, 「외국인 환자 유치활성화 투자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분석: 의료관광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2011, 24(1), pp. 237~253.
- 성명재, 「부가가치세 세수의 소득탄성치 퍼즐: 원인분석과 전망」, 미발간원고, 2020.
- 신영임·강민지,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 및 탈세규모의 추정』, 국회예산정책처 연구보고서, (18), 2014.
- 유예·박상문·김명수, 「한국 의료서비스의 외국인 환자 유치에 관한 연구: 한국 성형 외과의 중국인 환자 유치를 중심으로」, 『무역연구』, 12(4), 2016. pp. 603~616.
- 정규언, 「의료용역 중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폐지의 타당성 검토」, 『세무와회계저널』, 11(2), 2010, p. 253.

조성찬·이훈영, 「국내 의료관광 수요의 결정요인 실증 분석-패널 데이터 분석 기법을 중심으로」, 『지역산업연구』, 42(2), 2019, pp. 19~34.

진성 외, 『외국인 관광객 숙박업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19.

한국관광공사, 『관광면세업(사후면세) 서비스 매뉴얼』, 2017. 1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8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보고서』, 자체-보건의료-2019-34 2019.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8,” 2018.

한국관광공사, <https://kto.visitkorea.or.kr>

이스라엘 재무부 홈페이지, <https://taxes.gov.il>

외국인 환자유치 정보시스템, <https://www.medicalkorea.or.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EU 법령포털, <https://eur-lex.europa.eu>

한국호텔업협회, <http://www.hotelskorea.or.kr>

문화체육관광부, <https://www.mcst.go.kr>



부 록



<부 록 1>

<부표 1> OECD 회원국의 부가가치세 면세 및 과세 대상

국가	면세대상	표준면세 중 과세대상
그리스	표준면세, 국영 라디오 및 TV(상업적 성격 제외), 치과 서비스 및 보철물 공급	그리스 우정국이 제공하지 않는 우편 서비스, 영리기관이 제공하는 의료, 스포츠, 문화, 종교 관련 서비스, 신축 건물의 공급, 상업용 부동산 임대
네덜란드	표준면세, 장례, 화장, 공영방송, 스포츠 클럽, 작곡·작사·저널 서비스	문화,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 부동산 공급, 스포츠 시설 이용, 오락, 영화관·콘서트·극장의 입장, 스포츠 이벤트
노르웨이	표준면세, 특정 대체 치료, 장례, 수집 목적의 우표 및 동전, 주택협회의 관리 서비스, 배출량 감축 서비스	우편, 여객운송 부문에서의 시설 구축 서비스, 스포츠 행사·박물관·극장·유원지 입장, 상업용 건물 임대
뉴질랜드	금융, 주거용 시설 공급, 비영리단체의 기부 물품 및 서비스 공급	우편, 의료, 환자 이송, 치과, 자선사업, 특정 기금 조성 행사, 교육, 비영리 단체의 비영리 활동, 문화, 스포츠, 보험 및 재보험, 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 복권 및 도박, 토지 및 건물의 공급
덴마크	병원·의료, 사회봉사, 교육 서비스, 비영리단체의 조직, 비영리 스포츠활동, 문학·작곡 활동, 부동산 임대, 부동산 공급, 보험 및 재보험, 금융, 복권 및 도박, 우편, 여객운송, 장례, 특정 기금 행사, 자선 사업	문화(라디오, TV, 영화관, 극장), 부동산 단기 임대, 신축 건물 공급, 일부 상업적 우편 서비스
독일	표준면세	-
라트비아	표준면세, 저자 로열티	기존 부동산의 공급
룩셈부르크	표준면세	-
리투아니아	표준면세, 공영방송, 우편, 사회복지	신축 건물 공급, 주거용 단기 부동산 임대, 주차공간 임대, 기존 건물 공급
멕시코	표준면세, 금·은 동전, 주식, 외화, 금괴 소매, 저작권, 대중교통, 기존 유동자산 판매, 전문 의료 서비스	우편, 보험, 환자 이송, 민간 의료, 스포츠, 금융, 건물 및 토지 공급(주택 제외), 특정 기금 모금 행사

국가	면세대상	표준면세 중 과세대상
벨기에	표준면세	-
스웨덴	표준면세, 공영방송, 공공묘지, 사회서비스	대부분의 문화서비스, 상업용 건물 임대
스위스	표준면세, 문화, 기존 유동자산의 공급, 농산물·임산물 판매, 우유, 자선단체의 홍보, 동일 공공기관 내 및 대중이 소유한 공적·사적 기관 내 공급, 교육 및 연구 기관 간 공급	전시 스탠드 임대, 전시장 및 전시장 내 개별공간 임대
스페인	표준면세, 문학 및 예술작품 저작권, 협회 및 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단체가 제공하는 특정 사회 지원 서비스	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상업용 건물 임대, 토지 건축, 신축 건물 공급
슬로바키아	표준면세, 공영방송, 회원국에 대한 서비스 공급, 우편과 우표의 판매	건물부지를 포함한 건설의 공급(단, 건축 및 사용 허가 5년 이내에 공급이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에 대한 선택적 과세, 비영리기관이 아닌 단체가 제공한 훈련·교육·스포츠·문화 서비스
슬로베니아	표준면세, 공영방송	신축건물의 공급, 문화 및 스포츠 행사의 입장, 영리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교육·스포츠·문화 서비스, 부동산 임대에 대한 선택적 과세
아이슬란드	표준면세, 스포츠, 운동 경기 및 시설 입장료, 대중교통, 장애인·노인·취학 아동의 운송, 택시, 작가, 작곡가, 장례, 교회 관련 서비스, 의료 및 사회 서비스, 문화, 교육기관 운영, 부동산 및 주차공간 임대, 복권, 기부	-
아일랜드	표준면세, 여객운송, 국영방송, 공공기관에 의한 물공급, 운동경기 입장, 장례	상업용 부동산 임대, 오락과 스포츠
에스토니아	표준면세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금융, 문화 서비스
영국	표준면세, 장의 및 화장, 스포츠 대회, 특정 고가 의료서비스, 예술품	일반세율: 신축 상업용 건물의 소유권 판매, 게임기와 허가된 클럽에서의 도박 영세율: 신규주택, 거주용 및 자산단체의 건물
오스트리아	표준면세	임대(개인주택)

국가	면세대상	표준면세 중 과세대상
이스라엘	거주 목적이면서 25년 이하 기간 동안의 임대, 임대 건물로 승인된 건물의 일부 판매, 매입세액 공제가 어려운 자산의 매각, 예금 및 대출, 특정 상황에서 관세가 면제되는 상품, 거주 주택의 리츠 판매	비영리단체의 비영리 활동, 금융서비스
이탈리아	표준면세, 택시, 장례 서비스	토지 임대 및 공급, 신축 후 5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나 5년 경과 후라도 비면제를 선택한 경우,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가 제공하는 특정 사회지원 서비스, 직원 복지 서비스
일본	표준면세, 사회복지 서비스, 장애인용 특정 장비 판매, 행정 서비스, 증권 양도, 교과서, 수업료	우편, 건물 공급, 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비영리단체의 서비스는 제외), 상업용 부동산 임대
체코	표준면세, 공영방송	특정 문화 서비스(극장, 콘서트 입장료), 스포츠 서비스(비영리단체의 서비스는 제외), 건축 부지 공급, 상업용 임대(선택적 과세), 신축 건물 공급
칠레	중고차, 가족 종사자에게 제공한 물품, 수출용 상품의 생산 및 가공에 필요한 원재료, 군용 물품과 관련된 수입, 미화 500만달러 이상 투자와 관련된 자본재, 공연 및 박람회 입장료 수입, 국제 화물 및 여객 운송, 재보험, 추가 소득세가 부과되는 소득, 금융 이자, 보증료, 구매 조건부 부동산 임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호텔 수입, 교육 및 의료서비스 등	정부가 후원하지 않는 공연 등으로부터 발생한 수입,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스포츠 행사
캐나다	표준면세, 법률 지원, 대중교통, 수상운송, 통행료, 아동 돌봄 서비스	대부분의 복권 및 도박, 상업용 부지와 건물의 임대 및 공급, 신축 또는 개조된 주택 판매, 국내 우편 서비스, 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공공부문, 놀이시설 입장료, 혈액 및 특정 생물학적 물질(영세율)
터키	문화, 교육, 사회 목적의 물품 수입, 문화 복원 사업, 군수 및 조선소 플랜트에 물품 배송, 소득세 면세 납세자, 합법적인 기업 합병 및 양도, 부동산 임대 거래, 은행 및 보험 거래, 농업용 물 공급, 자유무역 지대에서의 서비스, 파이프를 통한 오일 및 가스 운송 등	사립교육, 민간 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민간 의료 및 치과 치료, 혈액, 부상자 및 환자 이송, 우편, 상업용 건물 판매, 방송, 도박 및 복권, 금융서비스, 토지 및 건물 공급, 공공 의료, 공공교육, 공공 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보험 및 재보험 등

국가	면세대상	표준면세 중 과세대상
포르투갈	표준면세, 장례, 문학 및 예술품에 대한 저작권	-
폴란드	표준면세, 공영방송	상업용 건물의 임대, 건물부지 또는 개발용 토지 및 건물의 공급
프랑스	표준면세, 기념비 건설·보수·유지,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기관이 추진하는 전쟁 희생자 추모 공동묘지, 장내 선물 거래	부동산 임대(영리 목적의 개발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전액 과세, 영리 목적의 미개발된 부동산은 선택적 과세), 환자 및 부상자 이송, 오락 및 스포츠 서비스, 영화관, 극장, 콘서트
핀란드	표준면세, 공연 서비스, 문화 및 예술에 대한 저작권, 맹인에 의한 특정 거래, 공동묘지 사업, 직접 채취한 자연산 베리	문화서비스, 특정한 경우의 상업용 건물 임대
한국	표준면세, 특정 대중교통, 물 및 특정 석탄의 공급, 농어업용 특정 목적의 원유, 장례, 노동과 같은 특정 개인 서비스, 도서, 신문, 잡지, 방송, 농업, 어업, 임업 제품	상업용 건물의 임대 및 공급, 상업용 문화서비스, 허가된 클럽에서의 도박
헝가리	표준면세, 공영방송	건물부지, 신축 건물 공급, 특정 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호주	금융서비스, 주거 목적의 임대, 특정 귀금속 공급,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학교 매점, 자선단체가 진행하는 특정 기금 모금	국내 우편, 스포츠, 문화서비스, 보험 및 재보험(건강보험 제외), 도박, 토지 및 건물의 공급

주: 표준면세란,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면세를 의미. 예를 들어 우편, 환자 이송, 의료, 자선사업, 교육, 비영리단체의 비영리 활동, 스포츠, 문화(방송 제외), 보험 및 재보험, 금융, 부동산 처분, 토지 및 건물의 공급, 특정 기금 모금 등의 서비스가 해당
 자료: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8," 2018.

<부 록 2>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세 환급 심층평가 관련 설문조사



Beyond Research, The Intelligence Company

2019. 4.

Research  Research
Marketing Research · Politico-Social Poll and Consulting · ISO 9001 Certified Company · Exclusive Licensee of ZMET



CONTENTS

제1장. 조사 개요 1

- 1. 조사 배경 및 목적 2
- 2. 조사 설계 2
- 3. 주요 조사 내용 3
- 4. 응답자 분포 3

제2장. 세부 조사 결과 4

- 1. 주로 방문하는 환자의 국적 5
- 2. 주로 이용하는 시술 6
- 3. 방문 경로 7
- 4.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 인지 여부 8
- 5.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 이용 여부 9
- 6.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 이용 기간 10
- 7. 부가세 환급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11
- 8. 부가세 환급제도의 긍정적 기여효과(중복응답) 12
- 9. 브로커를 이용한 외국인 환자 유치와 비교 13
- 10. 부가세 환급제도 인지와 문의 여부 14
- 11. 부가세 환급제도에 대한 설명과 안내 여부 15
- 12. 월평균 매출 16
- 13. 외국인 환자 유치를 통한 매출액 증가율 17
- 14. 2016년 4월 이후 매출액 증가율 18
- 15. 부가세 환급제도가 불법거래 근절에 도움 여부 19
- 16. 부가세 환급제도가 매출 증가에 도움 여부 20
- 17. 외국인이 부가세 환급제도 때문에 한국에 방문한 비율 21
- 18. 부가가치세 환급제도가 없다면 외국인 환자 방문 빈도에 영향 여부 22

제 1 장

조 사 개 요

I. 조사의 배경 및 목적

- ▶ 본 조사는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세 환급과 관련하여 의료 기관 대상으로 의견을 수집, 부가세 환급제도의 전반적인 효과, 제도 이용 실태 등을 파악하여 동 제도의 효과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II. 조사 설계

구분	내용
조사대상 및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세 환급 의료기관 252개
조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스트를 활용한 전화, 온라인, FAX 조사 등
실사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월 8일 ~ 4월 14일(주말 제외, 5일간 진행)
조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리서치앤리서치

III. 주요 조사 내용

중분류	조사 내용
인구통계 특성	의료기관 진료과목
	외국인 환자 국적
	부가세 환급제도 이용 기간
	의료 기관 규모 등
제도 효과	동 제도의 기여 효과
	외국인 환자 유치 효과
	불법 브로커 근절 효과 등

IV. 응답자 분포

(단위: 건, %)

		사례 수	비율
전체		252	100.0
기관종별	병원급 이상	5	2.0
	의원	247	98.0
진료과	성형외과	101	40.1
	피부과	75	29.8
	치과	25	9.9
	한방과	51	20.2
소재지	서울	182	72.2
	경기	48	19.0
	대구, 제주	22	8.7

제 2 장

세부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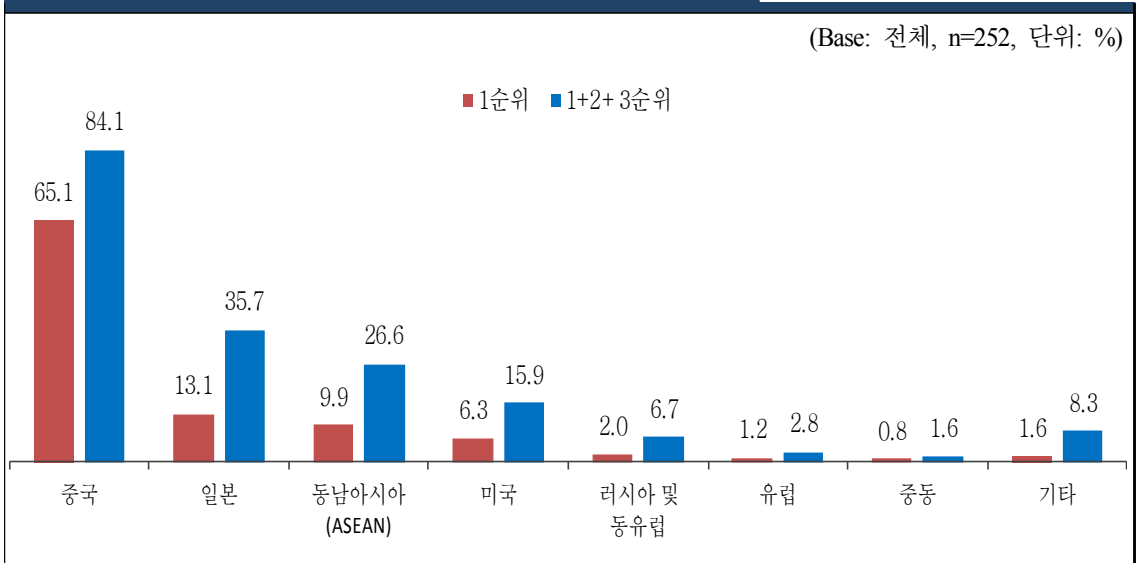
1. 주로 방문하는 환자의 국적

Q. 귀 기관을 방문 및 이용 하는 환자는 주로 어느 국적입니까?(많은 순서대로 3개국)

중국 65.1%(1순위), 84.1%(1+2+3순위 기준)

- 주로 방문하는 환자의 국적은 1+2+3순위 기준 중국이 84.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다음으로 일본(35.7%), 동남아시아(26.6%), 미국(15.9%)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1] 주로 방문하는 환자의 국적(1+2+3순위, 중복응답)



(1+2+3순위 기준, 중복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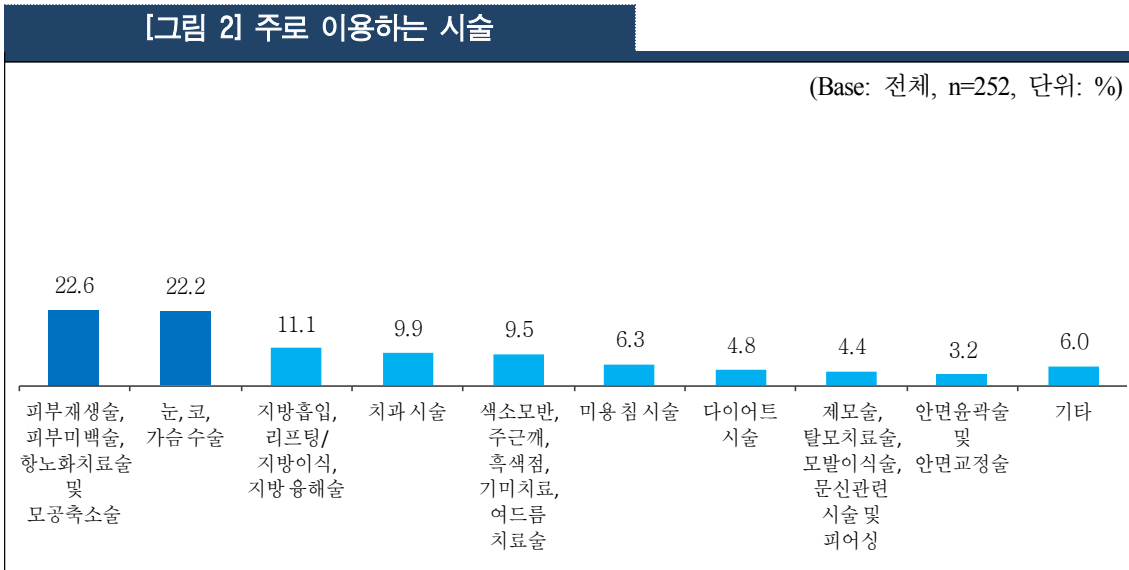
		사례수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미국	러시아 및 동유럽	유럽	중동	기타
전체		(252)	84.1	35.7	26.6	15.9	6.7	2.8	1.6	8.3
기관 중별	병원급 이상	(5)	80.0	20.0	20.0	20.0	20.0	0.0	0.0	20.0
	의원	(247)	84.2	36.0	26.7	15.8	6.5	2.8	1.6	8.1
진료과	성형외과	(101)	85.1	41.6	32.7	15.8	5.9	1.0	1.0	14.9
	피부과	(75)	85.3	37.3	17.3	13.3	2.7	2.7	1.3	4.0
	치과	(25)	72.0	12.0	32.0	24.0	16.0	8.0	8.0	8.0
	한방과	(51)	86.3	33.3	25.5	15.7	9.8	3.9	0.0	2.0
지역	서울	(182)	82.4	44.0	21.4	18.1	6.0	3.8	1.6	6.6
	경기	(48)	89.6	16.7	35.4	10.4	6.3	0.0	2.1	14.6
	대구/제주	(22)	86.4	9.1	50.0	9.1	13.6	0.0	0.0	9.1

2. 주로 이용하는 시술

Q. 외국인 환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술은 무엇입니까?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22.6%
≒ 눈, 코, 가슴 수술 22.2%

■ 주로 이용하는 시술은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이 22.6%, ‘눈, 코, 가슴 수술’이 22.2%로 비슷하게 높게 나타남



	사례수	피부 재생술, 피부 미백술, 항노화 치료술 및 모공 축소술	눈, 코, 가슴 수술	지방흡입, 리프팅/ 지방이식, 지방 용해술	치과 시술	색소모반, 주근깨, 흑색점, 기미치료, 여드름 치료술	미용 칩 시술	다이어트 시술	제모술, 탈모 치료술, 모발 이식술, 문신관련 시술 및 피어싱	안면 윤곽술 및 안면 교정술	기타
전체	(252)	22.6	22.2	11.1	9.9	9.5	6.3	4.8	4.4	3.2	6.0
기관 종별	병원급 이상	(5)	20.0	20.0	20.0	40.0	0.0	0.0	0.0	0.0	0.0
	의원	(247)	22.7	22.3	10.9	9.3	9.7	6.5	4.9	4.5	6.1
진료과	성형외과	(101)	13.9	54.5	17.8	0.0	0.0	0.0	0.0	5.9	5.9
	피부과	(75)	50.7	1.3	10.7	0.0	29.3	0.0	0.0	4.0	2.7
	치과	(25)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한방과	(51)	9.8	0.0	3.9	0.0	3.9	31.4	23.5	3.9	0.0
지역	서울	(182)	24.2	22.0	14.3	8.2	10.4	4.9	4.4	4.4	2.7
	경기	(48)	18.8	18.8	4.2	14.6	8.3	10.4	6.3	4.2	14.6
	대구/제주	(22)	18.2	31.8	0.0	13.6	4.5	9.1	4.5	4.5	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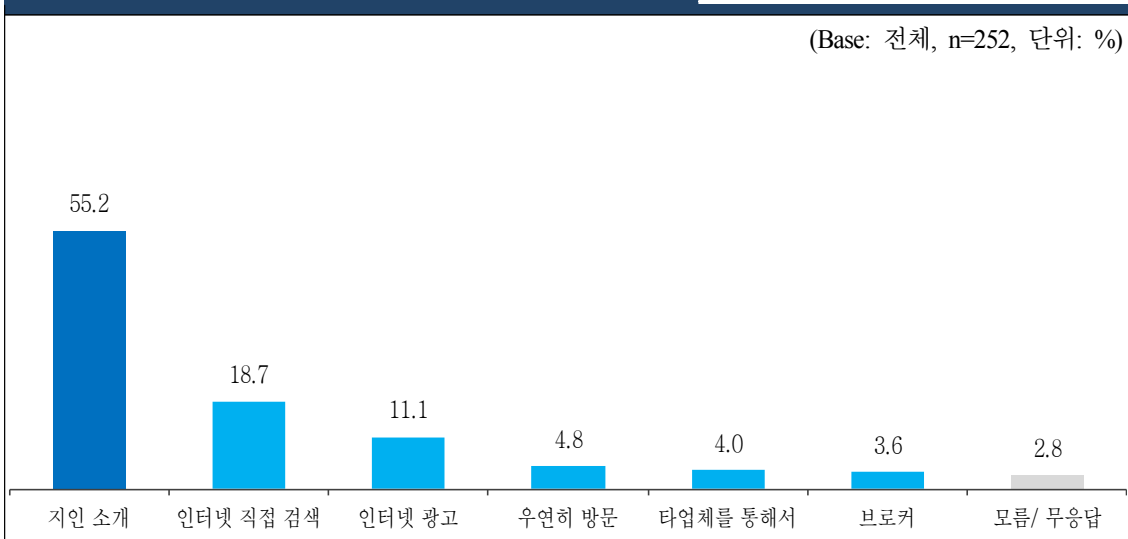
3. 방문 경로

Q. 귀 기관의 외국인 환자들은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 병원을 방문합니까?

지인 소개 55.2%

- 외국인 환자의 방문경로는 ‘지인 소개’가 55.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다음으로 인터넷 직접검색(18.7%), 인터넷 광고(11.1%)등의 순임

[그림 3] 방문 경로



(단위: 건, %)

		사례수	지인 소개	인터넷 직접 검색	인터넷 광고	우연히 방문	타업체를 통해서	브로커	모름/무응답
전체		(252)	55.2	18.7	11.1	4.8	4.0	3.6	2.8
기관 종별	병원급 이상	(5)	40.0	0.0	40.0	0.0	20.0	0.0	0.0
	의원	(247)	55.5	19.0	10.5	4.9	3.6	3.6	2.8
진료과	성형외과	(101)	51.5	17.8	13.9	2.0	7.9	5.9	1.0
	피부과	(75)	56.0	21.3	9.3	5.3	0.0	4.0	4.0
	치과	(25)	56.0	12.0	8.0	16.0	4.0	0.0	4.0
	한방과	(51)	60.8	19.6	9.8	3.9	2.0	0.0	3.9
지역	서울	(182)	52.7	22.0	13.2	2.7	4.9	2.2	2.2
	경기	(48)	60.4	14.6	6.3	10.4	0.0	6.3	2.1
	대구/제주	(22)	63.6	0.0	4.5	9.1	4.5	9.1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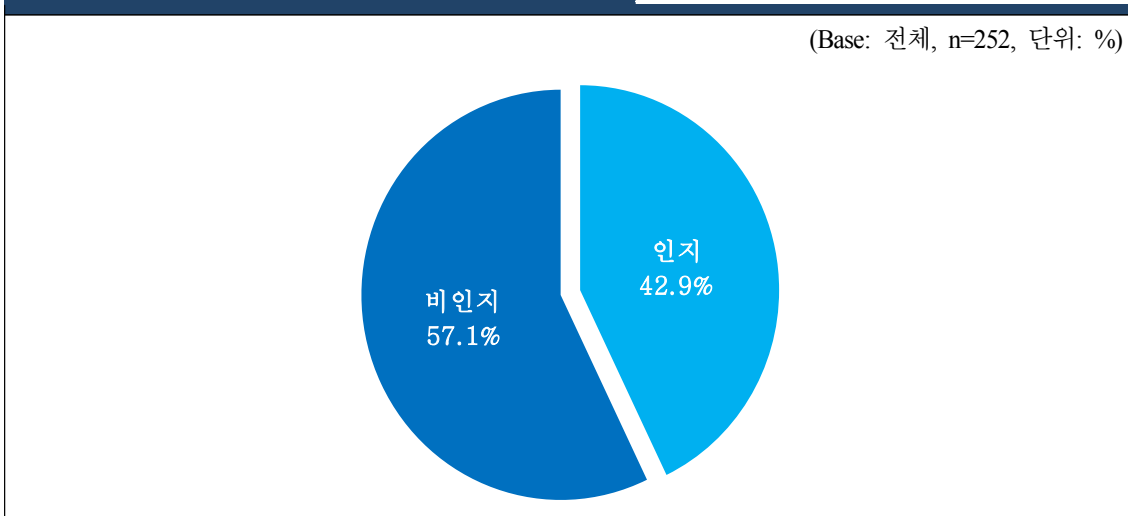
4.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 인지 여부

Q. 귀 기관은 외국인 환자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를 알고 있습니까?

비인지 57.1% > 인지 42.9%

-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42.9%로 모른다는 응답 57.1% 대비 낮음

[그림4]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 인지 여부



(단위: 건, %)

		사례수	인지	비인지
전체		(252)	42.9	57.1
기관 종별	병원급 이상	(5)	80.0	20.0
	의원	(247)	42.1	57.9
진료과	성형외과	(101)	63.4	36.6
	피부과	(75)	41.3	58.7
	치과	(25)	32.0	68.0
	한방과	(51)	9.8	90.2
지역	서울	(182)	52.7	47.3
	경기	(48)	10.4	89.6
	대구/제주	(22)	31.8	68.2

5.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 이용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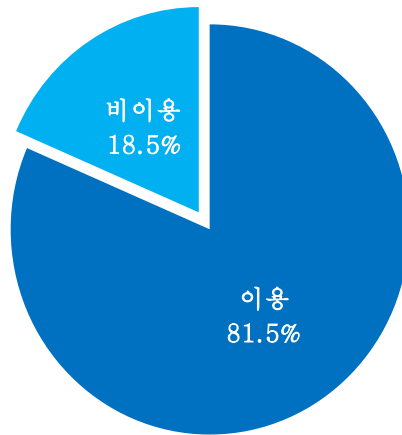
Q. 그렇다면 귀 기관은 외국인 환자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이용 81.5% > 비이용 18.5%

■ 부가세 환급제도를 알고 있는 기관 중, 외국인 환자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 이용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81.5%로 이용하고 있지 않다 18.5% 대비 높음

[그림 5]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 이용 여부

(Base: 부가세 환급제도를 알고 있는 기관, n=108, 단위: %)



(단위: 건, %)

		사례수	이용	비이용
전체		(108)	81.5	18.5
기관 종별	병원급 이상 의원	(4) (104)	75.0 81.7	25.0 18.3
	진료과	성형외과	(64)	90.6
피부과		(31)	71.0	29.0
치과		(8)	62.5	37.5
한방과		(5)	60.0	40.0
지역	서울	(96)	82.3	17.7
	경기	(5)	60.0	40.0
	대구/제주	(7)	85.7	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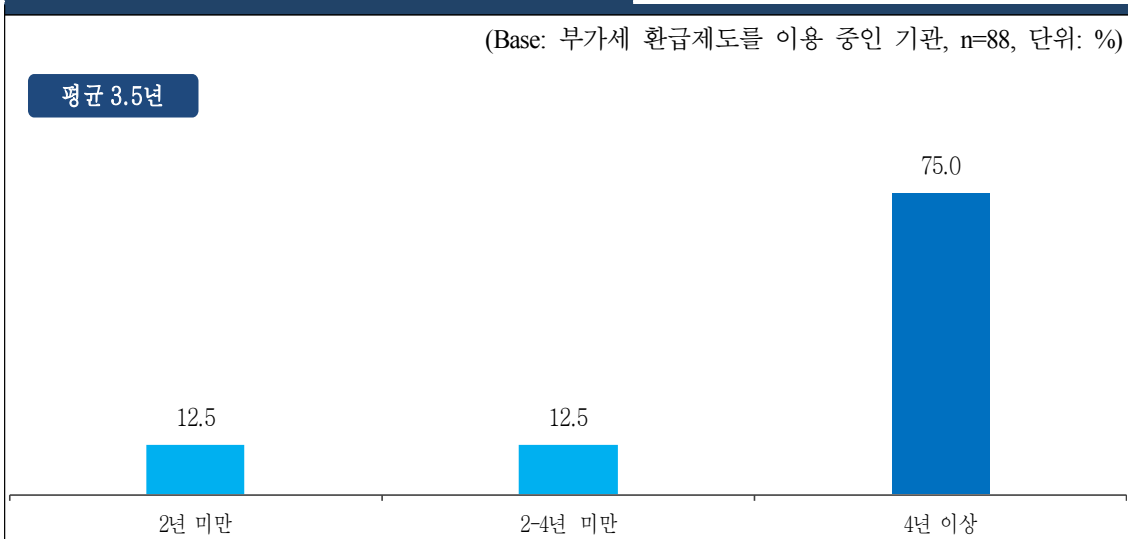
6.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 이용 기간

Q. 부가세 환급제도는 언제부터 이용하셨습니다?

4년 이상 75.0%, 평균 3.5년(41.8개월)

- 부가세 환급제도를 이용 중인 기관의 제도 이용 기간은 2년 미만 12.5%, 2~4년 미만 12.5%, 4년 이상 75.0%로 나타났으며, 평균 이용 기간은 3.5년(41.8개월)으로 나타남

[그림 6]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 이용 기간



(단위: 건, %)

		사례수	2년 미만	2-4년 미만	4년 이상
전체		(88)	12.5	12.5	75.0
기관 종별	병원급 이상 의원	(3) (85)	33.3 11.8	33.3 11.8	33.3 76.5
	진료과	성형외과	(58)	12.1	17.2
피부과		(22)	13.6	0.0	86.4
치과		(5)	0.0	20.0	80.0
한방과		(3)	33.3	0.0	66.7
지역	서울	(79)	13.9	12.7	73.4
	경기	(3)	0.0	0.0	100.0
	대구/제주	(6)	0.0	16.7	8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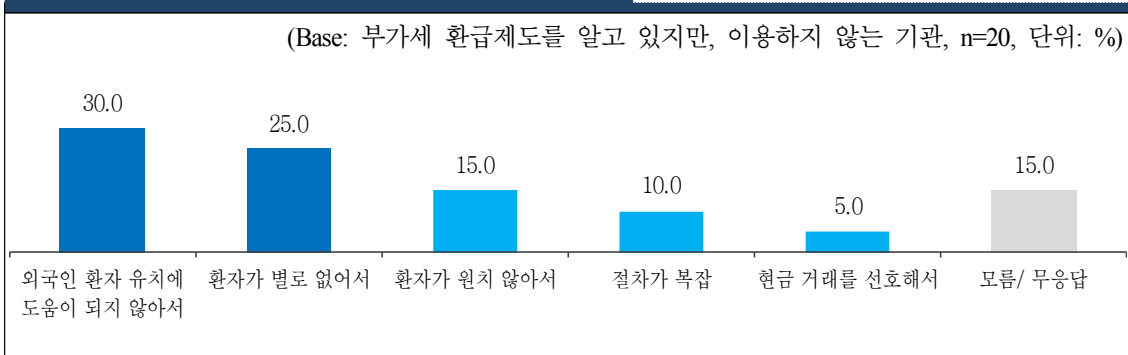
7. 부가세 환급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Q. 부가세 환급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외국인 환자 유치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30.0%
 ≍ 환자가 별로 없어서 25.0%

- 부가세 환급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기관의 이유로는 외국인 환자 유치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가 30.0%, ‘환자가 별로 없어서’가 25.0%로 비슷하게 높게 나타남
- 그 외 환자가 원치 않아서(15.0%), 절차가 복잡해서(10.0%), 현금 거래를 선호해서(5.0%)의 순임

[그림 7] 부가세 환급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건, %)

		사례수	외국인 환자 유치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환자가 별로 없어서	환자가 원치 않아서	절차가 복잡	현금 거래를 선호해서	모름/ 무응답
전체		(20)	30.0	25.0	15.0	10.0	5.0	15.0
기관 종별	병원급 이상	(1)	0.0	0.0	100.0	0.0	0.0	0.0
	의원	(19)	31.6	26.3	10.5	10.5	5.3	15.8
진료과	성형외과	(6)	33.3	33.3	16.7	0.0	0.0	16.7
	피부과	(9)	22.2	11.1	22.2	22.2	11.1	11.1
	치과	(3)	33.3	33.3	0.0	0.0	0.0	33.3
	한방과	(2)	50.0	50.0	0.0	0.0	0.0	0.0
지역	서울	(17)	29.4	17.6	17.6	11.8	5.9	17.6
	경기	(2)	50.0	50.0	0.0	0.0	0.0	0.0
	대구/제주	(1)	0.0	100.0	0.0	0.0	0.0	0.0

주: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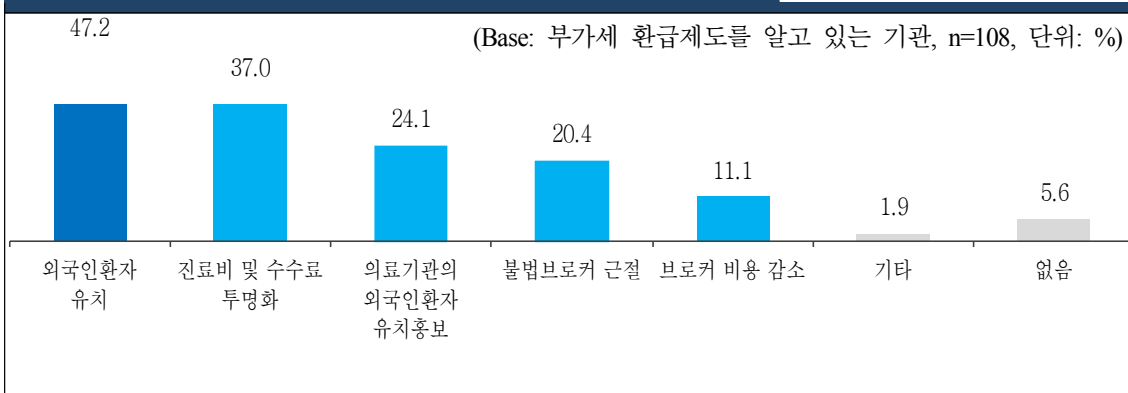
8. 부가세 환급제도의 긍정적 기여효과

Q. 부가세 환급제도 운영의 긍정적 기여효과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중복선택 가능)

외국인 환자 유치 47.2%

- 부가세 환급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기관이 생각하는 긍정적 기여효과로는 외국인 환자 유치가 47.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다음으로 진료비 및 수수료 투명화(37.0%), 의료기관의 외국인 환자 유치 홍보(24.1%), 불법브로커 근절(20.4%) 등의 순임

[그림 8] 부가세 환급제도의 긍정적 기여효과(중복응답)



(단위: 건, %)

		사례수	외국인 환자 유치	진료비 및 수수료 투명화	의료기관의 외국인 환자 유치홍보	불법브로커 근절	브로커 비용 감소	기타	없음
전체		(108)	47.2	37.0	24.1	20.4	11.1	1.9	5.6
기관 종별	병원급 이상	(4)	50.0	25.0	50.0	0.0	0.0	0.0	25.0
	의원	(104)	47.1	37.5	23.1	21.2	11.5	1.9	4.8
진료과	성형외과	(64)	50.0	43.8	25.0	14.1	9.4	0.0	4.7
	피부과	(31)	45.2	29.0	19.4	32.3	12.9	3.2	6.5
	치과	(8)	25.0	12.5	37.5	12.5	12.5	12.5	12.5
	한방과	(5)	60.0	40.0	20.0	40.0	20.0	0.0	0.0
지역	서울	(96)	45.8	40.6	25.0	20.8	10.4	1.0	4.2
	경기	(5)	60.0	0.0	0.0	0.0	0.0	20.0	20.0
	대구/제주	(7)	57.1	14.3	28.6	28.6	28.6	0.0	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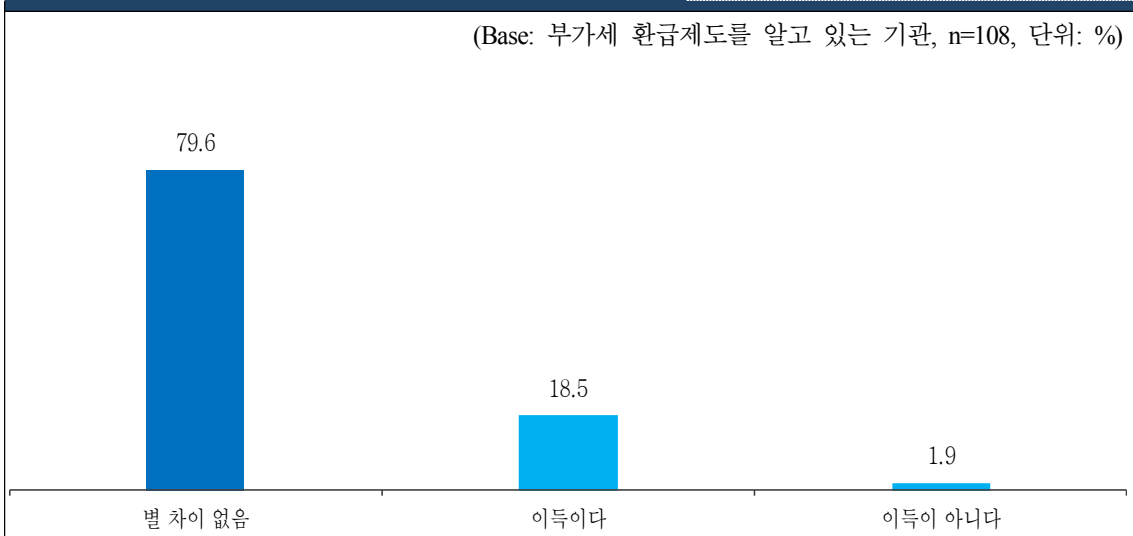
9. 브로커를 이용한 외국인 환자 유치와 비교

Q. 브로커를 이용한 외국인 환자 유치와 비교하면 외국인 환자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 이용이 더 이득인가요? 아닌가요?

브로커 이용의 경우와 별 차이 없음 79.6%

■ 브로커를 이용한 외국인 환자 유치와 비교에서는 ‘별 차이 없음’이 7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이득이다 18.5%, 이득이 아니다 1.9%로 나타남

[그림 9] 브로커를 이용한 외국인 환자 유치와 비교



(단위: 건, %)

		사례수	별 차이 없음	이득이다	이득이 아니다
전체		(108)	79.6	18.5	1.9
기관 종별	병원급 이상 의원	(4)	100.0	0.0	0.0
		(104)	78.8	19.2	1.9
진료과	성형외과	(64)	75.0	21.9	3.1
	피부과	(31)	87.1	12.9	0.0
	치과	(8)	100.0	0.0	0.0
	한방과	(5)	60.0	40.0	0.0
지역	서울	(96)	80.2	17.7	2.1
	경기	(5)	100.0	0.0	0.0
	대구/제주	(7)	57.1	42.9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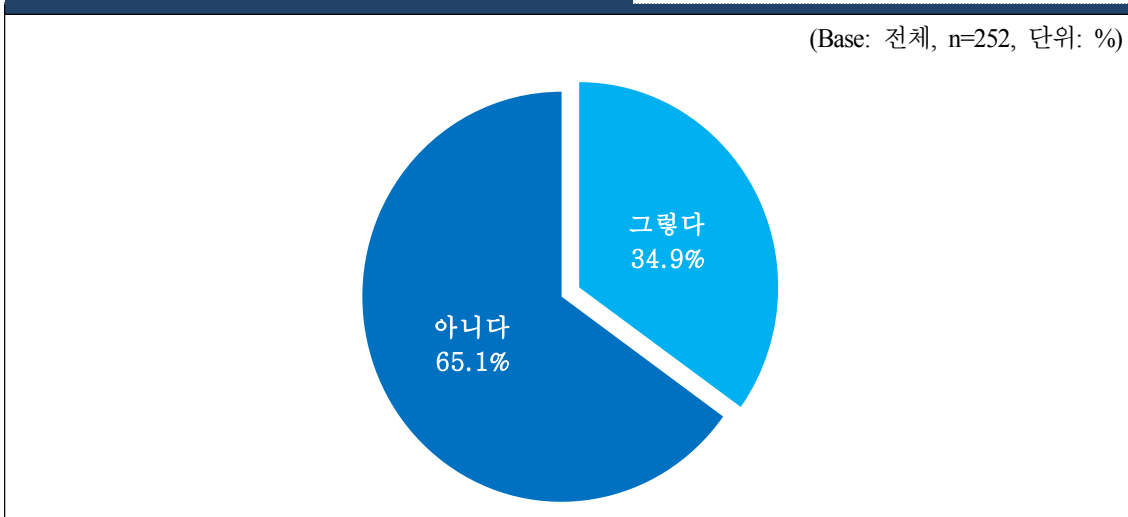
10. 부가세 환급제도 인지와 문의 여부

Q. 귀 기관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들은 외국인 환자 미용 성형 부가세 환급제도를 인지하고 있거나 병원에 문의합니까?

외국인 환자 비인지 65.1% > 인지 34.9%

- 외국인 환자들이 부가세 환급제도에 대해 인지 혹은 문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아니다) 65.1%로, 인지 혹은 문의한다는(그렇다) 응답 34.9% 보다 높게 나타남

[그림 10] 부가세 환급제도 인지와 문의 여부



(단위: 건, %)

		사례수	그렇다	아니다
전체		(252)	34.9	65.1
기관 종별	병원급 이상	(5)	40.0	60.0
	의원	(247)	34.8	65.2
진료과	성형외과	(101)	60.4	39.6
	피부과	(75)	28.0	72.0
	치과	(25)	8.0	92.0
	한방과	(51)	7.8	92.2
지역	서울	(182)	42.3	57.7
	경기	(48)	12.5	87.5
	대구/제주	(22)	22.7	77.3

11. 부가세 환급제도에 대한 설명과 안내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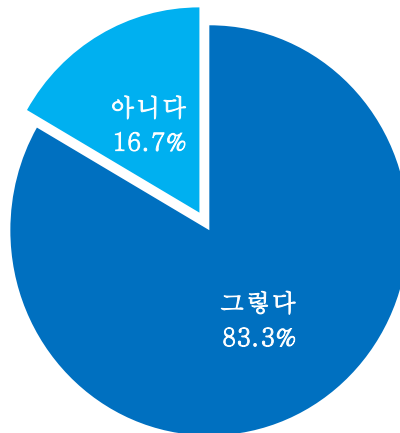
Q. 그렇다면 귀 기관은 외국인 환자 미용 성형 부가세 환급제도에 대한 설명과 안내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 83.3% > 아니다 16.7%

- 부가세 환급제도에 대해 설명 혹은 안내를 한다는 응답이 83.3%로, 하지 않는다는 응답 16.7%보다 높게 나타남

[그림 11] 부가세 환급제도에 대한 설명과 안내 여부

(Base: 부가세 환급제도를 알고 있는 기관, n=108, 단위: %)



(단위: 건, %)

		사례수	그렇다	아니다
전체		(108)	83.3	16.7
기관 종별	병원급 이상	(4)	75.0	25.0
	의원	(104)	83.7	16.3
진료과	성형외과	(64)	92.2	7.8
	피부과	(31)	77.4	22.6
	치과	(8)	50.0	50.0
	한방과	(5)	60.0	40.0
지역	서울	(96)	85.4	14.6
	경기	(5)	60.0	40.0
	대구/제주	(7)	71.4	2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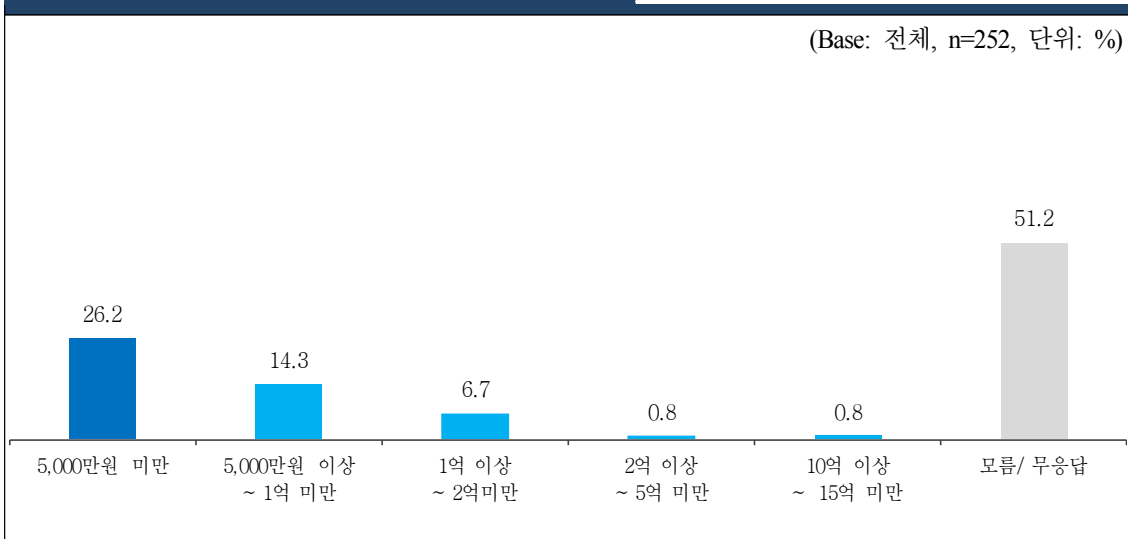
12. 월평균 매출

Q. 귀 기관의 월평균 매출액 규모는 어느 정도 인가요?

5,000만원 미만 26.2%

- 월평균 매출액 규모는 5,000만원 미만이 26.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다음으로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14.3%), 1억 이상~2억원 미만(6.7%) 등의 순임

[그림 12] 월평균 매출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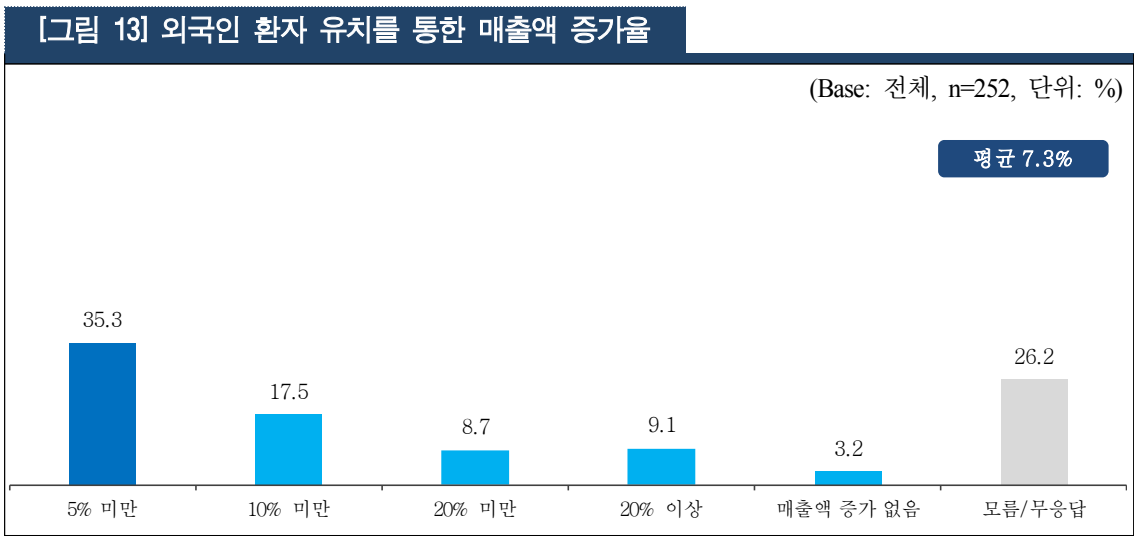
		사례수	5,000만원 미만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2억원 이상~5억원 미만	10억원 이상~15억원 미만	모름/무응답
전체		(252)	26.2	14.3	6.7	0.8	0.8	51.2
기관 종별	병원급 이상 의원	(5)	0.0	0.0	40.0	0.0	0.0	60.0
		(247)	26.7	14.6	6.1	0.8	0.8	51.0
진료과	성형외과	(101)	17.8	14.9	5.9	2.0	2.0	57.4
	피부과	(75)	17.3	17.3	8.0	0.0	0.0	57.3
	치과	(25)	40.0	8.0	12.0	0.0	0.0	40.0
	한방과	(51)	49.0	11.8	3.9	0.0	0.0	35.3
지역	서울	(182)	25.3	16.5	7.7	1.1	1.1	48.4
	경기	(48)	27.1	2.1	6.3	0.0	0.0	64.6
	대구/제주	(22)	31.8	22.7	0.0	0.0	0.0	45.5

13. 외국인 환자 유치를 통한 매출액 증가율

Q. 귀 기관의 작년 2019년 1월~12월 기준 총매출액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를 통한 매출액은 몇 % 인가요?

5% 미만 35.3%, 평균 7.3%

- 외국인 환자 유치를 통한 매출액 증가율은 5% 미만이 35.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7.3%임



(단위: 건, %)

		사례수	5% 미만	10% 미만	20% 미만	20% 이상	매출액 증가 없음	모름/무응답
전체		(252)	35.3	17.5	8.7	9.1	3.2	26.2
기관 종별	병원급 이상	(5)	20.0	20.0	20.0	0.0	0.0	40.0
	의원	(247)	35.6	17.4	8.5	9.3	3.2	25.9
진료과	성형외과	(101)	24.8	16.8	7.9	16.8	3.0	30.7
	피부과	(75)	41.3	13.3	10.7	2.7	2.7	29.3
	치과	(25)	44.0	20.0	8.0	4.0	8.0	16.0
	한방과	(51)	43.1	23.5	7.8	5.9	2.0	17.6
지역	서울	(182)	31.9	15.4	9.9	11.5	2.7	28.6
	경기	(48)	37.5	22.9	6.3	4.2	4.2	25.0
	대구/제주	(22)	59.1	22.7	4.5	0.0	4.5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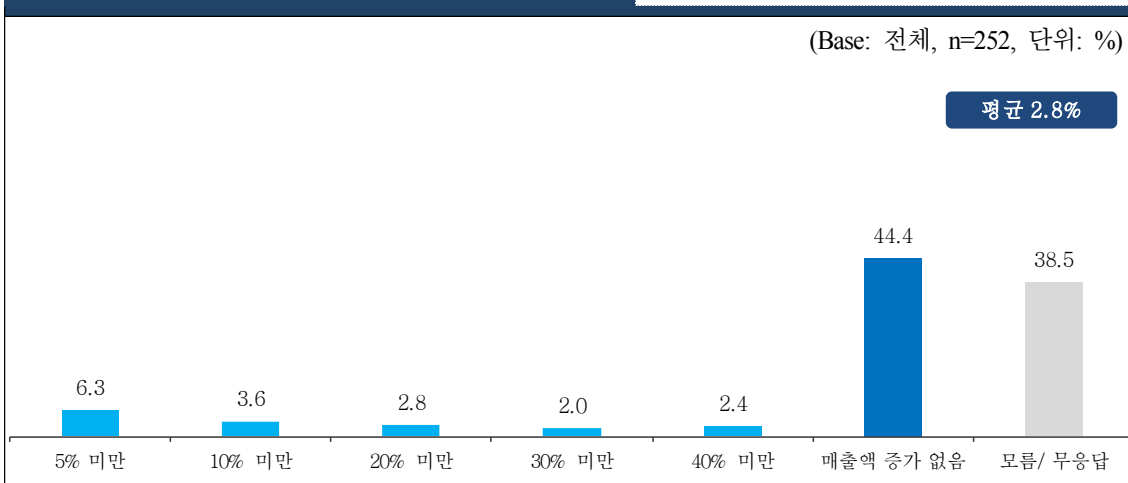
14. 2016년 4월 이후 매출액 증가율

Q. 2016년 4월, 부가세 환급제도 시행 이후 외국인 환자 유치를 통한 매출액이 이전보다 얼마나 더 증가하였나요? 환급제도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2016년 4월 이후로 말씀해 주십시오.

매출액 증가 없음 44.4%, 평균 2.8%

■ 2016년 4월 이후 매출액 증가율은 ‘매출액 증가 없음’이 4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2.8%임

[그림 14] 2016년 4월 이후 매출액 증가율



(단위: 건, %)

		사례수	5% 미만	10% 미만	20% 미만	30% 미만	40% 미만	매출액 증가 없음	모름/무응답
전체		(252)	6.3	3.6	2.8	2.0	2.4	44.4	38.5
기관 종별	병원급 이상	(5)	0.0	0.0	0.0	0.0	0.0	60.0	40.0
	의원	(247)	6.5	3.6	2.8	2.0	2.4	44.1	38.5
진료과	성형외과	(101)	4.0	5.0	4.0	1.0	5.0	39.6	41.6
	피부과	(75)	2.7	4.0	1.3	2.7	0.0	50.7	38.7
	치과	(25)	12.0	0.0	0.0	0.0	0.0	56.0	32.0
	한방과	(51)	13.7	2.0	3.9	3.9	2.0	39.2	35.3
지역	서울	(182)	4.9	3.8	2.7	2.2	2.7	44.5	39.0
	경기	(48)	12.5	2.1	4.2	2.1	2.1	41.7	35.4
	대구/제주	(22)	4.5	4.5	0.0	0.0	0.0	50.0	4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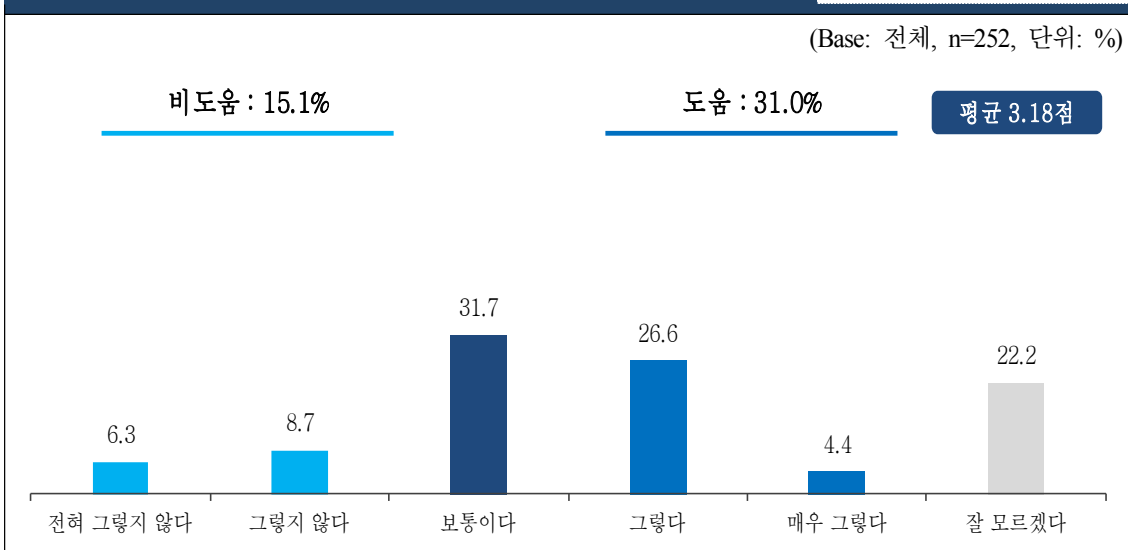
15. 부가세 환급제도가 불법거래 근절에 도움 여부

Q. 외국인 환자 미용 성형 부가세 환급제도가 불법거래(불법 브로커, 시술 등) 근절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움 31.0% > 비도움 15.1%

- 부가세 환급제도가 불법거래 근절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31.0%(매우 그렇다 4.4% + 그렇다 26.6%)로 도움되지 않는다 15.1%(전혀 그렇지 않다 6.3% + 그렇지 않다 8.7%)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5점 기준 평균 3.18점임

[그림 15] 부가세 환급제도가 불법거래 근절에 도움 여부



(단위: 건, %)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 겠다	비도움	도움
전체		(252)	6.3	8.7	31.7	26.6	4.4	22.2	15.1	31.0
기관 종별	병원급 이상 의원	(5)	0.0	40.0	0.0	20.0	0.0	40.0	40.0	20.0
		(247)	6.5	8.1	32.4	26.7	4.5	21.9	14.6	31.2
진료과	성형외과	(101)	6.9	7.9	32.7	34.7	4.0	13.9	14.9	38.6
	피부과	(75)	6.7	4.0	36.0	21.3	5.3	26.7	10.7	26.7
	치과	(25)	0.0	32.0	32.0	16.0	0.0	20.0	32.0	16.0
	한방과	(51)	7.8	5.9	23.5	23.5	5.9	33.3	13.7	29.4
지역	서울	(182)	5.5	7.7	31.9	28.6	6.0	20.3	13.2	34.6
	경기	(48)	8.3	14.6	33.3	16.7	0.0	27.1	22.9	16.7
	대구/제주	(22)	9.1	4.5	27.3	31.8	0.0	27.3	13.6	3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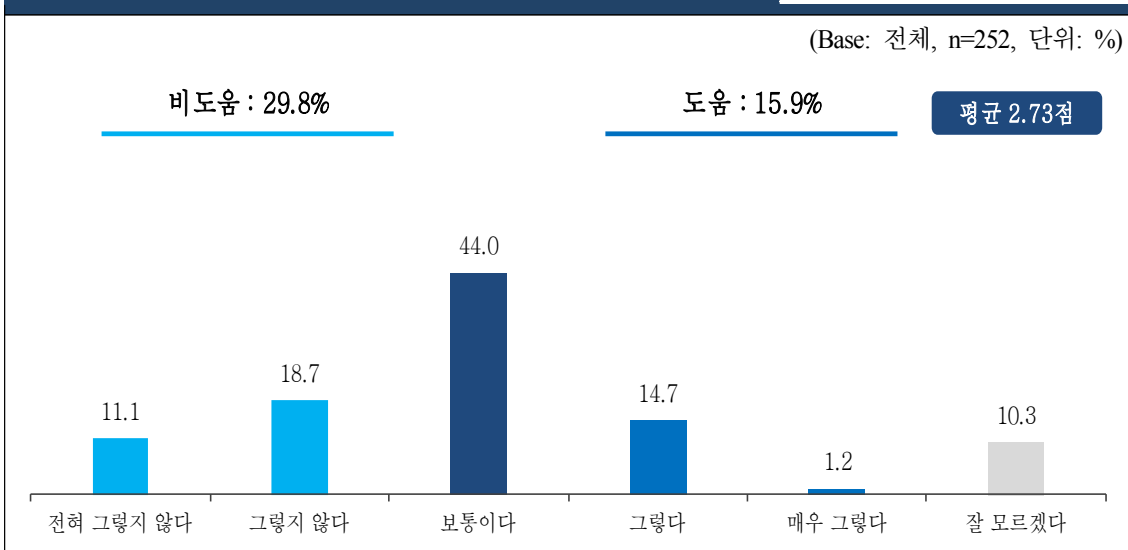
16. 부가세 환급제도가 매출 증가에 도움 여부

Q. 그렇다면 본 제도가 귀 기관의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비도움 29.8% > 도움 15.9%

- 부가세 환급제도가 매출 증가에 도움되지 않는다 29.8%(전혀 그렇지 않다 11.1% + 그렇지 않다 18.7%)로 도움된다는 응답 15.9%(매우 그렇다 1.2% + 그렇다 14.7%)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5점 기준 평균 2.73점임

[그림 16] 부가세 환급제도가 매출 증가에 도움 여부



(단위: 건, %)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 겠다	비도움	도움
전체		(252)	11.1	18.7	44.0	14.7	1.2	10.3	29.8	15.9
기관 종별	병원급 이상 의원	(5)	0.0	40.0	40.0	20.0	0.0	0.0	40.0	20.0
		(247)	11.3	18.2	44.1	14.6	1.2	10.5	29.6	15.8
진료과	성형외과	(101)	6.9	16.8	50.5	16.8	1.0	7.9	23.8	17.8
	피부과	(75)	13.3	18.7	40.0	13.3	0.0	14.7	32.0	13.3
	치과	(25)	12.0	28.0	44.0	8.0	0.0	8.0	40.0	8.0
	한방과	(51)	15.7	17.6	37.3	15.7	3.9	9.8	33.3	19.6
지역	서울	(182)	11.5	17.6	44.5	15.9	1.1	9.3	29.1	17.0
	경기	(48)	8.3	20.8	45.8	10.4	0.0	14.6	29.2	10.4
	대구/제주	(22)	13.6	22.7	36.4	13.6	4.5	9.1	36.4	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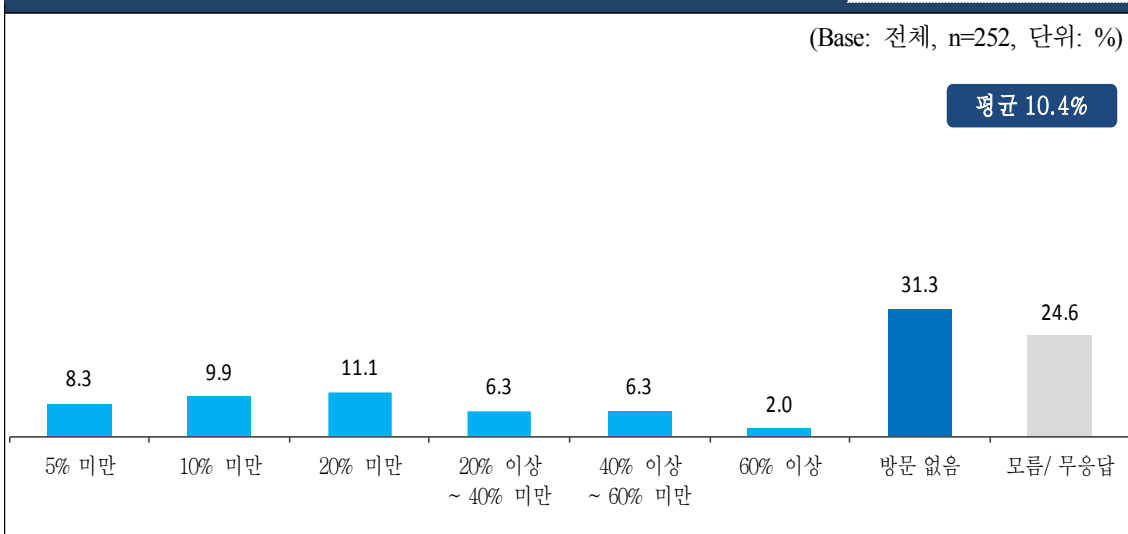
17. 외국인이 부가세 환급제도 때문에 한국에 방문한 비율

Q. 귀 기관을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 외국인 환자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때문에 한국을 방문한 비율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방문 없음 31.3%

■ 외국인이 부가세 환급제도 때문에 한국에 방문한 비율 중 방문 없음이 3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10.4%임

[그림 17] 외국인이 부가세 환급제도 때문에 한국에 방문한 비율



(단위: 건, %)

		사례수	5% 미만	10% 미만	20% 미만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	방문 없음	모름/무응답
전체		(252)	8.3	9.9	11.1	6.3	6.3	2.0	31.3	24.6
기관 종별	병원급 이상 의원	(5)	0.0	40.0	0.0	0.0	0.0	0.0	20.0	40.0
		(247)	8.5	9.3	11.3	6.5	6.5	2.0	31.6	24.3
진료과	성형외과	(101)	6.9	10.9	11.9	9.9	6.9	4.0	26.7	22.8
	피부과	(75)	8.0	6.7	8.0	4.0	9.3	0.0	32.0	32.0
	치과	(25)	8.0	16.0	12.0	8.0	0.0	0.0	36.0	20.0
	한방과	(51)	11.8	9.8	13.7	2.0	3.9	2.0	37.3	19.6
지역	서울	(182)	7.7	6.0	12.6	7.1	6.6	2.2	32.4	25.3
	경기	(48)	8.3	20.8	8.3	4.2	4.2	2.1	27.1	25.0
	대구/제주	(22)	13.6	18.2	4.5	4.5	9.1	0.0	31.8	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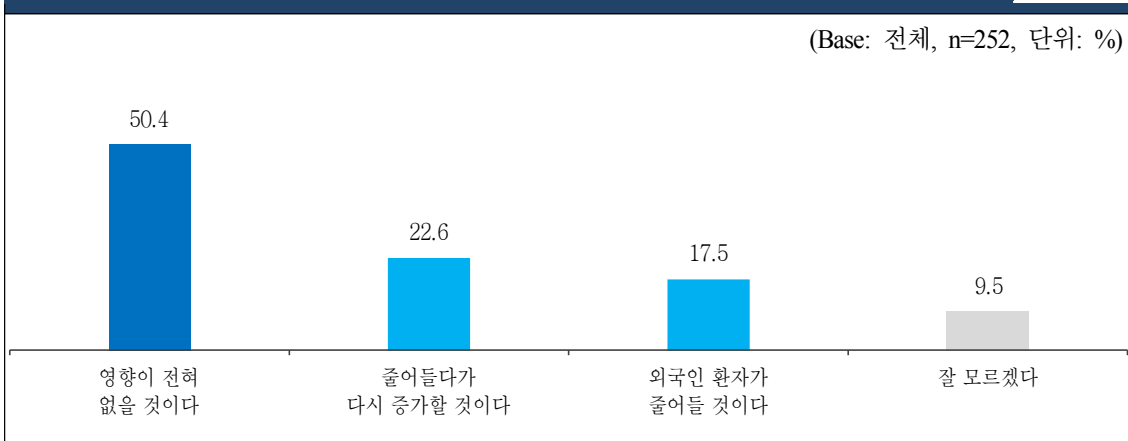
18. 부가가치세 환급제도가 없다면 외국인 환자 방문 빈도에 영향 여부

Q. 우리나라에 미용성형 목적의 외국인 환자 방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귀 기관의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 만약 부가가치세 환급제도가 없다면 외국인 환자 방문 빈도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향이 전혀 없을 것이다 50.4%

- 부가가치세 환급제도가 없어질 경우 외국인 환자 방문 빈도에 영향이 전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50.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줄어들다가 다시 증가할 것이다(22.6%), 외국인 환자가 줄어들 것이다(17.5%)임

[그림 18] 부가가치세 환급제도가 없다면 외국인 환자 방문 빈도에 영향 여부



(단위: 건, %)

		사례수	영향이 전혀 없을 것이다	줄어들다가 다시 증가할 것이다	외국인 환자가 줄어들 것이다	잘 모르겠다
전체		(252)	50.4	22.6	17.5	9.5
기관 종별	병원급 이상	(5)	60.0	0.0	20.0	20.0
	의원	(247)	50.2	23.1	17.4	9.3
진료과	성형외과	(101)	46.5	25.7	17.8	9.9
	피부과	(75)	57.3	17.3	13.3	12.0
	치과	(25)	60.0	24.0	8.0	8.0
	한방과	(51)	43.1	23.5	27.5	5.9
지역	서울	(182)	51.1	22.5	17.0	9.3
	경기	(48)	50.0	25.0	14.6	10.4
	대구/제주	(22)	45.5	18.2	27.3	9.1